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중간보고회

경찰들이 점령당한 밀양,
인권은 사라졌었다



주최 인권단체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침해조사단 보고서



I. 들어가며

10월 1일 새벽을 틈타 밀양에 3000여명의 경찰이 투입되었다. 고작 200명의 주민들이 맨몸으로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목소리를 짓밟기 위해서. 한전의 송전탑건설이 예정된 10월 2일을 하루 앞두고 경찰을 사전에 투입하여 마치 군대가 작전을 수행하듯, 송전탑건설의 걸림돌을 제거하듯 그렇게 경찰이 밀양을 점령했다.

지난 5월, 정부와 한전은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했다가 10여 일 만에 잠정 중단했었다. 가진 것은 몸뿐이어서,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몸을 던지며 송전탑건설에 저항하는 밀양 주민들의 목소리에 잠시 공사는 멈추고 다시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듯한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전문가협의체는 편파적이었고 한전은 어떻게 공사를 다시 할 수 있을까 기회만 노렸다는 듯이 1년 농사의 수확철에 공사를 재개했다. 다시 주민들은 자신의 몸을 걸고 저항하면서 농민으로서, 마을의 주민으로서, 인간으로서 자신과 공동체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과 한전이 점령한 밀양 땅에는 송전탑만이 존재하는 듯하다. 인간의 삶을 위해 흐르는 전기가 아니라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송전탑, 삶의 권리를 존중하는 공권력이 아니라 모욕하고 조롱하는 경찰의 폭력만이 존재한다. 자신의 삶터, 일터를 지키고 더불어 안전한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 커녕 반대의 목소리를 매도하고, 사회적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뿌리치며 오로지 송전탑 건설에만 몰두하고 있다.

공권력을 향해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절규하는 할매들 저항의 목소리, 생명의 목소리에 우리 사회가 귀 기울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인권활동가들은 현장 인권침해감시활동을 진행했다. 그것이 현재 우리 인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할 사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과 사회를 어떤 가치와 원칙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 밀양의 주민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

1. 상황개요

밀양765kV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준한 신부)는 지난 9월 30일 다음달 2일부터 한국전력공사가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는 소식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경찰은 10월 1일 공사재개를 지원하기위해 4개면 5개 현장(84번, 89번, 95번, 109번, 126번)에 약 3000여명(32개 중대, 여경 6제대)을 배치했다. 특히 창원지역 검찰과 경찰은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어, 공사현장을 점거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다. 이후 경찰은 각 현장을 3중으로 통제하며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10월 2일 오전 6시 20분부터 7시까지 290여 명의 인원과 건설 장비를 투입하고, 오후 들어서는 헬기 3대로 발전기와 각종 자재를 실어 나르는 등 밀양시 단장면 바드리마을과 동화전마을, 상동면 도곡리, 부북면 위양리 등 5개 송전탑 현장에서 공사를 본격화했다. 공사재개 이후 84번, 89번, 95번, 109번, 126번 등 송전탑 예정지 5곳에서 기초공사가 시작됐고, 현재 공사현장은 82번, 85번, 86번, 88번, 125번까지 포함되어 10곳이 되었다.

한편 밀양시는 주민들의 농성장 움막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2일 오전 11시 40명의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 단장면 고레리에 있는 움막을 철거했다. 이후에도 움막철거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면서 공

무원과 주민간의 긴장감을 지속시켰다.

한전은 밀양765kV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김준한 신부, 이계삼 사무국장, 주민대표 이모(71) 씨 등 25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0월 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10월 14일 한전이 공사하고 있거나 공사할 예정인 송전탑 현장 일대 35곳에 "공사를 방해하면 처벌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고시문을 붙였다. 또 경찰은 10월 11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가 밀양시 단장면·부북면 송전탑 공사현장 인근 2곳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를 불허 통보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법적인 통제뿐만 아니라 경찰의 통제 강도도 높아져 주민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해졌다. 10월 4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의 통행보장, △농성 주민들에게 식사, 식수 등 최소한의 생필품 제공이 자유롭게 전달, △비가림막 등 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천막 설치,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의 자유로운 통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10월 9일 긴급구제를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고, 일반진정사건으로 처리할 것이며 나머지 요청에 대해서는 밀양경찰서장에게 이행 약속을 받고 현장에서 해결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태도에 크게 실망했다.

공사를 시작한 20일이 넘어가면서 주민들은 한전의 공사를 위해 동원된 경찰의 태도와 인권침해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구급차에 의해 실려 간 주민만 36명에 이르고,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모두 14명, 2명의 주민들이 경찰서에 소환조사를 받았고 이후 출석요구를 받은 주민은 5명에 이른다. 이 중 경주 환경운동연합 이모(39) 사무국장과 주민 박모(56) 씨가 구속됐고, 9명이 불구속입건 됐다. 그리고 경찰은 주민 김모(57)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통화 내용을 조사했다.

2. 인권침해감시활동경과

대규모 공권력 투입이 예상되고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주민들이 절규가 전해졌다. 인권활동가들은 밀양에서의 인권침해를 기록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인권침해 감시활동의 필요성을 느꼈다.

10월 1일부터 인권활동가들이 가능하면 매일 벌어지는 현장에서의 인권침해상황을 기록하고 알리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인권침해사실과 함께 인권적 평가를 공개함으로써 어떤 맥락에서 인권침해인지 사회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표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조치와 강압적인 통제가 발생시키는 문제,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분위기로 심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문제 등 복합적이고 은폐하기 쉬운 인권침해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현장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겪고 목격한 인권활동가의 마음을 함께 전달하기 위해 글쓰기 작업을 병행하였다.

(1) 인권침해조사의 목표

경찰은 주로 고령의 주민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노골적이고 압도적인 물리력 행사보다 주민 안전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인권침해를 하는 식이다. 형식적인 조치들로 인권침해가 없는 듯 선전하고, 외부의 시선이 없을 때 주민들의 신체에 함부로 위력을 행사하거나, 언어와 행동 등으로 정서적 모욕감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인권침해조사를 통해 공권력이 어떤 의도와 맥락에 행사되고 있는지, 그로부터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이 중요했다.

(2) 현장조사 및 주민인터뷰

현장에서의 기록은 직접 목격하는 상황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이미 지난 상황이나 주민들만 농성을 지켰던 시간들에 대한 기록도 있다. 지난 상황들은 주로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기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씩 시간과 공간, 사건에 대한 기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를 비롯해 3~4의 인터뷰로 내용을 구체화했다.

한편, 사건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로 인해 느끼는 감정적, 심리적인 내용도 기록했다. 주민들은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욕감, 분노, 고립감 등의 문제를 더욱 호소한다. 무엇으로부터 이런 정서를 형성하게 되는지 파악하고 주민들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록했다.

(3) 이틀에 한번 꼴로 보고서 발행

현장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현재(10/25일)까지 12차례 발행되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2일	5일	4~5일	6~7일	8~9일	10일	11~13일	15일	16일	17일	22~23일	24~25일

(4) 인권활동가들의 밀양이야기

현장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진행한 인권활동가들이 보고 겪은 밀양의 상황과 주민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건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밀양 주민들, 사람의 이야기

- 1_ 끝나지 않는 '하루'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 2_ 예외 없이 모두가 평화적으로 살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딸기, 평화바람 활동가)
- 3_ 밀양 송전탑 투쟁에 처음으로 가보았다 (유성,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4_ 침묵하지 않습니다. (신훈민, 진보네트워킹센터 활동가/변호사)
- 5_ 우리가 싸우는 '진짜' 이유를 아시나요? (아요,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활동가)
- 6_ 오지 말라칸다고 진짜로 안 옵니까? (변정필, 엠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 팀장)
- 7_ 밀양 할매를 울린 두 부류의 외부세력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3. 보고서가 주목하는 인권침해의 양상

지난 7월 3일 인권단체들은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밀양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국책사업이나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함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바램과 요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밀양에서의 인권침해는 당시 지적되었던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이다.

한전보다 앞에 나선 경찰에 의해 주민들은 매일 사지가 들려서 버려지고, 온몸에 멍과 상처가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주민의 안전과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진압과 통제가 우선이다. 주민들은 경찰의 폭력에 매일 응급실로 실려 가고 있는데 경찰은 조그만 항의에도 범법자 취급을 하며 연행과 고소로 겁박하고 있다. 특히 각종 법률을 들먹이며 불법이라 헐박하고 비아냥대는 경찰의 태도는 주민들의 정당한 항의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시골의 노인이라 잘 모를 것이라는 모욕과 조롱을 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한전 직원들의 폭력이 두드러졌다면 이번에는 경찰이 앞장서 주민에게 육체적, 정신적 폭력

을 휘두르며 신속한 공사 진행의 앞길을 터주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은 ‘한전보다 경찰이 더 많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사람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끊임없이 주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경찰에 의해 주민들은 이 사회에 없는 사람, 정부로부터 버려진 존재 취급을 받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밀양을 통해서 국가의 폭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가늠하고 있다. 앞으로 한전은 공사를 8개월간 진행하겠다고 한다. 밀양 주민들의 고통이 8개월간 지속되게 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공권력의 폭력은 멈춰야 한다. 공권력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지켜야할 원칙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공권력의 폭력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들의 고통에 공감해야 한다. 이것이 밀양의 인권침해를 공개하는 이유이다. 밀양의 절규를 외면하면서, 한국사회의 인권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한국사회의 인권을 말하고자 한다.

II.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10월 1일,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은 약 3000여명의 경찰 병력을 밀양의 각 공사 현장에 투입했다. 경찰이 추산한 주민 수는 공사 현장의 거주민 수를 모두 합쳐봐야 200여명에 불과하다. 또한 한전 공사가 시작된 10월 2일 전날부터 경찰 병력이 배치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위험 방지 등에 필요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공권력이 동원되었고, 공사방해 행위라는 주민들의 어떤 행위조차 발생하기도 전에 경찰력이 배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민 대비 15배 수의 경찰 병력이 동원되었다는 점은, 경찰이 집회 시위 관리를 위해 집회 시위 참가자 대비 2~3배 수 규모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온 관행에 비추어보아도 매우 이례적이다.

이러한 경찰력 집행은 단순히 공사 진행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고 방지하는 수준을 넘어, 공사 시작 전에 압도적인 힘을 동원해 주민들을 제압해두는 ‘선제적 제압’의 기조에 가깝다. 이는 경찰의 작전이 각 공사 현장의 경계로 국한되지 않고, 그보다 훨씬 확장되어 주민들의 생활과 생업 공간인 마을에서 오히려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징후를 읽을 수 있다.

경찰은 병력을 마을에 상주시키며 농성장과 마을로의 통행과 도로 이용 및 차량 방문을 원격에서부터 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갈등과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이 때 경찰의 통행 제한은 단순한 통행권에 대한 제한을 넘어 생필품 반입이나 응급 의료의 제한 등 각종 비인도적 인권침해로까지 확대되는데, 이는 그 자체의 비윤리성은 물론, 경찰력의 집행이 송전탑 공사 현장 경비를 넘어 주민들의 결집과 연대하려는 시민들과 의료진, 종교계의 방문과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까지 낳고 있다.

10월 17일 고리 핵발전소의 부품 시험 검증서 위조 사건 발표로 송전탑 건설 강행의 명분이 약화되고, 공사 강행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크게 악화한 이후에도 이러한 경찰의 통제는 완화되지 않고, 마을 입구에 바리케이트가 설치되는 등 오히려 통제의 수준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는 경찰력이 사회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되기보다는, 사실상 송전탑 건설 강행을 유일한 목표로 행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1. 위법하고 과도한 공권력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밀양에서의 경찰은 그 의무보다는 송전탑 공사가 무리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전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적인 근거 없이 주민들의 통행을 금지하고 경찰로써의 본분을 망각한 채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며 때로는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은 경찰을 불신하게 되고 경찰 또한 주민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불안감을 조성하며 인권침해를 빈번하게 일삼고 있다.

(1) 통행금지

경찰은 주민이 공사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공사현장에 주민들이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주민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약3,000명의 경찰이 공사 지역에 배치되어 소수의 주민들이 공사현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 경찰은 각 현장을 3중으로 통제하고 있다. 각 마을 진입로와 공사현장 인근과 공사현장을 경찰로 에워싸고 있다. 특히 마을 진입로는 공사 현장으로부터 평균 3~4km떨어져 있는데 이곳에서부터 통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공사장 인근의 농성장으로 가기 위해 길도 나 있지 않은 산길을 3시간 이상 넘어 다니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길을 잃거나 미끄러지고 넘어져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하고 고령의 주민들은 다리와 관절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오고가는 길이 쉽지 않다 보니 시간을 빼앗겨 농사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사진1] 공사장으로의 진입을 막고 있는 경찰

사례

10월3일 새벽4시경 여수마을 여성주민 3인은 농성장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금지된 상황이라 마을 사람들조차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산길로 농성장을 찾아 출발했다. 이후 산에서 길을 잃어 7시간 이상 헤매다가

겨우 주민들에 의해 구조되었다. 경찰에게 구조신청을 하기도 했으나 경찰도 위치를 파악할 수 없으며 구조를 하지 못했다.

주민 구OO 인터뷰

“지나친 통행제한이죠. 우리 지금 농성장 있는 데서 위에 공사현장까지 5km되거든요, 5km앞에서 막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1km도 심할 것 같은데 5km앞에서 겹겹이 막아서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조금도 접근도 안 되는 평소에 우리가 늘 다니던 도로를 전혀 못 다니게 하는 그럼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죠. 그럴 권리가 있는 건지 우리 법을 잘 모르니까요.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공권력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2) 무리한 사법처리

경찰은 여전히 주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한 채 주민들을 단순히 ‘공사방해자’로 여기며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을 일삼고 있는데 지난 10월 11일에 일어났던 공무집행 시 음주가 바로 그 중 하나이다. 이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장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대하는 경찰의 책임감 없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례

11일 오전 7시 10분경 경찰 교대시간을 즈음해서, 경찰이 오가는 길에 앉아있던 고모(70)씨에게 밀양서 지능범죄팀장 임모 경위가 비키라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이 상황은 10여분 동안 지속되었다. 그 이후, 고씨에게 이야기를 하겠다며 강제적으로 연행해 차에 태웠다. 임경위는 고씨에게 “선생님과 사모님이 싸움을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말했다. 연행 이유 고지와 미란다 원칙 등 체포 적격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더구나 당시 모든 이들은 임경위에게 상당한 술 냄새가 나서 공무집행 중에 술을 먹으면 되느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임경위는 바로 자리를 피했다. 경찰차로 태운 뒤, 고씨가 사과하지 않으면 내리지 않겠다고 하자, 영장 제시 혹은 임의동행 등 아무런 고지도 없이 그대로 태우고 창원서부경찰서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임경위는 밀양서에 내렸다. 임경위의 음주 경위에 대해 의혹을 가진 장하나의원(민주당)실에서 임경위의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임동준 경위는 어제 마신 맥주3캔이 무엇이 문제냐며 도리어 화를 내며, 강하게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3) 표적수사

10월10일부터 주민들에 대한 표적수사가 시작되었다. 10일 주민 두 명을 강제연행 한 데 이어 11일에는 고모씨를 강제연행 했다. 특히 10일부터 경찰은 고모씨 부부를 의도적으로 찾았던 정황이 발견되어서 표적수사에 대한 의혹을 더욱 부각시켰으며 23일에는 주민 4명이 일제히 경찰에 소환을 통보 받았다. 소환 대상자 중 3명은 모두 한전의 공사방해금지 가치분 대상자 25명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송전탑 건설 반대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주민들에 대한 본보기 수사를 실시하여 다른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례1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9일부터 경찰들은 고씨 부부를 의도적으로 찾았던 정황이 있어, 주민 일부에 대한 표적 수사나 연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사례2

19일 오전10시 바드리마을에서 주민 송모(57)씨를 차량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창원서부경찰서에서 조사한 뒤 이 날 오후 4시 50분에 풀어줬다. 차량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강제로 이동을 요구하는 바람에 충돌이 빚어졌고 이 상황에서 10여명의 주민이 저항했는데 송씨만 연행됐다. 이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온 송씨를 노린 체포가 아닌 지 의심스럽다.

(4) 채증

경찰, 공무원, 한전 직원 등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채증은 일상화되고 더욱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한 행위가 있거나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라 밥을 먹거나, 평화롭게 집회를 하거나, 일상적인 통행 시에도 카메라는 주민들을 향해 있다. 특히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증까지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채증의 법적 근거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를 들고 있다. 그리고 채증활동 규칙에 의하면 “채증”이란 각종 집회·시위 및 치안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채증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불법이 명확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밀양에서는 이러한 원칙도 없이 무분별하게 채증이 광범위로 이루어져 주민들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 요구해 받은 ‘밀양송전탑 공사 채증요원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매일 69명에 달하는 채증요원을 송전탑 공사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2] 사복을 입은 채 채증 중인 경찰

사례1

10월3일 사복경찰이 개인 스마트폰으로 주민들과 시위대를 채증했다. 별도로 채증 담당 경찰이 있고 이미 마구잡이 채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장비가 아닌 개인 스마트폰으로 채증했다. 감시단의 문제제기로 잠시 중단했으나 다시 반복했고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경찰에게 불법적인 공무집행이라고 항의하니 “나는 법을 모른다”고 말했다.

사례2

10월7일 금곡헬기장에서 헬기 소음 문제로 인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미사가 지연되어 목주기도를 하면서 미사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사복입은 경찰들을 포함해 4~5명이 계속 채증을 했다.



[사진3]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미사를 위해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계속된 채증

사례3

10월17일 바드리마을 사자평명물식당 앞에서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 채증이 수시로 이루어졌다. 채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항의했으나 소용없었다. 발언자들에 대한 채증이 수시로 이루어졌고 성미산 마을 학생들이 발언과 노래를 하는 동안에도 채증이 이루어졌다. 노래하는 장면을 왜 찍냐는 질문에 경찰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기자회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주민 구OO 인터뷰

“채증 문제죠. 우리 있는 곳은 길하고 좀 가깝습니다. 그 위치가요... 그래서 경찰버스가 절반 이상 2/3 정도를 막고 있다 아닙니까? 근데 심지어 우리가 밥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그 버스 안에서 채증을 합니다.”

(5) 공권력의 폭력적 행사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경찰의 행태는 폭력행사를 통해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대부분의 주민들이 6~70대 고령의 여성이고, 대부분의 공사 지대 및 시위 지역이 산악지대나 경사가 심한 곳들을 감안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물리력을 사용하며 주민들의 박탈감과 모욕감을 증가시키고 있다.



[사진4]경찰의 막무가내 진압으로 상의가 거의 탈의된 주민



[사진5] 경찰들이 사지를 들어 주민을 끌어내고 있다

사례1

15일 바드리 마을 현장에 주민들이 도로에 늘어 앉아있었다. 길을 오가는 차량의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길 양편으로 주민들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견인시도 차량 근처에 있던 여성 주민들에 대해 물리력을 사용했다. 이동을 강요하는 근거에 대해 물어도 답하지 않았으며 여경 7~8명이 여성주민 1명씩 사지를 들어 3~5미터 가량 이동시켜 강제구인 및 노상감금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주민 한 명의 상의가 거의 벗겨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례2

22일 오전 5시경에 이미 바드리 마을 입구 다리에 경찰 200명가량이 통행을 차단했다. 8시 20분경 레미콘 차 6대 금곡교에서 올라가는 걸 보고 주민들이 항의하기 위해 가려 했으나 경찰들이 빙 둘러싸며 막았다. 경찰은 어떤 이유로, 어떤 법적 근거로 막았는지 밝히지 않은 채 주민들의 이동을 막았으며, 6~10명의 여경들

이 할머니를 비롯한 주민들의 사지를 들어서 자리를 조금 옮긴 후에 자갈길에 던졌다. 주민들은 여경들이 어깨를 비틀거나 팔목을 꼬집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 이로 인해 70세 윤 씨를 비롯한 고 씨, 손 씨 등 여러 명이 온 몸에 타박상이나 찰과상을 입었다. 공사 현장에서 4Km나 떨어진 마을 입구에서 폭력을 써가며 감금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의 위험한 상황에 해당하지도 않기에 레미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행사한 위법한 공무집행이자 과잉 폭력이다. 특히 이 날의 인권침해는 밀양경찰서장이 직접 나와 진두지휘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기에 우발적인 폭력이라 보기 어렵다.

사례3

24일 밀양댐 근처에 있는 헬기자재야적장에서 경찰은 주민들이 도착하자 바로 출입구에 와서 법적 근거 없이 해산하라고 했을 뿐 아니라, 한전 측 직원을 나오게 한 후에는 탱크로리 운전자에게 주민들이 있는 앞으로 오라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시를 하였다. 탱크로리가 1m 정도 앞으로 오게 한 후, 여경들을 불러 바로 주민6명을 여경 20여명이 들고 옮겼다. 당시 지휘관은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 묻는 감시단의 물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래쪽 도로로 이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8시반경 78세 할머니가 여경의 팔꿈치에 부딪쳐 실신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경찰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머리가 부딪힐 리가 없다며, 응급조치를 취하려는 감시단의 출입까지 막으려 했다. 감시단은 할머니의 이마에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멍이 안 보이냐고 항의했고, 그제 서야 감시단은 주민들을 둘러싼 여경들 틈 사이로 들어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다. 8시 50분 응급차가 와서 이송했다.

(6) 익명성에 가려진 공권력

경찰은 철저한 익명성 뒤에 숨어서 주민들을 대하고 있다. 소속과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집회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르며, 채증을 남발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연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법적 근거도 제대로 대지 못하며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익명성이라는 방패 앞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1) 식별표식 및 복장

국가인권위는 2008년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반대 촛불집회시위’ 당시 경찰의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 발표한 직권조사 권고에서 ‘경비업무 시 착용하는 의복에 식별표식을 하고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이 식별표식을 미부착하거나 정해진 제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본인들 조차도 집행하는 업무에 대해 담당하지 못하다는 뜻이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정당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는 2011년 한국을 방문한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진압 경찰복에 명찰,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과잉 진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경찰의 경우에도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폭행 또는 기타 형태의 폭력 혐의로 경찰을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며 권고를 한 바 있으나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다수의 경찰이 복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얼굴을 식별하기 어렵다.



[사진6] 경찰인지 판단 불가능한 복장으로 채증을 하고 있다

사례

10월2일 바드리마을 공사부지 진입로의 여경들은 복면을 착용하고 있었다. 또한 우의를 입고 있을 때에는 경찰 개인에 대한 식별표식이 불가능하다. 10월9일 평리에 배치되어있던 경찰들 또한 티셔츠 형태의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름이나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전혀 없었다. 또한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채증을 하는 경찰들이 등산복을 입고 있어서 실제로 경찰이냐고 직접 물어 신분증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2) 공무집행 미고지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미란다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임과 동시에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행자들이 경찰의 연행 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 ‘임의동행’임을 고지했다고 증언하나, 고령의 주민은 ‘임의동행’이 무엇인지, 본인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사례1

9일 방문한 도곡리에서 경찰 측 통행제한의 근거를 물었으나 현장 책임자가 통행제한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다’며 설명을 거부했고, “밀양 경찰서 상황실로 문의하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평리에서도 통행을 제한하면서 ‘상부지시’라는 점 이외 통행제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사례2

10일에는 이번 공사 재개 후 주민이 처음으로 연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10일 새벽 109번 현장에서 산으로

오르던 경찰병력에 항의하던 주민들이 주변에 있던 축분(소오줌)을 서너차례 바가지로 뿌렸고, 경찰은 오전 11시45분 경 두 주민을 연행해갔다. 그러나 연행과정에서 경찰은 채증 된 사진을 들고 “죄를 지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만 하고, 임의동행 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3

22일 산어린이학교에서 농활 온 중학생들 13명과 교사 2명을 경찰은 1시간가량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감금했다. 학생과 교사들은 오전 7시반경 바드리 마을 입구에 레미콘이 들어가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걱정이 되어 마을 입구까지 갔으나 주민들이 고착되는 걸 보고 내려왔다. 내려오는 중에 갑자기 경찰들이 막아서더니 움직이지 못하도록 원으로 뺨 둘러쌌다. 당시 교사인 한 씨는 아이들이 두려워할까 걱정되어 경찰에게 항의도 제대로 못 한 채 있었다고 한다. 나중에 대책위 활동가가 와서 왜 막느냐고 항의하니 경찰은 길을 터주었다. 길을 터준 후에도 경찰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어떤 이유와 법적 근거로 감금했는지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어디가냐고만 물었다.

사례4

24일 오전 7시 22분경에 인권침해감시단이 밀양댐 입구에 있는 헬기장에 도착했다. 출입문에 게시된 이상한 집회신고접수증(2013-128호)과 왜 공용도로를 막는지, 적법하게 통행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문서를 보여 달라고 감시단은 요구하였다. 7시 40분경 항공유를 실은 탱크로리가 도착했고 이후 7시 46분경 경찰병력 2~3대가 도착했다. 감시단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곳에 왔는지 밀양서 경감에게 물었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출입구에 걸린 옥외집회신고서의 문제점에 대해 경찰에게 확인해주고 출입통제를 하고 있는 한전의 문서를 요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무시했다. 그리고는 오히려 한전 측 직원에게 “협조할 거 있으면 연락하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경찰차 근처로 갔다.

2.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침해

경찰은 또한 주민들이 공사에 반대하며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집회를 열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집회신고 금지를 통고하고 있다.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하고 여론을 형성할 권리 자체를 박탈하며 동시에 주민들과 함께 하려는 시민들을 외부 세력이라고 규정지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부정적인 여론을 통해 송전탑 건설 반대에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가 열리는 대구 엑스코 주변에서 이상옥 퍼포먼스 작가가 몸에 녹색페인트를 바르고 광장을 걸어가는 행위를 벌이는 도중 국무총리실 직속 경호원 3명이 검고 큰 우산으로 에워싸자 인권활동가가 퍼포먼스를 방해하지 말 것을 항의했다. 경호원들의 행위가 보행권과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임을 강력히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인권활동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1) 집회신고 금지 통고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가 경찰과 주민이 충돌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기 위해 제출한 집회신고서(89번 바드리, 평리진입구, 126번 현장 입구)에 대해 밀양 경찰서는 불법행위가 우려

되며, 집단적인 협박 폭행 손괴 및 차량 통행이 불가하여 공공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며 10월 10일 금지 통고하였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되어 있는 집시법마저도 간단하게 자의적으로 넘어서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2) 고립감을 목적으로 한 방문금지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1일부터 126번 현장에서 주민들은 3일 이상 물까지 끊은 채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현장으로 가는 길목 곳곳을 가로막은 경찰 때문에 주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찾은 시민들은 물론이고 의료진을 포함한 활동가들까지 방문을 금지 당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가로막힌 길목을 돌아 산 길로 가던 일부 시민들이 다쳐서 응급차로 이송되기도 했다. 경찰은 방문을 금지시킴으로써 주민들을 극한의 상황에 고립시켜 심리적으로는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또한 생필품 등의 반입을 제한하여 신체적으로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

(3) 외부세력으로 매도

언론에서 밀양송전탑 반대 운동을 ‘외부세력’이 선동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냄과 동시에 밀양을 찾는 다른 지역의 시민들, 활동가 들을 외부세력으로 취급하고 있다. 심지어 밀양사회봉사단체협의회가 ‘외부불순세력 척결 밀양시민 총궐기대회’를 준비하였으나 주민들의 강력 항의로 집회는 무산되었다. 분노를 부었다는 이유로 조모(87)할머니, 이(78)할머니를 밀양서로 연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 조사 중인 과정에서 감시단이 동석하였는데 경찰은 외부세력 운운하는 이야기를 계속 했다. 임의동행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추측되는 상황에서 조사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도 경찰은 외부세력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민들에게 얘기했다.

3. 주민들에 대한 비인도적이고 모욕적인 처우

각 현장의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었다. 이는 단지 주민들의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주민들이 처해있는 인권침해적 상황에 대한 주민들 스스로의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평가는 식량과 생필품에 대한 경찰의 통제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마저 제한되는 비인도적 상황과, 주민들을 향한 모욕적인 말과 고압적인 태도, 주민들의 신체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경찰의 언행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통행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농성장의 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음식, 생수, 천막, 보온용품 등 기본적인 생필품들이 경찰에 의해 차단되거나 반입의 제약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고령의 주민이 노숙을 하며 지내는 상황에 건강이 염려되자 주민건강을 파악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방문한 의사도 출입이 통제되었다.

주민과의 대치 상황에서 경찰은 고령의 주민들을 엄연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 존중하기보다는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빨갱이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없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기자나 인권침해감시단 등 외부의 시선이 있을 때면 태도가 달라진다고 주민들은 증언하고 있었다.

(1) 생필품 반입금지

식사·식수, 잠자리를 최소한으로나마 마련하려는 시도조차 봉쇄당하여 추위와 식사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통행제한(금지)과 관계가 있다. 통행을 제한하면서 식사, 생수 등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 것들이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것이 차단되거나 제한적이 되고, 천막, 이불 등 추위에 대비하기 위한 물품들을 금지시키기도 한다.

특히 경찰은 외부와의 소통과 왕래를 차단시킨 채 자신들이 안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의 증언을 듣기 어렵고 현장을 직접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몇몇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천막은 비바람과 추위를 피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천막을 보존하고 있으니 문제없다는 태도이며, 식사와 생수 등 최소한의 물품은 주민들이 산길로 나르는 도시락이 전부이거나 산 아래에서 직접 가지고 가게 하는 조치이다.

물품 공급은 경찰의 통제 없이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비바람과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천막과 침낭, 핫팩 등 보온용품은 제한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사례1

10월 2일 상동면 여수마을(126번 현장)에 주민들이 천막을 쳤으나 경찰에 의해 바로 철거되고 경찰이 압수했다. 주민들 2~30여명이 비닐 한 장 치고 산속에서 밤을 지내야 했다. 계속해서 천막을 돌려달라고 항의하고 있으나, 현장의 경찰 총책임자는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4일에야 돌려주었다.



[사진기] 10월 3일 126번 현장 - 경찰이 천막을 빼앗아간 후 비닐 한 장으로 바람을 막고 있는 모습. 경찰병력 바로 앞쪽 왼편 담요 보이는 곳이 단식농성 주민이 누워있는 장소

특히 주민들은 단식 중인 주민 3분만이라도 천막에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이 허가하지 않아, 최소한의 안정적인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채 이불 하나에 의지하여 밤이슬을 고스란히 맞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천막반입을 불허하고 그로부터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바로 그 앞에 경찰 방패를 앞세운 병력을 세워두고 있었다. 단식 중인 주민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임이 명백한데도, 공권력으로써

터 보호나 안전조치를 받기는커녕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도 받지 못한 채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10월 3일 주민들이 새벽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우고 컵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가스렌지에 물을 끓이려 하자 경찰이 소화기를 뿌려서 모닥불을 끄고, 그 옆의 가스렌지 및 물과 라면에도 소화기를 추가로 분사하여 모두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직접 겪은 주민은 경찰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틀동안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추위에 떠난 주민들에게 식사와 생수, 이불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책위가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려했으나 경찰은 차량으로 진입할 수 없다며 직접 산에서 내려와 가져가게 함. 30분 정도의 가파른 경사를 내려와 물품을 가지고 다시 오르는 것은 고령의 주민들에게 물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다행히 연대은 10여명의 사람들이 물품을 운반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사례2

10월 3일 오후 5:30 단장면 바드리마을(89번 현장)에서 주민들이 해가 저물어 기온이 떨어지므로 이불을 반입하려하자 경찰이 차단했다.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로 30여분 후에 반입되었다. 이후 깔판과 서리를 피할 비닐 반입도 차단되었다. 차단 이유를 묻자, 경찰은 집회시위용품이므로 반입할 수 없다며 '밥과 물이면 충분하다. 봐 줄 만큼 봐줬다'고 대답했다. '그럼 찬 바닥에 서리를 맞으라는 거냐'며 항의하고 차단근거를 묻자 대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1시간 가량 실랑이 끝에 일부만이 반입되었다.



[사진8] 10월 3일 17시 30분 바드리 마을 (89번), 해가 저물어 기온이 떨어져 주민들이 이불을 반입하려는데 경찰이 차단

사례3

10월 3일 109번 현장을 방문한 기자에 따르면 109번 현장은 차량진입이 불가능하고 도보로 가는 길이 길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이 부족하다고 했다. 은박갈개 몇 개만으로 이불도 없이 지낸다고 했다. 생필품과 바닥

과 지붕이 제대로 된 숙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심한 고립감이 문제라고 했다. 함께 하려고 다른 이들이 산을 올라와도 경찰에 의해 접근이 금지되고 있어 다른 이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하며 공사재 개 후 기자도 처음 찾아온 것이라고 전했다. 당일 식량을 가지고 온 종교인(수녀)들의 출입이 차단 당했다고 전했다.

사례4

10월 4일 주민과 함께 인권침해감시단, 변호사, 연대 온 사람들 7명이 109번 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산 정상에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지점에서 경찰의 제지로 진입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미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니 물품을 가지고 돌아가라 했으나 물품만이라도 현장에 놓고 갈 수 있도록 요구해 경찰에 의해 전달하는 것으로 합의 했다. 경찰은 주민들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천막과 생수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나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직접 확인만하고 내려오겠다고 했으나 거부당했다.

주민 신00 인터뷰

"첫날에 길이 막혀서 못 갔어요. 저는 이제 저희 마을회관에서 계속 경찰 눈을 피해서 산길로 해서 지금 저희가 천막 치는 곳으로 갔거든요. 둘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주민들 통제하니까 못 올라갔고, 다른 단체에서 오신 분들도 못 오고. 그 날은 먹는 것도 안 보내줬어요. 이불이니 이런 것도 안 보내줘 가지고 저희 이장님이 계속 산길로 정상적인 길로 못 오니까 배낭에 먹을거나 이런 것 싣고 왔거든요. 어른들 드시게 하고."

주민 강00 인터뷰

"할머니들이 주무시겠데. 내일도 저놈들이 못 올라오게 거기서 막으면 우리 못 올라온다 하면서 거기서 잔다는거야. 거기를. 그래 그럼 우리가 안 됩니다. 여기서 자면은 오늘은 아무 준비가 안되서 오늘은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가라 우리는 못가겠다. 할머니들이 이러는 거야. 그러면 할머니들이 하는 말이 이불도 아무 것도 없다. 맨 땅에 자지. 그냥 갑빠만 하나 깔아놓고. 덮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우리도 같이 있을 게요. 이려고 젊은 사람 몇명이 같이 있었어. 있는데 밑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하니까. 우리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전화해서 올라온다는 사람들한테 올라오면서 내 혈압약, 신장약 이런 약을 드시니까. 우리집 가서는 무슨 약 가오고, 시켰어. 머 툇툇 한 잠바 하나 가온나 시켜서 가지고 올라왔는데 거 항상 우리 막는다는 그 묘있는데 거 김밥하고, 짐을 지고 온다는 연락을 받았어. 산에서. 그 딱 가니까 막더라네. 못 간다하면서. 왜 못가냐 이 밥이 다 저위에 사는 사람들 밥이다. 이러면서 이라니까. 한 끼 굶어가 안 죽는다 하더라네. 한 끼 굶어서 밑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 경찰이 막았으니까. 한 끼 굶어서는 안 죽는다 하더라. 물론 한 끼 굶으면 안 죽어. 안 죽기는. 거 약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약은 경찰이 우리보고 내려와서 받아가라고 하더라대. (중략) 까는거 몇 개하고, 이래 왔어. 위에 비닐종이 덮으라고 비닐종이하고, 하얀 모포, 아니 못자리 할 때 위에 덮는 하얀 천 같은 거 하고, 덮고자라고, 이불 같은 거는 일체 안 올려주니까. 그러면서 경찰이 하는 말이 이불 같은 건 일체 반입이 안된다는 거야. 가면서 내가 왜요. 이러니까 아휴 안 된다는거야."

(2) 부적절한 응급 진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지원에 대한 통제

주민들은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 위의 농성장에서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거나, 추위를 피할 수 없는 노숙, 길 없는 곳을 이용한 산행 등 무리한 통행이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고령의 주민들의 건강은 상시적인 체크가 필요하고, 열악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천막 설치나 생필품 반입, 통행 제한 해제 등이 필요함에도, 경찰은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의료진이 신분증을 보여줌에도 출입을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현장에는 한전의 구급차가 대기 중이나, 자격 있는 의료진인지 의심스러우며, 부적절한 응급 진단으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을 산 경우도 있었다. 현장에 따라 119 구조대가 대기하는 곳도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주민들은 경찰과의 충돌 후에도 산 위로 119가 올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경찰은 구급차를 대기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모든 안전조치를 취했다는 태도지만 이것은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가 아니라 주민이 쓰러지면 병원으로 이송을 시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경찰은 주민들이 농장에 머무르는 한 건강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의료진의 출입과 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물품 반입 등을 통제해왔다.

사례1

10월 3일 126번 현장에 한전 측 구급차(한전의료재단 구급차) 직원이 가운을 입고 단식농성주민들을 진료하려 하자, 의사가 정말 맞는지 문자 대답하지 않았다.

10월 3일 109번 현장에서 경찰과 몸싸움 후 들러나와 바닥에 늘어진 주민에 대해 한전측 의료진이 눈을 뒤집어보고 의식이 있으니 괜찮다며 방치했다. 주민측이 119를 불러 후송할 때까지 약 2시간 가량, 한전측 의료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당 주민은 후송된 병원에서 갈빗대 2대가 부러진 것으로 진단 받았다.

10월 5일 오전 7시경 한의사 2인이 126번 현장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살피기 위해 올라가려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4시간가량 진입하지 못했다. 한의사가 국가인권위에 전화로 진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하자 국가인권위가 경찰에 요청하여 현장에 갈 수 있었다. 차로 진입을 허락하지 않아 의약품과 의료 기구를 들고 걸어갔다. 주민들의 건강상태는 기존의 질환들이 좀 더 악화된 상황이며, 노숙으로 인해 대부분이 감기증세를 보였다. 장시간 산길로 통행을 해 다리, 관절에 무리가 된 상황이었으며, 한의사에 의견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는 것이라고 했다.

주민 강OO 인터뷰 (10월 3일, 109번 현장 상황)

"사람이 처억 들려 나오는데 추욱 늘어진거야. 그날 땅에 비도 오고 이랬어.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땅이 축축했어요. 이런 자리도 없고, 저런 것도 이런 깔만한 거 없었어. 대충 몸 그거 할꺼만 깔고, 사람을 눕힌거야. 그래 한전에서 의사라고 있어. 저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씀. 그 할머니 눈을 이리 뒤집어보더만은 의식이 있어 괜찮네. 이러는거예요. 의식이 있어 괜찮다는거야. 그럼 우리가 뭐랬노. 니가 의사가? 의식이 있어 괜찮다. 이게 말이라고 하냐고. 그럼 여서 사람이 죽으라는거냐고 뭐고. 이러면서 의식이 있어 괜찮다면서 그래서 욕을 진탕했어요. 들어가라고. 의식이 있어 괜찮다. 이기 무슨 말이냐고.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 많이 안 다쳤나. 이게 아니고, 의식이 있어 괜찮다라는. 그게 무슨 그거냐고. 그 때 119를 불렀어. 부르니까 헬기가 못 떠 안개가 많이 끼가지고, 비가 오니까. 거기 헬기가 안 되니까. 그니까 대원들이 올라와갔고, 이거 하는데, 저거 올라오는 시간이 젊은 사람이라도 50분 걸리니까. 개가 다시 내려가고 했잖아요. 그 할머니가 병원에 가니까 갈비뼈 두개가 금이 갔다 안카나. 우리는 허리를 많이 다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갈비뼈 두개가 금이 간거야. 두 시간 넘게 거기 누워있었을꺼야. 금께 119가 올라온거야."

사례2

10월 24일 밀양댐 입구에서 경찰은 탱크로리 운전자에게 주민들이 있는 앞으로 오라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시를 하였다. 탱크로리가 1m 정도 앞으로 오게 한 후, 여경들을 불러 바로 주민6명을 여경 20여명이 들고 옮겼다. 당시 지휘자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 묻는 감시단의 물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래쪽 도로로 이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8시반경 78세 할머니가 여경의 팔꿈치에 부딪쳐 실신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경찰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머리가 부딪힐 리가 없다며, 응급조치를 취하려는 감시단의 출입까지 막으려 했다. 감시단은 할머니의 이마에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멍이 안 보이냐고 항의했고, 그제서야 감시단은 주민들을 둘러싼 여경들 틈 사이로 들어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다. 8시 50분 응급차가 와서 이송했다. 당시 여경들은 안경을 낀 할머니가 있었지만 그에 대한 안전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24일 만이 아니라 그동안 경찰이 주민을 고착하거나 연행할 때 안전조치가 전혀 없어 안경이 깨지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경찰은 오히려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사진9] 탱크로리를 주민 앞으로 이동시키는 경찰



[사진10] 주민들의 사지를 들어 옮기는 여경



[사진11] 이마를 다치고 쓰러지신 주민

(3) 신체적 자유에 대한 모욕적 침해

경찰이 주민들을 강제로 옮기거나 노상 감금하는 사례들은 앞서 살펴본 바 있다. 경찰은 경찰의 직무 수행 특성 상, 시민의 신체에 강제를 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보았을 때, 과연 경찰의 직무 수행이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것이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사례1

10월 2일 126번 공사 현장 인근에서 농성 중이던 주민 한 명을 경찰이 이불로 말아 강제로 119 구급차에 싣고 이송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주민은 폐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으로, 이러한 경찰과 119 구급대의 행동은 사실상 강제 납치로 보인다.

주민 신00 인터뷰

"그 사이에 우리 한 명 있던 언니를, 저희는 처음에는 왜 우리를 일곱명이 제가 있던 자리에 있었는데 한 사람을 거진 스무 명이 에워싼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한 명 있는 언니를 자기네가 한전 공사 현장에 가장 가깝게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걸리적거리고, 보기가 안 좋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담요에 뽁뽁 말아서 119에 신고 가려고 우리를 에워 쌓던 거야. 안가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을. 진짜 무슨 짐 꾸러듯이 싸가지고 싣고 갔거든요. 그럼 너무 비참하지. 안가겠다고 괜찮다고 하는데도 무슨 짐짝 싣고 가듯이 가는거예요. 가다가 동네 내려가면서 우리가 전화를 하니깐 그 동네에 도방동 쪽에 사람이 물어봤어요. 이분이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가는거냐고 119 사람이 대답을 못했다 하더라구요."

사례2

10월 16일 단장면 바드리 마을에서 경찰은 도로에 앉아 있던 여성 주민들을 도로 밑 캠핑장으로 강제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이 때 경찰 지휘관은 여성 주민 한 명당 여성경찰 6명과 남자경찰 1명이 붙어서 사지를 들고 이동시키도록 지시했다. '주민의 신발을 벗길 것'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민 이00 인터뷰 (동화전 마을, 16일 상황)

"침에 서가있었는데 여경들이 내몸을 잡아뿌니까 자연히 사람이 눕게 되더라고요. 끌려가는 비참함 꼴을 보이기 싫어서 누워부니까. 한 팔에 두서이서 달라붙어 목하고 이래 다리 들어부니까 내가 꼼짝할 수 없으니까. 나는 차를 이렇게 한다니까, 나는 내 몸 하나를 하는 건데 옷을 우에하다본게니 여경들이 저 옷까지 벗겨질 지경까지 됐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이 벌어지니까 나도 우에 돌아갔는지 상황이 잘 모르겠고 머리도 희미하니 그런데. 몸싸움을 하다본게네 난 몸 안 끌려갈라고 하고 하니깐 우에 옷이 벗겨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옷이 벗겨져있더라고. 완전히 위에 티가 다 벗겨져있더라고 잠바만 걸쳐져 있는 상태고 티가 다 벗겨져 있더라고."

(4) 주민들에게 인격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조롱과 폭력적 대우

사례1

10월 22일 바드리 마을에서 오전 11시경 두 번째 레미콘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도로에 뛰어들었던 20

대 여성에게 경찰들과 사복이 계속 쫓아 왔다. 그 과정에서 사복 경찰이 "너 네 엄마는 이런 것 아냐?" 등의 조롱 섞인 말로 자극하였다.

사복 경찰들에 의한 조롱과 폭언은 10월 초부터 있었다고 주민은 증언했다. 동화전에 사는 강 씨의 경우 10월부터 어디서 온지 모르는 남성 사복경찰들이 강 씨의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긴, 아니건 이름을 부르면서 "강00 왜 왔냐? 집에 가지."라며 조롱하듯 물었고, 심지어 쫓아다니며 이름을 불렀다. 강씨가 "왜 자꾸 쫓아 다니냐, 그냥 놔둬라"라며 항의하였지만 오히려 "보고 싶어서 그렇다"는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하기도 하였다. 강 씨는 사복경찰의 이름을 모르고 사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경찰이 안다는 것도 두려운 일로, 이는 사찰에 가까운 사생활침해일 뿐 아니라 당사자를 위축하게 만드는 위협적 행동이다. 경찰에 의해 자신의 이름이 불려서 위협과 분노를 느낀 사례가 더 있다고 주민들은 진술하고 있다.



[사진12]사복 경찰들이 밀양 현장에 곳곳에 있는 모습. 주민은 그들의 신분과 소속을 전혀 알 수 없다.

주민 강00 인터뷰

"우리는 힘이 약하니까 못막아가지고 우리가 뭐를 잡고 있다고 뺏기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그때는 막 울고불고 막 구부는데??진정을 시켰다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그라겠노 싶은 그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 정말 그때 우리가 정말 비참하고 비참해. 딱 들어가드만 포크레인 소리가 딱 나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해야되나 정신이 제정신이 안 되는거야 그래가마 경찰을 밀어 붙이면서 비키라. 그래가 또 하면은 할머니 이제 그만그만 이러는 거야 우리보고. 우리가 뭐 장난치러 온 거도 아니고 그게 하면 우리가 밀고 들어가겠다 뚫을라고 하면 한참을 하다보면 애들이 힘드니까 저그 애들이 힘드니까 그만 좀 하라는 거야. 그만했으면 됐다는 식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거라. 그거는 아니다 이거야. 그만했으면 됐습니다 이러는거야 진짜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데 저거는 무슨 장난 비슷하게 이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사례2

주민들이 공사 현장 인근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찰이 강제로 막아서거나 감시하면서 인격적 모욕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경찰력이 행사되고 있다.

주민 이OO 동화전 마을

"우리 첫날 경찰하고 대응했을 때 우리는 올라갈라카고 경찰은 못 올라가게 저지를 할 꺼 아입니까. 그 순간 많이 벌어지는데. 경찰들이 하는 말이 '끌어내' 카는 거. 그건 인격적 모욕이거든요. 끌어내. 할머니들을 보고 끌어내 카는 거는 인격적 모욕이고. 우리처럼 촌에서 살아 할머니들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 70 80 평생 살면서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었을 건데. 그런 말 억수로.

(중략)

좋은 말로 하고 할머니 카면 되는데 첫마디가 지휘하는 사람들 말투가 그런가 인간성이 그런가 잘 모르겠지만 말 어른들한테 대하는 말투가 처음에는 다르니까 할머니들은 분노할 수 있고 평소에 안 듣던 말을 어르신들이 지금 다 듣고 있단 말입니다. 끌어내. 밀쳐버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주민 신OO 인터뷰

"하다못해 그 125번 공사 들어간 날은 하다못해 인제 뭐야 화장실 가는 거를 산에서 불일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불일 보러 가는 걸 제지를 안했어요. 그 날은 그것까지는 막은거예요. 우리가 그 불일 보러 산으로 가면 따라와가지고, 내 불 일 본다 하는데도 안 된다는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쪽을 통해서 다른 현장으로, 125번으로 갈까 싶어서. "내 짐 너무 급하다." 그러면 여기서 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봤잖아. 김**씨. 김**가. 그 애들 방패 서있는데서 봤잖아요."

주민들은 자신들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언론의 취재 기자 등이 있을 때는 부드럽게 바뀐다고 증언하고 있다.

주민 신OO 인터뷰

"틀리죠. 기자분이 계시거나 이러면 말하는 것부터도 유해지죠. 부드럽게 할라고,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에는 만약에 자기들이랑 우리랑 부딪힐 경우에 그야말로 때기장 쳐요. 잡아 땡기고, 밀고, 그런데 카메라가 있거나 외부 사람들이 있거나 하면 조금씩 조심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없으면 진짜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들끼리 죽어도 모르겠구나 하는 말을 하는거예요."

III. 결론

현재 밀양의 각 공사 현장과 인접한 마을에는 주민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경찰 병력이 상주하다시피 하며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실정법에 따라 한전의 공사 진행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경찰력이 행사되는 규모와 통제 수준은 그것이 필요한 범위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 200명의 주민을 막기 위해, 그것도 고령의 주민들을 제압하기 위해 3000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경찰은 한전의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공사 현장과 마을에 경찰 병력을 투입했다. 또한 지금 주요하게 경찰의 경비 작전이 이루어지는 곳은 공사 현장과 그 경계가 아니라, 공사 현장으로부터 분리되어있는 주민들의 농성장이나 그곳으로 향하는 도로, 혹은 산길로 최소한 1~2km, 많게는 5~6km는 떨어져 있는 마을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전의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곳에서 경찰력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마을에서부터 주민들이 산길로 들어서는 자체를 막거나, 공사 현장 근처의 농성장에 모이거나 시민들이 그곳에 방문하는 것을 막고, 아예 마을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치는 등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직권 남용의 혐의를 피할 수 없다. 생활과 생업의 공간인 마을에 무장한 경찰 병력이 대규모로 상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령의 주민들은 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주민들의 농성장에 식량 및 생필품 반입을 금지하는 것, 의료진의 방문을 방해하는 행위에 더해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경찰기동대의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행동들은 사실상 고령의 주민들에 대한 학대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한다. 평생 무장한 경찰 병력을 접해본 적도 없는 주민들에게 경찰기동대의 폭력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는, 직접적인 폭력 행사와는 별개로 그 자체로 심각한 심리적 상흔을 남기고 있다.

경찰의 채증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무리한 경찰력의 행사에 주민들이 입을 열 김새만 있어도, 경찰의 채증 카메라들은 위협적으로 들이 대어진다. 마을에 드나드는 사복 경찰들은 주민들의 이름과 성향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상 경찰의 채증 활동은 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감시 사찰인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에 의해 예외적으로만 제한된다. 그러나 현재 밀양 공사 현장의 주민들은 사실상 이러한 자유들의 박탈을 경험하고 있으며, 자의적인 경찰 통제 아래에서 자유와 권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자유의 보장이 기본이고 예외적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통제가 기본이고 예외적으로만 자유가 허용되는 상태, 이런 헌법적 가치와 질서가 전도된 밀양의 현재 상황을 우리는 사실상의 경찰 계엄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고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한전의 무리한 송전탑 공사 강행을 위해, 경찰은 주민들에 대한 비인도적 조치까지 감행하며 주민들의 항의 의사를 제압하고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들은 경찰에 다음을 요구한다.

1. 경찰은 주민들의 삶터인 마을에서 즉각 철수하라.
2. 경찰은 주민들에 대한 신체적 폭력과 비인도적 조치, 모욕적 언행을 중단하라.
3. 주민들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4. 마구잡이 사법처리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5. 공격적이고 주민을 위협하는 채증과 감시를 즉각 중단하라.
6. 인권침해 책임자를 처벌하라.
7. 피해 주민에 대한 회복적 조치를 실시하라.

송전탑 건설 과정 중 밀양 주민
건강권 침해 실태



송전탑 건설 과정 중 밀양 주민 건강권 침해 실태

이상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편집국장)

송전탑 건설을 위한 공사 재개 이후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 더불어 갈등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증진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1. 토착민의 건강권 침해

“많은 경우 토착 공동체에서는 개인의 건강이 사회 전체의 건강과 연결되며 집단적 측면을 갖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위원회는 토착민을 그들의 의지와 상반되게 그들의 전통적인 지역 및 환경으로부터 이주시켜 그들의 영양 공급원을 빼앗고 영토와의 공생적 관계를 끊는 개발 관련 활동은 토착민의 건강에 해로운 효과를 미친다고 본다.”
- 유엔 사회권 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 27항 중에서

- 현재의 갈등 상황과 관련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송전탑 건설 공사는 “밀양 주민을 그들의 의지와 상반되게 그들의 전통적인 지역 및 환경으로부터 이주시켜 영토와의 공생적 관계를 끊는 개발 관련 활동”이므로 주민 건강을 해치는 행위임
 - 송전탑 건설 행위가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강제 이주와 맞먹는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크나큰 건강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음

2. 갈등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건강 피해

가. 영양불량과 빈약한 영양 섭취

- 영양불량과 빈약한 영양섭취는 또한 노인들을 부적절한 위협에 처하게 하고, 그들의 건강과 활력에 역효과를 줄 수 있음
- 현재 송전탑 공사를 막기 위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인들은 그 과정에서 식사를 거르거나 빈약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노인들은 영양불량과 빈약한 영양 섭취로 인해 기존 질병의 악화와 영양 관련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있음

나. 독감에 걸릴 가능성 증가, 감기로 인한 폐렴 등 호흡기 질환 가능성 증가

- 영양 불량과 빈약한 영양 섭취가 지속되면 인체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 바이러스에 취약한 상태가 됨
- 기온이 낮아진 상황에서 산 속에서 장시간 있게 되는 상황도 바이러스에 취약한 상황으로 만들

- 현재 지역사회에서 계절성 독감 예방접종이 진행 중인데, 갈등 상황 중에 계절성 독감 예방접종의 기회를 상실하면 독감에 이환될 가능성 증가
- 적절한 휴식과 치료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할 경우 노인들은 단순 감기가 폐렴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은 노인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음

다. 부상의 가능성 증가

- 매일 높은 산을 오르내리는 와중이나 경찰, 한전 직원 등과의 마찰 과정에서 근육, 관절, 인대 등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증가
- 구체적으로는 각종 부위의 관절염, 요추부 염좌 등 요통, 타박상 및 골절의 위험 증가. 특히 노인의 경우 관절, 뼈, 인대 등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부상의 위험성이 더욱 증가된 상태임

라. 심혈관계질환 발생 및 악화의 위험성

-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이 많음
- 이러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과도한 신체 활동, 기온이 저하된 환경에서의 급격한 신체 활동, 갈등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 급격한 분노와 흥분 등을 겪게 되면 기존 만성질환이 악화되거나, 심혈관계질환이나 뇌혈관계질환과 같은 심각한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음

마. 정신건강 악화의 위험성

- 노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신건강에 취약한 인구 집단임
- 그런데 현재의 갈등 상황은 정신심리적으로 매우 강한 스트레스 요인이며, 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현재도 다수인 상황임
- 노인들에게 현재와 같은 갈등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바. 학대, 조롱 등이 건강에 미치는 복합적 효과

- 노화의 진전은 치료능력의 감퇴를 수반하여 노인 학대피해자는 충격으로부터 결코 완전히 신체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회복하지 못 할 수도 있음
- 충격의 영향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도움을 청하기를 꺼려하게 만들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함
- 노인에 대한 학대와 조롱은 일반 성인에게 끼치는 영향보다 더 심대한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

3. 의사에게 치료받을 권리 침해

- 갈등 초기에 농성 중인 지역 주민을 진료하기 위해 방문한 한의사의 진료를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음

○ 실랑이 끝에 진료가 이루어졌지만, 의료진의 치료 행위나 의약품 반입 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한이 되어서는 안됨

○ 이것과 별개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농성장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투여하는 와중에 의료기관에 방문할 시간을 내지 못해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게 되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4. 적절한 응급 의료 및 처치를 받을 권리 침해

○ 어떠한 상황이라도 환자 발생시 환자는 우선적으로 응급처치를 받을 권리가 있음

○ 특히 노인의 경우 건강한 청장년과 달리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경우 상처나 질환이 더욱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과 한전 직원은 주민과의 갈등 여부와 상관 없이 사고나 부상 발생시 응급 처치나 의료기관으로의 후송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함

5. 소결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갈등은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관리할 기회를 잃게 되는 상황으로 몰고가고 있음

○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 증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주체로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이행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갈등 상황이라도 한전과 주민들간의 이완/완충 지대 혹은 시간을 만들어 주민들이 식사, 휴식, 수면 등 건강을 위한 기본적 필요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경찰, 한전 직원 등이 큰 도로를 막고 주민의 이동을 제한함에 따라 산 길 등 더 위험한 도로로 이동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많으므로, 정부는 주민들의 통행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경찰, 한전 직원 등에 의한 신체적, 정서적 폭력, 조롱, 학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경찰, 한전 직원 등과 주민들간 대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밀양 송전탑을 보도하는 언론의 문제점



밀양 송전탑을 보도하는 언론의 문제점

류신환(민변 언론위원회)

1. 밀양송전탑 관련 알려져야 할 사실들 - 보도 대상

가. 언론보도의 일반적 대상

- (1) 사건의 현황(공사강행과 공사저지의 대립상황)
- (2) 사건의 배경과 원인
- (3)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의견(일반인, 전문가 포함)
- (4) 사건의 올바른 해결방법

나. 밀양 송전탑 건설에 관한 주요 (보도 대상) 사실과 의견

- (1) 민가와 농지에 근접한 곳에 초고압 송전탑 건설 - 주민들의 재산과 건강에 대한 위협
- (2) 송전탑 건설의 불필요성 - 기존 송전선로로 신고리 3호기 송전가능, 고리1호기 폐쇄시 선로의 여유 확보 등
- (3) 건설 방법의 대안 - 우회로, 지중화 문제
- (4) 재산과 건강 위협에 대한 보상과 안전보장 문제
- (5) 전력 시스템의 전환 문제 - 소비지와 생산지(경과지) 사이의 환경불평등 문제, 전기수요 관리의 문제, '지역분산형 전원'으로의 전환 문제 등
- (6) 대립과 갈등의 상황(공사 강행으로 인한 충돌 상황, 공감대 형성의 정도, 여론의 추이 등)

2. 보도의 현황과 문제점¹

가. 주요 신문보도의 현황

- (1) 갈등 대치 상황이나 폭력 난동 상황을 보도하는 내용이 전체의 70%, 원인을 진단하거나 해결방안을 모

1) 이하에서 인용하는 표와 해당 내용은 [이병남,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 2013. 10. 16. '밀양 송전탑을 보도하는 언론의 양심과 역할' 토론회 발제문]에서 인용함.

색하는 보도 내용은 전체의 15%에 지나지 않음. 특히 조선, 중앙은 원인진단, 해결방안 기사를 한 개도 보도하지 않음.

〈표〉 밀양 송전탑 관련 보도 량(10월 2일~14일)²

신문사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합계
일반 기사	갈등 대치 / 폭력난동(%)	11(58)	12(80)	10(77)	4(57)	18(72)	55(70)
	원인 진단 / 해결방안 모색(%)	6(32)	1(7)	0(0)	0(0)	5(20)	12(15)
	주민지원법 통과(%)	1(5)	0(0)	1(8)	1(14)	1(4)	4(5)
	법원, 한전 가처분 신청 수용(%)	0(0)	1(7)	1(8)	1(14)	0(0)	3(4)
사설(%)		1(5)	1(7)	1(8)	1(14)	1(4)	5(5)
합계(%)		19(100)	15(100)	13(100)	7(100)	24(100)	79(100)

(2) 아래 조중동의 기사들에서 보여지듯이 주요 보수 언론들은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인하여 대립 상황이 폭력적으로 격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특히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통진당 당원들이 마치 구덩이를 파서 극렬행동을 부추기고, 혈압 위험 할머니의 병원행을 만류한 것처럼 왜곡, 허위보도를 함으로써 전력 정책(공공정책)에서의 주민 권리 보장의 문제를 '이념대립'의 문제로 인식되도록 본질을 왜곡하고 있음. 위사안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민들의 반박 기자회견은 보도에 거의 반영되지 않음.

〈표〉 '통진당 등 외부세력' 언급 기사내용³

신문사	제목	내용
동아	〈'원정 시위대' 속속 집결...밀양, 제 2의 강정마을 되나〉 (12면, 10/4)	통진당 등 야당-민노총-시민단체 송전탑 반대 경남대책위 참여 현장사무소 앞 옴막서 농성 주도
	〈송전탑 공사 방해 외부인 11명 연행〉(12면, 10/4)	야적장 주변에서 경찰의 채증활동을 방해한 조모 씨 등 2명이 연행되는 등 이날 하루만 외부인 1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외부 세력은 밀양을 떠나라〉(사설, 10/4)	10년 전 전북 부안에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을 둘러싸고 빚어진 극심한 갈등도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증폭됐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외인부대들은 제발 떠나주기 바란다.
	〈"송전탑공사 대치상황, 외부인 지원은 뒤 과격해져"〉 (12면, 10/7)	몸 아픈 할머니 병원에 모시려 해도 외부인사가 은근히 만류...한참 실랑이

2) 이병남, 위의 글, 21쪽.

3) 이병남, 위의 글, 22쪽~23쪽.

조선	<밀양 송전탑 공사 막아선 통진당원들>(1면,10/3)	주민 외에 통합진보당 관계자 50여명 등 좌파 진보 세력들도 가세해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밀양 시위 70명 중 주민은 15명가량...나머진 통진당 등 외부세력>(8면,10/3)	경찰은 이날 현장에 있었던 70여명 중 주민은 15명가량, 나머지는 외부세력인 것으로 파악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에 끼어든 통합진보당의 속셈>(사설,10/4)	구속된 이석기 의원이 소속된 통합진보당 세력이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 반대 시위의 주력부대로 활약하고 있다. 통진당은 반경권·반대한민국·친좌파·친북한 세력이 함께 뒤엉켜있는 시위현장을 주도해 자신들의 대한민국을 향한 공격행위를 정권 반대행위로 위장하고 반정부 세력 내부에서 자리를 굳히려는 전략이다.
	<동력있는 외부세력, 밀양서 모습 감춰...한풀거인 시위>(8면,10/5)	이날은 통진당 등 극렬 시위를 주도하는 외부세력도 모습을 감췄다.
	<통진당 당원들, 밀양 송전탑 현장에 무덤 구덩이 파고 올라가미 줄 내걸어>(1면,10/7)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무덤 형태의 구덩이를 파고, 밧줄 올라가미와 휘발유를 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세력으로 개입한 통진당원들이 극렬 행동을 부추기는 도구를 만들어 놓고 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밀양 외부세력, 혈압 위험 할머니 병원행도 만류”>(12면,10/7)	<“밀양 외부세력, 혈압 위험 할머니 병원행도 만류”>(12면,10/7)
중앙	<목줄 구덩이...통진당원, 송전탑 섬뜩한 반대 시위>(14면,10/7)	목줄과 구덩이는 지난 5일 통진당원 30여명이 만들었다. 목줄을 달고 구덩이를 파는 작업에는 주민 2명이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송전탑의 '죽음 퍼포먼스'>(사설,10/8)	공사가 강행되면 올라가미에 목을 걸고 시신을 무덤에 내려놓으라는 선동과 압박이 아니고 무엇인가..정부도 섬뜩한 죽음의 퍼포먼스를 주도한 세력이 누군지, 왜 그랬는지 진상을 파악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동아일보는 10. 3.자 10면 <“송전탑 민가 근접...전자파로 암 위험” vs “과학적 근거없어”>라는 기사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민가와 농토에 가깝게 설계됐다”, “전자파로 암이 발생할 수 있고 재산권 행사도 어려움이 있다”는 밀양 주민들의 주장을 나열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듯 하였지만 “실제상 불가피한 일, 최선을 다했다”, “전자파는 과학적 근거 없다”는 등의 한전의 의견을 덧붙여 사실상 주민의 의견에 대한 반박기사가 되었고, 중앙일보는 사실에서 밀양 주민은 국가보상의 혜택을 보는 당사자로 규정하며 이에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만을 위한 반대행위를 하는 것으로 단정함(“ 정부는 9월 국회에 주민에 직접 개별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송 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려놓았다. 이 법의 첫 수혜자가 밀양 주민이 될 전망이다. 이 정도면 정부로선 할 만큼 한 셈이다. 되레 ‘버틸수록 더 보상받는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까 걱정일 정도..”)⁴

나. 지상파 방송 3사 보도의 현황

(1) 방송 3사 역시 주로 주민과 경찰의 대치 상황을 화면으로 사용하여 ‘갈등 대치’와 ‘폭력’ 프레임으로 보도함⁵.

4) 이병남, 위의 글, 25~26쪽.
5) 이병남, 위의 글, 27~28쪽

<표> 지상파 방송3사의 뉴스 제목

방송사	배치	제목
KBS (10건)	간추린단신	‘송전탑 주민 지원법’ 국회 산업위 통과(10. 7)
	간추린단신	밀양 송전탑 공사 속도...큰 충돌 없어(10.6)
	간추린단신	송전탑공사 나흘째 대치(10.5)
	9번째	충돌우려...자제 촉구(10.4)
	8번째	충돌거듭...부상자 속출(10.4)
	9번째	충돌계속...11명 연행(10.3)
	5번째	주민 반발 속 공사재개(10.2)
	6번째	"공사 반대" 곳곳 충돌(10.2)
	7번째	[데스크분석]송전탑사태의 진실(10.2)
	8번째	공사 재개 앞두고 '충돌'(10.1)
MBC (6건)	3번째	경찰에 분노 뿌려(10.10)
	4번째	팽팽한 대치..외지인 집결(10.5)
	4번째	외부세력 개입 자제 촉구(10.4)
	6번째	[집중취재] 밀양 송전탑 해결책 없나?(10.3)
	5번째	공사 재개 격렬한 충돌(10.2)
	13번째	송전탑 공사 내일 재개(10.1)
SBS (5건)	20번째	공사6일째.. "외부개입? 외부지원?"(10.7)
	1번째	이틀째 공사 강행..충돌 격화(10.3)
	2번째	접점 못 찾는 갈등..新 고리원전은?(10.3)
	6번째	126일 만에 공사 재개..충돌·농성(10.2)
	7번째	공권력 투입..내일 송전탑 공사 재개(10.1)

(2) 아래 방송 3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한전 담당자들의 인터뷰 내용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인상을 준데 비해 밀양 주민의 의견을 담은 인터뷰는 주로 대립상황 자체에 관한 감정적인 내용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내용은 찾기 어려움⁶.

<방송 3사의 주민 인터뷰 내용>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내 시체를 밀양시청 광장에 놔주십시오. 절대로 병원으로 이송하면 안 됩니다.” (MBC 10. 1)

“뭐가요? 우리가 죄 지었어요? 우리가 죄 지었어요?”(MBC 10.2)

“연행자 풀어주라고..왜 안 풀어 주는데..” (MBC 10.3)

“나와라 나와라..우리도 정정당당하게 갈 수 있잖아요.” (MBC 10.4)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력소비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는데 그 희생은 고스란히 밀양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동참했죠.” -이보아 (MBC 10. 5)

이계삼/송전탑 반대 대책위 사무국장

"(열흘간) 주민과 경찰의 충돌로 30여 명이 쓰러지고, 아직 6명이 입원중입니다." (MBC 10.10)

이계삼(송전탑 반대 대책위) : "주민들이 60-80대 노인들인데,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6) 이병남, 위의 글, 29~30쪽.

상황입니다."(KBS 10.1)

이보아(탈핵 희망버스 기획단) : "공사를 위해서 자재를 여기서 실어나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 이 행위를 멈추라고 요구하고..."(KBS 10. 2)

김준길(반대마을 주민) : "밑에서 밀고 위에서도 밀고하니깐 가운데 들어간 주민들은 이렇게 끼게 돼 있습니다."(KBS 10.2)

김응록(반대주민 대책위) : "현재 한전이 하고 있는 일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있습니다."(KBS 10.4)

이계삼/반대대책위 사무국장 : 주민들이 8년간 싸워온 이유가 있고 그 사이에 쌓여왔던 분노나 좌절감, 국가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SBS 10.1)

이종숙/밀양시 산외면 보라마을 이장 :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걸 지켜내고 결코, 이거를 막아내겠습니다.(SBS 10. 2)

김기엽/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 이 토지는 마지막 버팀목이면 최후의 나를 지켜주는 통장인데 이것을 잃어 버린다면...(SBS 10. 3)[한 모 씨/마을주민 :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공사) 좀 멈춰달라고 아침에 절을 수천 번 했어요. 옆드려서 큰 절을. 그래도 (헬기가) 뜨고.(SBS 10. 3)

박영순/밀양 동화마을 주민 : 우리는 (땅을) 판다고 한참 파니까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오더니만 할머니 욕 뱉는다. 욕 뱉는다 하면서 거들어 주데.(SBS 10. 7)

다. 언론보도의 문제점

- (1) 사안의 배경, 원인, 해결방안 등에 대한 심층보도의 부족.
- (2) ‘지역이기주의’를 중심으로 외부세력, 종북(통진당)논란 등을 덧씌어 사안을 왜곡함.
- (3) 공정한 보도 대상(위 1.항)에 해당하는 사실과 의견의 전달 노력 필요.

헌법적 측면에서 본 밀양

오 동 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헌법적 관점

프란츠 노이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Neumann, 1957: 168-169).

법은 (실제로는) 지배일 뿐이다. 사람에게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뿐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니라 법이 지배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한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 법의 지배라는 관용구의 이데올로기적 내용은 그것을 만든 나라의 정치구조에 따라 크게 다르다.

법치는 모든 사람이 사회적 지위나 소유하고 있는 자원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주장을 넘어 법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위험을 내포하는 ‘권력’이나 ‘권위’ 자체와 대립하는 위치로 개인들을 끌어 올려야 한다(로위)(한상정, 1996: 341-342).

헌법은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권영성, 2010:3)이다. 판례에 따르면,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준수하고 그 권위를 보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헌재 1989. 9. 8. 88헌가6).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면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명령하고 있다. 한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묵숨으로 항변하는 수많은 반대를 무시하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니다. 밀양은 송전탑 건설의 결정 자체는 물론 그 이후의 2차 폭력까지 국가폭력의 불법성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밀양에서 저지른 ‘공권력의 인권 침해 사건’은 정부에 대한 주요 심판대 중 하나이다.

II. ‘기본적 인권’의 관점

1.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 침해

국가는 일정한 범위의 공간을 기초로 하여 존립한다. 영역에 관한 배타적 권력이 영토고권(領土高權)이며, 이는 주권의 핵심요소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면, 국가의 존재이유가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영토 내에서 평화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개인들에게 핵심적 기본권이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헌법 제2조 제2항)까지 지고 있다. 그렇다면 영토 내에서 국민의 삶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핵심의무이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

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 한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은 최고의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목표규범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며, 그리하여 국가는 인간존엄성을 실현해야 할 의무와 과제를 안게 됨을 의미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 즉 “자신이 태어난 고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전통문화를 기리면서 삶을 영위하는 권리”를 기본권으로서 인정한다.

국가의 영토고권은 국민이 가지는 영토권에서 유래하는 것이고, 모든 국민은 영토 내에서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를 가진다. 삶의 터전이 파괴됨으로써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또한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 헌법재판소는 “지역개발이나 국가시책 등에 의하여 고향을 떠나 이주하거나 강요하거나 고향이 상실”됨을 예로 들어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설명한 바 있다(헌재 1994. 12. 29. 94헌마201).

밀양에 송전탑을 건설하는 것은 “초고압 송전탑으로 인한 환경파괴, 건강피해, 농사피해 등의 우려”(양이원영, 2013: 3)가 있는 점에서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토지 강제 수용은 송전탑 건설 인접 토지에 불과하고 수용비용도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 이므로 실제 토지 수용비는 절반이하에 불과하여 그 비용으로 다른 곳에서 토지를 구매하기 어려워 오랫동안 지역공동체를 구성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양이원영, 2013: 3).

“한전에서는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인근에 건설되더라도 ‘농사는 계속 지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토지의 가치가 폭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제 때문에 송전탑 부지와 선하지 소유자에 대해서만 소액의 보상금을 개인에게 지급한다. 그 외 주민들은 개인별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 고령의 주민들이 더 이상 영농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 송전탑과 송전선로 건설이 예정된 후 개별 보상 범위 밖에 있는 광범위한 지역의 토지 자산가치도 이미 ‘0’이 되었다. 매매는 물론 담보대출조차 불가능하다. 노후연금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한국에서 농민들의 노후연금은 사실상 토지뿐인데, 현 상황에서 송전선 주변의 주민들은 일할 능력을 상실한다면 자신의 삶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2013: 23).

“밀양의 주민들은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해왔고 생업인 농사를 이웃과 함께 지으며 협업과 유대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왔다. … 그렇기 때문에 송전탑 공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겪게 된 이웃에 대한 배신감이나 분노가 주민들에게는 낯선 만큼 더 고통스럽게 다가갔다. 또한 농사를 비롯해 땅을 매개로 일과 삶을 함께 공유해온 이웃이 땅과 고향, 터전을 팔았다는 것이 반대 주민에게는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하였고, 찬성 주민은 매향노로 물리는 것에 분개하여 서로 소통을 단절하게 되었다. 소통은 끊긴 채로 서로를 향한 비난, 왜곡으로 갈등은 더 깊어져만 갔다(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2013: 43).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송전탑 건설은 단순한 재산권 침해를 넘어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삶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2013: 23).

2. 구체적인 ‘기본적 인권’ 침해

가. 알 권리 침해

알 권리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 등의 주체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알 권리는 모든 의사결정 및 표현의 자유의 전제이다. 특히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은 투명성과 공개성에 있기 때문에 정보의 차단은 곧 공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밀양의 경우 송전탑 건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보가 이해/피해당사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되지 않았다. “특히 주민설명회 진행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왜 개최하는지, 765kV 송전탑의 영향이 어떠한지,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는 왜 송전탑을 건설할 수 없는지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삶의 기반, 공동체, 생활환경, 생산수단을 포기해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2013: 19).

나. 건강권 침해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인적·자연적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헌법 제34조 제6항)와 ‘모든 국민은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므로 ‘국가와 국민이 건강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제35조 제1항)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의 보건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은 물론 보건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경우 이를 국가에 의한 간접침해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오동석, 2008: 73-74). 환경보건법 제13조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건강영향평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식주에 관한 권리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생명 유지와 인간다운 생존의 필수적 권리가기 때문이다. 오늘날 신체의 자유의 외피로서 의(衣)에 관한 권리는 의(醫)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건강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정보는 그 어떤 정보보다 중요하므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한 알 권리는 매우 엄중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과 지식경제부는 송전탑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자계와 공중보건 극저주파 전자계의 노출(Exposure to extremely low frequency fields, Fact Sheet No.322)12)을 왜곡하여 인용해왔다. 이 보고에 따르면, 단기간 높은 전자파에 노출될 때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장기간 낮은 전자파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아직 인체에 어떤 피해를 야기하는지 과학적인 자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소통하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각국의 상황에 맞게 실행할 것을 전제로, 전자파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언급도 있다. 하지만 한전에서는 단기노출 기준이 833mG이기 때문에 장기노출에도 적용할 경우 송전탑의 전자파는 무해하다고 홍보한다. 이처럼 한전은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는커녕 일부 사실을 확대해석하고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키는 등 사실을 왜곡하여 전달하였다”(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2013: 19).

다. 환경권 침해

좁은 의미의 환경권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훼손당하거나 훼손당할 위험에 놓인 자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공권력이나 제3자에 대하여 그 원인을 예방 또는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 대하여 넓은 의미의 환경권은 비단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의 배제라고 하는 소극적 성격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하여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은 넓은 의미의 환경권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각종 공해로 인한 환경파괴적 위험에 대항하여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고자 하는 권리이다.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보호법칙으로 하고, 청정한 환경의 보전과 공해의 배제를 그 보장수단으로 한다. 공해는 사람의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의 배출·폐기·방치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소음·진동·악취·색채 등을 말한다.

환경권의 대상인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와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미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생활환경이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환경을 말한다.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의 대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모두를 포함한다. 헌법이 제35조 제3항에서 “국가는 …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전탑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곳은 대부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어서 송전탑이 건설되면 “자연경관이 파괴되고 송전선로의 영향으로 이 지역들이 전자파의 영향을 받”(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2013: 31)음으로써 자연환경권 및 생활환경권을 침해하게 된다.

“765kV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이 되더라도 안전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한전은 피해가 있다는 증거도 없다는 논리만을 펴고 있다. 그러나 765kV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영농활동에 피해를 입지 않을지 매우 우려하고 있다. 송전선 아래에서 생활하다시피 농사를 짓는 하우스 농의 경우 전자파 우려가 심각하며 그에 따라 인부들조차 오지 않아 재산과 생계가 위태롭다. 특히 송전선로 주변 지역의 주민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도 전자파에 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이 지역의 농산물 판매나 인부들을 고용해 영농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전자파 위험에 대해 과학적 결론이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방적으로 위험을 규제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콜로라도 주에서는 송전탑을 건설시 전자파를 감소시키는 모든 대안을 고려하도록 하여 송전선로를 계획한다. 그러나 지금 한전은 아무런 예방적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2013: 32).

건강권과 마찬가지로 환경권에서도 국가의 사전예방조치의무가 강조되어야 한다. 유해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국가에게 있다. 여기에서 국가는 과소보호금지의무가 아니라 최대보호의무를 진다. 그런 점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헌법

재판소의 판시(2008. 12. 26. 2008헌마419·423·436 (병합))는 비판받아야 한다.

III. 지역적 평등권 및 ‘주민자치민주주의’ 침해

가. 평등권 침해

누구든지 어떤 사유에 의한 것이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한전은 초고압 송전탑이 수도권까지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3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수도권 연결 구간 사라짐) 부산, 경남 지역이 전기 소비 대비 발전량이 200% 가량이므로 환산망을 통한 수도권 공급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수도권 전기 공급을 위해 부산 등 다른 지역의 인구밀집 지역(반경 30km 내 300만명 이상 인구 거주) 내에 위험시설인 원전 12기 건설과 이를 위한 초고압 송전탑 건설은 효율과 비용 측면에서 불합리한 선택”이다(양이원영, 2013: 3).

나. 주민자치민주주의 침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점에서 지역주민의 구체적인 의사는 헌법적 의미를 가진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의한 ‘2할 자치’ 또는 ‘3할 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자치적 지방자치를 무시한다. 심지어 헌법재판소 역시 자기결정권과 자치권의 인정에 인색하다.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공공정책의 결정 내지 시행”이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됨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것이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또한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개별 주민들에게 인정된 권리라 볼 수 없으며”, “주민들의 지역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 내지 주민투표에 관한 권리침해로 이해하더라도 이러한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외면했다. “따라서 국가는 입법이나 조약체결을 통하여 특정 지역주민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항이 아닌 한, 그것이 헌법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전원개발 사업(발전소, 송전탑, 변전소 등)이라는 명분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자연공원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서 허가·인가·면허·결정·지정·승인·해제·협의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소유권자와 지역공동체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양이원영, 2013: 3).

그렇지만 단일한 국민 전체의 의사와 이익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 의사는 구체적인 국민 개인의 의사 또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며, 기본적 인권의 관점이란 소수 또는 약자의

기 때문에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역주민에 대한 일방적인 국가시책의 강요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결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한계가 헌법 또는 국민의 한계는 아니다. 헌법은 주민자치민주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과 법제화를 요청한다.

IV. '적법절차원칙' 위반

적법절차는 입법·집행·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원리이다. 모든 공권력 행사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실제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제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1992. 12. 24. 92헌마8).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보장에서 파생되는 정당한 청문권”, 즉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관하여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공권력행사에 있어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점에서 청문권의 효력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 그것은 정부 또는 국가의 헌법준수 태도에 달려 있다.

송전탑 건설 사업시행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와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조의4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와 제25조 등에 규정이 있다. 이들 규정은 법률 자체가 예외를 넓게 인정하고 있고, 전원개발사업자가 ‘청취한 주민의 의견 타당성을 판단’하는 등 주민 의견 반영의무는 ‘노력의무’에 그침으로써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

그런데 밀양의 해당 주민들은 “2000년 8월 765kV 신규사업관련 설비계획이 확정된 후, 2002년 9월 송전선로 입지선정실무협의회에서 후보 경과지가 선정되고, 2003년 10월 23일 송전선로 입지선정협의회에서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후 의견을 반영하여 최적 경과지가 확정되는 동안” “송전탑 건설 계획에 대하여는 바가 전혀 없었다”(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2013: 14). 그 이후에도 형식적인 협의와 주민 의사의 왜곡이 있었을 뿐이다.

법 자체가 구체적인 정의를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은 절차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구속성은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면, ‘권력의 알리바이용’으로 전락하기 쉽다.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정부의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권위주의적 태도가 유지되는 한 법은 쉽게 장식용이 되어버린다. 일제 식민지 시대와 오랜 개발독재 시대의 과거에 대한 인적·제도적 청산이 없었던 점에서 적법절차는 폭력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축적용으로 아직도 전락해 있다.

V. 밀양에서 국가 등의 2차 폭력

1.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침해

집회의 자유는 대중의 원초적 자유권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까닭은 “지배체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소수의 표현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간섭이나 제한을 배제하는 것은 소수의 권익보장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적 상황에서 언론매체를 소유하지 못한 일반대중이 ... 집회 또는 집단시위와 같은 집단적 행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표현의 장을 구축하고, 그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표명하고 전달할 수단을 확보할 필요는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헌재 2002. 10. 30. 2000헌바67등(병합)).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주민설명회가 진행된 직후인 2005년 11월 상동면 여수마을에서 최초로 송전탑 건설 사업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2013: 51)는 등 그동안 밀양 주민들은 자신들의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였다.

2.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

“2013년 5월 20일 공사가 재개되고, 공권력 투입”된 이래 “밀양 주민들은 전쟁과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다. 가장 일손이 바쁜 농번기에 다시 재개된 공사, 새벽부터, 가장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진행되는 공사를 막기 위한 주민들의 절박한 몸부림이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다쳤다. 밀양 송전탑 공사가 처음 시작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폭력과 인권침해 문제는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어왔다”(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2013: 52).

모욕과 괴롭힘, 폭행, 감금 등 물리적 위협, 고의적인 위험환경 조성으로 인한 부상 유발,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이 이어졌다(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2013: 52 아래). 경비 용역의 폭력은 2012년 1월 16일 이치우의 분신 자결을 초래하였다.

경찰은 현행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체포 및 편파 수사, 시설물 보호를 명분으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잉 대응, 무더운 날 차양막 설치를 막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 방해, 언어적 폭력을 비롯한 모욕 등(밀양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2013: 72 아래) 그 부분을 망각하였다.

3. '공권력' 행사과정의 불법성

“2013년 5월 20일 이후 현장에 투입되어 공사장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들은 그들의 신분(부대명, 이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전혀 부착하고 있지 않았다. 경찰의 식별표식 미부착에 대한 우려는 2009년 국가인권위의 권고, 2011년 한국을 방문한 프랑크 라 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프랑크 라 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A/HRC/17/27/Add.2, 2011.3.21.)

63. 특별보고관은 (중략), 진압 경찰복에 명찰,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전혀 부착

되어 있지 않아 과잉 진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경찰의 경우에도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폭행 또는 기타 형태의 폭력 혐의로 경찰을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경찰이 신분 표시를 부착하지 않는 것은 경찰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인권침해 행위이다”(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2013: 77-78).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 시(제3조 제4항)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시(제7조 제4항)에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모든 공권력 행사는 정당한 권한 있는 기관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민은 언제나 경찰의 신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예컨대 공무수행 중에는 ‘초상권 보호를 위한 경찰의 복면 착용’도 적법절차에 반하는 것이다.

4.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건강권 침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심리적 외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증상을 나타내는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울, 불안, 공포 증상을 나타내는 이들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였다”(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2013: 81 아래).

그 결과 “조사 대상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은 69.6%”이었는데, 이것은 “전쟁 및 내전, 해고 및 농성 진압 과정을 겪은 후에 조사한 비율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이는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겪고 있는 갈등이 사고, 전쟁, 해고 등의 심리적 외상과 비슷한 정신심리적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충격의 강도가 매우 세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향 및 살던 땅을 잃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마을 공동체 붕괴에 대한 안타까움, 한전 직원, 시공사, 용역 등에게 당한 위협적이거나 무례한 행동 등이 가장 중요한 정신심리적 외상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2013: 90-91)는 것이다.

또한 “우울증 고위험군은 40.5%, 불안장애 고위험군은 48.1%, 공포 장애 고위험군은 41.8%였다.” “송전탑 건설 시공사 직원들과의 항상적인 대치 상황과 그로인한 스트레스 및 정서적 충격, 흥분 등은 주민들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송전탑 건설 저지를 위한 활동 중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경험을 확인해 보았을 때, 조사대상자의 36.7%가 부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건설 저지 과정에서 몸싸움, 대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체적인 신체적 피해라고 할 수 있다”(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2013: 90-91)고 한다.

조사결론은 “밀양 송전탑 건설 대상 지역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에 따른 갈등으로 인한 정신심리적 스트레스 및 외상과 신체적 부담으로 인해 정신심리적 피해 및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피해는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더 악화되거나 파국적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2013: 91)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0월 들어 공사가 25일째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병원으로 후송된 주민은 41명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병원치료를 거부하거나 응급처지를 받은 주민을 포함하면 주민부상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대다

수 주민이 고령이라는 점에서 건강에 대한 염려가 크다. 대부분 부상의 원인은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송전탑 공사현장으로 오르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의 충돌과정에서 발생했다(민중의소리 2013. 10. 25).

VI. 맺음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제한가능성은 열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헌법은 기본권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최소한 제한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제한이 가능하려면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하며, 최소한 제한하고, 법익균형성을 맞추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절차상으로는 조그마한 위법성도 없도록 ‘헌법에 합치하게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적 측면에서 밀양 사건을 논의하면서 자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였다. 그것은 현행 헌법체제에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최소한의 유권해석이다. 그러나 권력분립원칙상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헌법이 요청하는 인권의 보장 및 적법절차원칙을 구현하고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말하지 않은 또는 말할 수 없는 헌법규범이 더 많이 존재한다.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넘어서는 국민의 법이다. 헌법재판소는 결정할 수 없지만, 주권자인 국민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 수가 적다고 해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더 이상 헌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 존재하는 ‘힘’은 (공)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준법 운운하며 법을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법이 아니다. 목숨까지 내걸고 저항하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은 ‘악법’조차 되지 못한다. 악 그 자체이다.

밀양 사건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국가폭력의 작동방식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국가의 영토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냈다. 국가는 밀양 주민들로부터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격을 빼앗음으로써 ‘정치적 난민’으로 만들었다. 위헌적 사건이 쌓이고 또 쌓여 이제 정부는 시민불복종을 넘어 저항권행사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전체주의국가가 아닌 바에야 명목만 남은 국가의 이름을 내걸기만 하고 구체적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폭력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정부는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 자체의 재검토를 통한 대안 마련, 그동안의 밀양 주민의 피해 및 공권력의 위법성에 대하여 진상조사 그리고 주민의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주민의 갈등에 대한 회복적 조치 시행 등 밀양 인권침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른바 국책사업의 결정과 시행에 관하여 그리고 원자력발전의 촉감 및 폐기를 포함한 전력정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여 인권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그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모든 국책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거부권을 비롯한 주민자치민주주의의 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하여 더 이상 지방이 서울의 ‘식민지’가 되지 않도록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헌법 제122조) 적정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VII. 참고문헌

권영성(2010). 헌법학원론. 법문사.

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2013).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보고서.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2013. 7. 3.

양이원영(2013). 밀양 송전탑 현황: 추진, 문제점, 주민의 반대 이유와 대안, 현장 상황 등. 2013. 5. 25.

오동석(2008). 친자본·반인권적 보건의료정책 비판과 대안. 민주법학 38, 69-98.

한상정(1996). 사적 이해관계와 공적 질서: 필립 슈미터와 씨어도어 로위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치비평 1.민중의소리 2013. 5. 23, <<http://www.vop.co.kr/A00000636398.html>>, 최근검색일: 2013. 10. 27; 2013. 10. 25, <<http://www.vop.co.kr/A00000692233.html>>, 최근검색일: 2013. 10. 28.

한겨레 2013. 10. 16.

Neumann, F.(1957). The Democratic and the Authoritarian State.

밀양 인권침해
쟁점별 법적 분석



밀양 인권침해 쟁점별 법적 분석

이정일(민변 환경위원회)

1. 들어가며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는 3000여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있다. 그에 반해 농성장을 지키는 주민은 십수명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70~80대 어르신들이다. 시민단체의 연대를 고려하더라도 시민들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공권력이 투입되어 있다. 이로 인해 공권력 남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밀양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수많은 법적 쟁점이 있지만, 아래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 동행요구 거절권을 미고지한 무분별한 임의동행 및 미란다원칙을 미고지한 불법체포

밀양 집회참가자들을 연행할 때 경찰이 동행요구 거절권을 밝히지 않거나 체포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였다.

가. 문제점

1) 동행요구 거절권을 미고지한 임의동행

국민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경찰관의 동행요구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국민은 그 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서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적시하였다. 또한 경찰청의 내부훈령인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제51조 제1항에서도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고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법원도 동행요구의 거절권 고지를 임의동행이 적법 요건이라 보았고(2005도6810),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이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한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다.(07진인4605) 임의동행의 거부 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경찰이 계속 강제로 동행하려 하다면 이는 불법체포에 해당하므로 경찰의 연행을 실력으로 저지하더라도 경찰의 공무집행 자체가 위법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미란다원칙을 미고지한 불법체포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하든,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로 체포하든,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이를 ‘미란다 원칙’이라고 한다.

미란다 원칙은 반드시 체포 당시 고지를 해야 한다.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여의치 않는 경우라도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경찰차에 올라탄 후나 경찰서에 가서 고지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체포와 구속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불법구금이 된다.

나. 결론

동행요구 거절권과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것은 경찰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이다. 밀양에 고령의 어르신들이 고지의 대상이라면 경찰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여야 한다. 인권침해감시단에 의해서 보고되고 있는 미고지 사례들은 밀양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무분별하게 행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3. 불법 채증

경찰이 밀양에 주둔하기 시작한 이후 거의 모든 집회현상에서 채증을 남발하고 있다. 평화롭게 집회를 하거나 그냥 앉아서 쉬는 동안에도 경찰과 공무원들에 의한 상시적인 채증이 진행되고 있다. 위법하고 과도한 채증에 대한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히려 주민들의 분노를 높이고 충돌을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가. 문제점

1) 사복 경찰관 채증 및 개인기기(스마트폰 등)를 사용한 채증의 문제점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채증활동규칙(경찰청예규 제472호 2012.9.2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 (경찰관의 출입) ①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채증활동규칙(경찰청예규 제472호 2012.9.26.)

제3조(채증요원)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불법 집회·시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적정 운영할 수 있는 채증요원을 둔다.

② 채증요원은 사진 촬영담당, 동영상 촬영담당, 신분보호원 등 3명을 1개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 편성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장비 조작이 가능한 정보·보안·수사과 직원을 채증요원으로 선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부서에서 차출할 수 있다.

제4조(채증요원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편성된 채증요원을 관리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활동 전에 인원·장비 및 복장 등을 점검하고, 채증계획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교양하여야 한다.

나) 사복 경찰관의 집회 감시가 적법한지 여부

경찰은 그 동안 시위장소에서 “정복착용 집시법 규정은 합법집회에만 적용되고 불법집회에서 채증(증거수집)을 위해 경찰이 사복을 입고 출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법 19조가 합법, 불법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이 경찰은 정복을 착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합법집회에서만 정복을 입고 출입해야 한다는 경찰 측의 주장은 옳지 않다.

또한 집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고 할 것이므로, 최종적인 판단이 있기 전에 경찰이 임의적으로 집회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사복을 입고 집회장에 출입하는 것은 자의적인 경찰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

경찰청예규인 채증활동규칙 제4조에서는 채증활동 전 채증요원이 복장 등을 점검한다고 되어 있다. 복장 점검을 채증요원이 사복 착용을 점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힘들 것이므로, 채증요원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채증활동규칙에 의하더라도 사복 경찰의 채증은 경찰청예규조차 어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복 경찰관의 집회 감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반하는 불법행위이다.

다) 개인기기(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채증의 문제점

채증활동규칙 제3조 제3항에서 채증장비 조작이 가능한 직원을 채증요원으로 선발한다고 하였고, 채증활동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채증활동 전에 채증요원의 장비 등을 점검하도록 규정하였다.

채증장비 조작이 가능한 직원을 채증요원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개인기기(스마트폰 등)가 아닌 채증에 특화된 장비의 조작이 가능한 직원을 선발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제3조 제3항의 규정은 무의미하다. 또한 채증활동 전에 채증요원의 장비를 점검한다는 것을 개인기기(스마트폰 등)의 상태를 점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장비 점검에 관한 제4조 제1항을 무의하게 만든다. 즉, 채증활동규칙에서의 채증장비는 채증에 특화된 장비를 말하는 것이지 개인기기(스마트폰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개인기기를 사용한 채증을 허용한다면 사진이나 영상 수집 및 폐기 절차에 문제가 발생한다. 경찰의 개인기기에 담긴 일반 시민들의 사진이 폐기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 결론

사복 경찰관에 의한 채증과 개인기기(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채증은 법령에 반하거나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다.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2)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채증으로 인한 문제점

가) 원칙은 영장주의, 예외적으로 인정

대법원은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 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99도 2317)

즉,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하나, ①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② 증거보전의 필요성 ③ 긴급성 ④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된 경우에만 영장 없이 촬영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나) 결론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에 언급된 바, 밀양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채증은 평화로운 농성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라 볼 수 없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또한 인정하기 힘들다. 밀양에서의 광범위한 채증을 영장주의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무분별한 채증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3) 자신들의 초상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경찰 주장의 문제점

가) 초상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이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에 의해 제한 초상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이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대중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저명인이나 공적인물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진, 성명 등이 공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 이 때 그 수인의 한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법원의 판례는 공개됨에 따라 초상권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훼손되는지 여부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의 행위와 인적사항은 공개된 사실로써,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호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서울지방법원 1995. 9. 27. 선고 95카합3438결정, 서울고등법원 1998 9. 29. 선고 98라35결정)

나) 국가공무원인 경찰관의 경우, 공권력의 행사 주체이자 기본권의 ‘수범자’

국가공무원인 경찰관의 경우, 공권력의 행사 주체이자 기본권의 ‘수범자’이므로 직접적인 업무상 관련이 있는 국민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얼굴 및 인적사항을 입수한 행위 자체에 대하여 해당 초상권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행위의 표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상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헌법재판소 1994. 12. 29. 93헌마120 결정, 2001. 1. 18. 2000헌마149 결정, 2008. 1. 17. 2007헌마700 결정).

다) 결론

밀양 집회 및 공사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모두 공무집행중이라 보아야 한다. 집회에 참석하여 공권력 집행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얼굴 및 인적사항을 입수한 행위 자체에 대하여 해당 초상권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행위의 표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초상권 행사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식별표식 미부착 및 마스크 착용

공권력 행사가 익명 뒤에 숨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각종 공권력 발동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와 소속을 밝히려는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집단적으로 복면을 착용한 채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가. 문제점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프랑크 라 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촛불집회시위 관련 직권 및 진정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에서

‘경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훈령인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49조(표지장 및 부족품의 부착 위치) “기동복 상의에는 며찰, 기동복 표지장, 기동복용 계급장을 각각 봉합부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직접으로 위반하거나 그 취지에 반한 행위이다. 이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진압경찰대원들은 명찰을 달거나 공개할 경우 시위대가 이름을 부르면서 조롱하고 모욕을 주기 때문에 대원들의 인권보호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름이 아니라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표시이면 이름이 아니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식별표시를 가리거나 미부착하는 행위는 진압경찰이 시위대에 대하여 과잉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시위대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우려가 있다. 이는 안전과 인권을 증시하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 경찰력 행사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집회시위진압 등 경비업무시에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권고하였다.

프랑크 라 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보고서에서

(A/HRC/17/27/Add.2, 2011.3.21.)

‘특별보고관은 (중략) 진압 경찰복에 명찰,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 과잉 진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경찰의 경우에도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폭행 또는 기타 형태의 폭력 혐의로 경찰을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라고 하였다.

2) 개인식별만 가능하면 되는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 식별표시의 부착을 권고하면서 이름이 아니더라도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표시이면 무방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표식의 경우 상황발생시 피해자들이 암기하기가 어렵다. 사후 구제여부에 중점을 둔다면 실명이 기록된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

특히 경찰들이 사복이나 우의를 착용하는 경우 개인 식별표지가 없다. 이러한 상화에서는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는 경우에 개인을 식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 밀양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식별이 가능하도록 이름이 들어간 개인식별표시를 외피에 착용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2)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에 대한 검토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시민들의 채증은 제한적이다. 채증을 하는 시민의 수도 적고 적당히 시기에 채증을 하는 것도 사실상 제한된다. 식별표시를 촬영하여 사후에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경찰의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현장에서 경찰을 얼굴을 포함하여 촬영하여야지만 실질적인 사후구제가 가능하다.

나. 결론

외피에 이름이 표시된 식별표시 착용을 강제함은 물론 경찰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경찰들은 용역과 다를 바가 없다.

5.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가.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2006도775)

나. 결론

인권침해감시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집회참가자들이 밀양 집회 중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는 없다.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경찰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언급하며 무리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다.

6. 식사, 생수, 이불, 천막 등 기본 물품 반입 제한

경찰은 외부와의 소통과 왕래를 차단시킨 채 자신들이 안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의 증언을 듣기 어렵고 현장을 직접 파악하지 못한 채 경찰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몇몇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천막은 비바람과 추위를 피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천막을 보존하고 있으니 문제없다는 태도이며, 식사와 생수 등 최소한의 물품은 주민들이 산길로 나르는 도시락이 전부이거나 산 아래에서 직접 가지고 가게 하는 조치이다. 경찰은 물품의 공급이 경찰의 통제 없이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비바람과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천막과 침낭, 핫 팩 등 보온용품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가. 문제점

1)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규칙 등의 검토

경찰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한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11조에 따르면 경찰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직권을 행사하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설사 불법적인 집회라 하더라도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절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경찰권의 발동 내지 그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정당한 범위 내의 공권력행사이어야 한다.

한편, 헌법 제10조 후문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는 주체인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영역에서도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00자동차 농성 및 진압 과정에서 인권침해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09진인2363)

피진정인들은 점거 농성중인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식수, 식량 및 의약품의 반입과 소화전을 회사측과 공동으로 차단 또는 회사측이 차단하는 것을 묵인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농성중인 노동조합원의 생명권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식수와 음식물은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본 조건으로서 최소한의 음식물과 식수를 공급받을 권리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인바, 이는 법률에 의하여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비록 불법행위를 행한 자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건강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음식물과 식수를 공급받는 것을 차단할 수 없고, 이를 차단하는 것은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원들이 비록 불법 점거 농성 중이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공장 내에 식수와 식량이 충분하다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식수와 식량의 반입을 차단한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피진정인들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지켜야 할 인권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농성 중인 노동조합원들의 생명권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결론

밀양에서 식수와 음식물 반입이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대다수 고령인 주민의 건강상태를 고려한다면 생명권을 제한할 정도라고 볼 수는 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할 경찰의 식수 및 음식물 반입 제한은 경찰법, 경직법, 경찰관 직무교칙을 위반한 것이다.

현재 주민들이 점거한 현장이 산이고 가을인 점을 고려할 때 고령의 주민들이 생명권의 위협을 받지 않으려

면 식수와 음식물 뿐만이 아니라 이불, 천막 등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물품이다. 이에 대한 반입제한도 식수와 음식물과 같은 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7. 의료진 출입 제한

인권침해감시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의료진이 신분증을 보여줌에도 출입을 금지시켰다. 현장에는 119구급차와 한전의 구급차가 대기 중이나 주민들은 한전의 의료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으로부터 건강상태를 체크하기를 원하나 경찰에 의해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은 노인들이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거나, 추위를 피할 수 없는 노숙, 산길을 이용한 무리한 통행이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상시적인 체크가 필요하고 예방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경찰은 주민의 건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구급차를 대기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듯 하고 있으나 이것은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가 아니라 쓰러지면 병원으로 이송을 시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위험발생요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없이 사후조치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을 출입이 자유로워야하며,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가. 문제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의 방해를 금지하고 있는바,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해가 현실화된 자에 대하여 의약품 반입 차단 및 의료진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농성중인 노동조합원의 생명권 및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나. 결론

정부나 한전 측 의료진이 있다고 하나 주민들의 이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관계는 질병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주민들과 신뢰관계가 있는 의료진의 출입을 막은 것은 사실상의 의료진 출입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경찰은 주민들과 신뢰관계가 있는 의료진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

8. 한전의 송전탑 건설에만 집중된 경찰의 공권력 행사

경찰은 밤샘 작업을 위한 한전과 시공사 직원들을 공사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주민들은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있다. 안전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모든 목적은 신속한 공사 강행에 맞춰져 있다. 최소한의 보호 조치조차 차단하면서 편향적으로 행사하는 경찰 공권력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부상 입은 주민들과 경찰로부터 언어적 폭력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 문제점

경찰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한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11조에 따르면 경찰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직권을 행사하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실사 불법적인 집회라 하더라도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절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경찰권의 발동 내지 그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정당한 범위 내의 공권력행사이어야 한다.

한편, 헌법 제10조 후문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는 주체인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영역에서도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결론

현재 밀양에서 경찰이 보이고 있는 공권력 행사는 한전의 공사 진행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국민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경찰권의 발동 내지 그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은 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한다.

9. 통행제한

주민들은 자신의 땅이 송전탑 공사 예정지와 가까운 경우 마음대로 자신의 땅 주변으로 통행하지 못하고 경찰의 제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을 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소연 한다. 또 자신 소유의 땅이 아니더라도, 어릴 때부터 익숙한 마을의 공간들에 대한 출입제재에 울화를 토로했다.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 입구에서부터 경찰 병력을 배치하여 차량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자신의 재산과 고향, 삶의 근거지와 관련한 경찰 통제로 인해 주민들의 상실감이 깊어지고 있다.

가. 문제점

1) 관련 법령

통행제한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혹은 제6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①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②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2) 검토

현재 밀양에서 이루어지는 통행제한은 송전탑 공사부지와 3~4km 떨어진 마을 입구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원거리 통행제한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나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실사 경찰이 생각하기에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시작되는 통행제한은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 결론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통행제한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통행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10. 마치며

밀양에서 경찰은 한전의 편에 서 있다. 대규모로 투입된 경찰병력은 송전탑 반대 농성에 나선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줄 뿐만 아니라 강압적인 통행 제한, 대치 과정의 물리적 제지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경찰은 일방의 대변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로서 공정중립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책무이다.

인권침해감시단 상황일지



인권침해감시단 상황일지

10월 1일·2일

1)개 팔

한전은 공사 재개 시점에 대해 주민들에게 정확히 고지 한다는 약속을 어겼다. 밀양시청은 행정대집행 일시 고지를 1일부터 종료시까지로 한 상태이다. 10월 1일 오전 6시 30분경 병력이 배치되었다는 소식에 공사현장을 향해 나섰던 길은 가로막혔고, 주민들은 통행 및 물품 반입 제한을 겪었다. 또한 산 속에서 노숙농성을 하게 되거나 하루 종일 경찰에 둘러쌓여 고립과 감금, 채증 등의 폭력을 겪었다. 주민들은 보는 이 하나 없는 산길에 고립되어 경찰에게 감금이유를 묻거나 폭력중단을 요구함에도 대답 없이 계속되는 상황에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경찰의 막무가내 밀어내기도 문제가 되었다. 10월 2일 새벽 5시 30분경 89번 공사부지 진입로 경찰저지선에 가로막힌 주민들이 산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경찰이 근무 교대를 명목으로 들어 닥쳤다. 갑작스러운 경찰 병력의 등장엔 주민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이에 항의했다. 잠시 물러갔던 경찰은 아침 7시경 다시 나타나 앞뒤에서 주민들을 압박했다. 진입로 양쪽에는 깊은 고랑과 낭떠러지가 있었고 당시 비가 내려 길이 매우 미끄러워 위험한 상황이었다. 좁은 공간에 경찰에 의해 밀리는 과정에서 76세 여성 1명이 실신하여 119에 실려갔다.

2) 일 지

(감시단이 별도로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밀양765KV송전탑OUT대책위'에서 올린 상황정리로 같음한다. 아래 일지는 <http://my765kvout.tistory.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월 1일

- 단장면 바드리 입구 한전 100, 전경 400 투입, 주민 및 연대단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대치 / 주민 10명 경찰저지선 뚫고 89번 현장으로 진입했으나 다시 경찰50명과 대치 / 현재 현장주민 40여명 비닐농성을 치고 밤샘농성 예정
- 동화전 95번 경찰 70여명 투입, 한전인부 25명 공사장 진입 / 96번 경찰5명 주민4명과 대치, 주민 10여명 노숙예정
- 부북면 126번 한전 인부 30명 및 사복경찰 현장진입 시도를 주민들이 막았음 / 부북면 127번 현장 박훈 변호사(공사방해금지가처분 주민측 변호인) 주민들과 함께 농성, 경찰버스 3대, 경찰 6대 대기 / 126번 여수 김영자 총무 경찰과 한전이 길을 내주지 않아 고립되었음. 주민 40여명 노숙예정.
- 상동면 도곡리 109번 내일 공사를 위해 한전인부 20명, 도곡마을에서 경찰 40명과 전경 200명 투입, 버스 약 20대 / 괴곡마을 입구에서 경찰차 2대 대기 / 고답도곡 주민 200여명 현장진입시도 입구에서 저지. 현재 마을로 복귀
- 10시 30분 한전 사장 호소문 발표 이후 대책위 입장 보도자료 배포

- 오전11시경 단장면 바드리 현장 고준길(70) 어르신 실신
- 국가인권위 조사관 오후 밀양도착. 감시단 오후 밀양도착(2인1조로 단장면 바드리, 부북면 평밭마을 등 조사)
- 상동 126번 병력투입규모(전경 32개 중대, 여경 2개 중대, 한전 500명 투입)
- 멀쩡한데도 이블로 에워싸 밀양병원으로 이송되었던 김영자 총무는 현재 126번 현장으로 다시 복귀
- 19시 30분 김제남, 장하나 의원 126번 도착 =>바드리 농성장 21시 30분경 도착

10월 2일

- 84번 포크레인 공사중.
- 89번 주민9명 사슬 걸고 공사장 대치 중. 단장면 바드리 김** 대치 중 실신. 다리부상.
- 동화전 95번 경찰 및 한전직원 100여명. 주민30명 대치중. 기본파쇄 등 인력으로 하는 공사 진행. 공사자재 발전기 및 중장비 헬기로 이송해 현장 진입 막은 상태. 주민들은 96번에 있음. 오후 5시30분 충돌 벌어짐.
- 109번 상동면 도곡마을 길이 멀어 진입 어려움. 마을주민 강** 대치 중 쓰러진 상태에서 경찰에게 밟혀 허리부상. 컨테이너 2대 시설물에 병력300이상 배치 등 진입은 막고 대치. 인권시민단체 2인 이동, 금호마을 이장님 상동역에서 단식 중. 컨테이너, 포크레인 등으로 땅 파기 시작
- 126번 경찰이 주민들 주의를 끈 뒤 한전작업자 도구 들고 20명가량 올라감. 기본 파쇄 등 인력으로 하는 공사 진행. 상동면 주민 두분(이**, 박**) 경찰과 충돌해 넘어져 허리부상. 상동 김**어머니 외 대책위 모두 고립된 상황. 주민 3명 이틀 동안 단식돌입. 그 외 주민들 음식반입 중. 펜스자재 경찰보호 하 현장운반 작업. 국가인권위원회 3명 현장조사
- 헬기 이용해 계속해(4번 이상) 중자재 옮기는 중. 127번 외 부북 공사 혹은 행정대집행 진행 안 됨
- 10시 10분 금곡헬기장 경남공대위 기자회견 진행
- 감시단 금곡헬기장으로 2인 이동
- 11시에 행정대집행 시작. 그 와중에 시청직원 2인 땅별을 건드려 119구급차로 후송.
- 금곡헬기장 농성장은 막아냈지만 오후4시경 헬기이동 95번, 109번, 95번 차례로 컨테이너와 자재 이동시킴.
- 장하나의원, 김제남의원, 강기갑전의원 금곡헬기장에서 마지막 해산식 하고 정리함.
- 오전11시, 한국전력 본사 앞 무기한 단식농성 기자회견 가짐

* 10월 2일 주민 노숙상황

127번 평밭	126번 여수	109번 고경 고답 도곡	96번	바드리입구 용회	금곡헬기장 산외 보라	89번 동화전
20명	30명	31명	법씨학교학생 주민 20명	10명	10명	10명

10월 3일 : 감시단은 금곡헬기장, 89번 현장, 126번 현장에서 활동

1. 금곡헬기장

1) 개 괄

금곡헬기장은 2일에 이어 3일도 행정대집행 시도가 있었고, 공사 자재를 운반하는 헬기가 지속적으로 운행

되었다. 70여 명의 밀양시청 직원들이 배치되고, 400여 명의 경찰들이 헬기장 입구 및 펜스 주변을 봉쇄하는 상황에서 100여 명의 시위대가 항의행동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유발했고, 불법채증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하는 이들도 연행했다. 또한 개인 스마트폰으로 주민들과 시위대를 채증했고, 복면을 착용한 채로 공무집행을 하였다. 또한 경찰이 기자를 사칭하여 주민들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일도 있었다.

또한 식량과 함께 방문한 수녀들이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려던 시청 공무원과 경찰에 의해 두건과 허리띠가 풀어지고, 완력과 가슴을 가격당하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스마트폰으로 채증하고 있는 사복경찰



집단적으로 복면을 착용하는 경찰(전의경 뒤)

2) 일 지

0900 헬기 운행 시작. 헬기가 뜨는 것을 보면서 한 여성주민 오열하면서 도로에 드러누움. 이에 갑자기 경찰 무리가 달려들며 시위대와 대치. 여성주민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없이 "이 사람 구급차로 가야한다"고 경찰이 말하자 시위대가 항의하고, 항의하는 시위대를 채증.

0940 여성주민이 도로에 드러누움. 시위대 일부가 함께 도로에 누워서 함께 구호를 외치고 항의하다 펜스 쪽으로 달려나감. 이 과정에서 7명 펜스 안으로 들어가 바로 연행됨. 헬기장 안에서 바깥 호송차량으로 연행자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명에 6명 정도의 경찰이 붙어서 사지를 들었고 기자들이 사진을 찍으려 할 때 보이지 않게 에워쌌.

1200 헬기장 입구 봉쇄에 항의하는 여성 시위대를 여성경찰이 에워쌌. 이때 시위대 쪽에 함께 있던 한 여성이 캠코더로 촬영을 하는 것에 대해 감시단이 기자 확인을 요청했고 기자증을 가져오지 않았고, 밀양신문 윤유진 기자라고 말함. 이후 이 여성이 헬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함. 출입이 통제된 상황이었기에 당시 입구에 배치되어 있던 경찰을 통해 취재 요청 및 출입했던 기자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함.(밀양신문 확인결과 윤유진이라는 기자는 없었음.)

1430 집회에서 발언자 및 참여자들에 대해 경찰과 한전 직원이 채증함. 집회 참여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항의하는 사람을 찍어서 채증함. 이에 집회 참여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경찰과 충돌,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일부와 주민이 경찰 대오 안으로 끌려들어감.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대오 안으로 끌려 들어간 사람이 누구인지 신변 확인을 요청했으나 묵살 당함. 호송차량에 실리는 연행자가 누구인지, 신변 확인을 요구하는 집회참가자들을 거세게 밀어내고 호송차량에 접근하지 못하게 가로막음. (이후 2명이 연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 10월 3일 금곡헬기장에 식량과 함께 방문한 수녀들이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려던 시청 공무원과 경찰에 의해 두건과 허리띠가 풀어지고, 완력과 가슴을 가격당하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건의 경우 언론에서 알려지자 해당 경찰서에서 전화하여 당사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요구하며 오히려 경찰이 맞았다고 이야기함.

2. 126번

1) 개 괄

10월 1일 이후 고립되어 있던 현장에 10월 3일 인권침해감시단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상황을 모니터링하였다. 고립되어 있는 동안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경찰들로부터 사람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증언하였다. 식사/식수, 잠자리를 최소한으로나마 마련하려는 시도조차 모두 봉쇄당하여 추위와 식사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경찰들이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고압적이고, 주민들을 존중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행금지로 인해 고령의 주민들이 길도 없는 산을 세시간 이상 헤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길을 잃거나 미끄러지고 넘어져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10월 1일 단식 농성에 돌입한 세 명의 주민 중 한 분이 탈진하여 구급차로 이송되었고, 이 후 확인한 결과 팔에 멍이 들어 있었다. 나머지 두 명의 경우도 건강이 악화되어 수액만 맞고 있는 상태이며, 119구급대원이 대기중인 상태였다. 최소한의 안정적인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채 이불 하나에 의지하여 밤이슬을 고스란히 맞는 단식자에게 경찰은 천막반입을 불허하고 그로부터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바로 그 앞에 경찰 방패를 앞세운 병력을 세워두고 있었다.

또한 연대하러 온 시민들을 경찰이 비탈길 바로 옆에서 길을 막는 등의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시를 받고 앞으로 나서는 한전 측 여성노동자



농성장으로 가는 진입로 봉쇄



비탈길이 있는 통행로에서 길을 봉쇄하고 있다.



단식 농성 중 건강악화로 10월 3일 병원으로 후송된 주민의 팔.

2) 일 지

* 농성장 상황

- 새벽 4시경 여수마을에서 출발한 여성주민 3인이 산에서 길을 잃어 7시간 이상 헤매다가 겨우 주민들에 의해 구조됨. 주민들의 통행도 완전히 금지된 상황이라 마을 사람도 다녀보지 않아 길도 없는 산 속으로 가야 했음.
- 새벽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우고 컵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가스렌지에 물을 끓이려 하자 경찰이 소화기를 뿌려서 모닥불을 끄고, 그 옆의 가스렌지 및 물과 라면에도 소화기를 추가로 분사하여 모두 먹을 수 없게 됨. 이를 직접 겪은 주민은 경찰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고 증언
- 단식 중인 주민 1인이 탈진하여 구급차로 후송. 다른 두 분도 건강 상태 안 좋음.
- 향린교회에서 온 의사 한분이 단식농성주민들을 진료함. 수액 맞도록 조치를 취함.
- 한전 측 구급차(한전의료재단 구급차) 직원이 가운을 입고 단식농성주민들을 진료하려 함. 의사가 정말 맞는지 묻자 대답하지 않음. 한전 측 구급차는 현장에 계속 상주 중.
- 천막 돌려달라고 경찰 방패를 붙들고 항의하는 주민들의 손을 경찰들이 주먹으로 내려치는 장면 여러 차례 목격됨. 이미 주민들은 손과 팔 주변에 멍이 든 상태였음.
- 오후 6시 경 한전 직원들 약 30여명 진입. 할머니들이 연좌하며 길목을 막고 있자, 한전 측 지휘관이 밀고 들어가라고 지시.
- 주민들이 앞을 가로막자, 한전 측 지휘관이 직원들 중 여성노동자 3인을 앞으로 나서서 밀고 들어가라고 지시.
- 한전 직원들의 진입이 여의치 않자, 상황을 지켜보던 경찰이 난입. 부산경찰청 경찰기동대원들이 사람들을 길 양쪽으로 밀어붙이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며,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됨. 남성, 여성, 할머니 할아버지 가리지 않고 경찰에 강압적으로 밀려 길 옆으로 밀려나가거나 세워진 차량에 심하게 압착
- 할머니 중 한 명은 경찰에 밀려 길 옆 낭떠러지 근처까지 넘어져 구름.
- 제3기동대 송호언은 의도적으로 인권침해감시단 여성활동가의 목 언저리를 노려 팔꿈치로 밀어붙임
- 18시 20분 경 한전 직원들이 경찰의 보호 하에 공사장 쪽으로 진입하고, 일정하게 소강상태가 되자 주민들

이 격하게 경찰 저지선에서 항의. 흥분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저지선의 경찰들도 주민들을 향해 공격적으로 반응하자 이에 인권침해감시단과 연대하러 온 사람들도 다시 항의를 시작. 이 때 인권침해감시단 1인 및 연대 단위 1인 연행.

· 한전 측 여성 노동자 중 1인이 실신해서 구급차로 후송. 한전 직원들 밀고 들어올 때부터 맨 앞에서 식은 땀을 흘리며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음.

*** 농성장 및 상황**

- (오후 2시 10분 경) 연대하러 온 사람들이 산길을 따라 오르며 현장으로 향하는 중, 경찰이 길목을 막음. 길이 막히자 한 명이 산길로 올라가는 것을 시도하다 추락, 다리에 부상을 입고 구급차로 후송됨.
- 주민들의 요청으로 단식농성중인 주민들의 건강 상태등을 살펴보려 간다고 밝힌 인권침해감시단(의사포함)의 출입 역시 막아섬.
- 기자들도 차량 출입을 불허하고 걸어 올라가게 함.
- 연대하러 온 시민들이 산길을 따라 오르며 현장으로 가는 중, 경찰이 곳곳에서 길목을 막으며 위험한 상황들이 초래됨.
- 비탈길 바로 옆에서 길을 막자 통행을 하려던 사람과 실랑이가 벌어지며, 통행인 뿐만 아니라 길을 막는 경찰들도 위험한 상태가 됨.

3. 95번, 96번

95번 현장으로 가는 길은 경찰에 의해 통행이 차단되어있으며 지나가는 이들을 모두 채증하고 있었다. 경찰에게 통행제한 근거를 요구하자 '국책사업이고 주민안전을 위한 것'이라 대답하였고, 통행인 모두를 채증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증거 촬영을 하자 경찰은 공무집행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채증할 수 있으며 근거를 묻자 경직법 7조라 답하였다.



공사가 진행되는 96번 현장으로 올라가는 길에 배치된 경찰 병력. 병력 뒤로 한전 직원들이 수십명이 96번 현장으로 올라가고 있다

4. 89번

1) 개 괄

한전의 공사와 구청의 움막철거 및 경찰의 강제진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병력 증가를 막기위해 교대인원 외의 경찰진입을 막고 있었다. 교대인원이라며 들어가고선 맞교대한 인원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자 주민들은 경찰진입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생겼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주민자극과 폭력을 휘둘렀으며, 마구잡이 채증, 공무집행 중 신분 은폐등의 행위를 하였다.



복면을 쓴 채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



이불반입을 막는 경찰

2) 일 지

0840 경찰진입을 위해 주민들을 방패로 밀어내거나 목을 압박하면서까지 고립시키는 상황이 계속 발생. 마구잡이 채증을 하면서 다수가 복면을 하고 공무를 집행하고 있음. 이에 항의하자, “경찰 개인 소지품을 왜 착용하지 못하나”, “지급된 공식복장”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반복, 되풀이 함.

1400 움막을 지키던 주민 8인 내려옴.

1535 주민들 공사장으로 통하는 또다른 통로인 평리 입구 연좌 농성 시작.

1540 평리 입구 농성장소, 60여명의 경찰에 의해 입구 봉쇄됨.

1730 경찰, 해가 저물어 기온이 떨어지므로 주민들이 이불을 반입하려하자 차단함.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로 30여분 후에 반입됨)

1810 경찰, 깔판과 서리를 피할 비닐 반입 차단. 차단 이유를 묻자, 경찰은 집회시위용품이므로 반입할 수 없으며 “밥과 물이면 충분하다. 봐줄만큼 봐줬다”고 대답함. “그럼 찬바다에 서리를 맞으라는 거냐”며 항의하고 차단근거를 묻자 대답하지 않겠다고 함. (1시간 가량 실랑이 끝에 일부만이 반입됨)

5. 109번

* 10월 3일 현장을 방문한 기자 인터뷰

109번 현장은 차량진입이 불가능하고 도보로 가는 길이 길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이 부족. 주민들은 추운 밤에도 은박깔개 몇 개만으로 이불도 없이 지냄. 충돌이 있을 때는 주로 주민들이 출입하려 할 때와 주민들이 공사를 위해 한전직원이 드나들 때 진입을 저지 하는 경우인데 그때마다 몸싸움과 경찰의 강압적인 제압에 시달린다고 함.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생필품과 바닥과 지붕이 제대로 된 숙소도 가장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심한 고립감이 문제라고 함. 함께 하려고 다른 이들이 산을 올라와도 경찰에 의해 접근이 금지되고 있어 다른 이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했으며 공사재개 후 기자도 처음 찾아온 것이라고 전함. 당일도 식량을 가지고 온 종교인(수녀)들의 출입이 차단당함.

10월 4일-5일 : 금곡헬기장, 126번 현장, 109번 현장 등에서 활동

1. 금곡헬기장

1) 개괄

금곡헬기장은 2일부터 종료 시까지로 행정대집행이 예고되어 있었다. 밀양시청 직원(KOREA CIVIL DEFENSE 조기 착용)들은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 바로 인근에 붙어 불안과 초조를 증폭시켰다. 이외에도 직원들은 기자회견 때 참가자들을 촬영하고, 주민들의 항의를 무시하거나 비웃는 등의 태도로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위축감과 모멸감을 유발했다.

경찰들은 오전 집회의 발언자 및 참여자에 대한 채증, 그냥 앉아서 쉬는 동안에도 경찰과 공무원들에 의한 상시적인 채증을 진행했고, 이는 주민들을 자극하고, 충돌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



주민들을 채증하는 밀양시청 직원



주민들을 채증하는 경찰

2) 일 지

10월 4일

1100 대책위의 기자회견이 열림. 밀양시청 직원이 기자회견 참여자들을 지속적으로 촬영함.

1500 금일 금곡헬기장 맞은편 움막을 행정대집행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 소식을 접하고 주민들 긴장이 높아짐.

1600 밀양시청 직원 중 일부가 주민들의 농성장 바로 인근(밤따기 체험학습장·"체험학습 참가자 외에 외부인 출입 금지"라는 안내판이 붙어있음)에서 자리를 점유하고 있었음. 밀양시청 직원들에 항의하다 한 여성 주민이 탈진(56세)하여 밀양병원으로 후송됨.

1700 밀양시청 직원들 철수함.

10월 5일

오전 행정대집행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상황이 알려짐.

0900 경찰 100여명과 남성 공무원 160명, 여성 공무원 40명이 배치됨. 평소와 달리 다수의 여성인력이 배치됨에 주민들의 긴장이 높아짐.

1100 주민과 탈핵희망버스 참가자 50여명이 움막 앞을 지키며 행정대집행을 대비하며 항의행동을 이어감.

1400 공무원들이 멀리서 접근하기 시작.

1520 진보당 이상규의원이 방문.

1600 공무원들이 철수하기 시작하고, 오후 4시 20분경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잠시 방문하여 경찰과 대화를 하고 둘러본 후 자리를 떠남.

1800 탈핵희망버스가 서울로 출발.

2. 126번 현장

1) 개괄

2일부터 통행로에서 노숙 중이던 주민들에게 경찰은 10월 2일에 가져갔던 천막을 돌려줬다. 하지만 천막은 비바람과 추위를 막기에는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경찰은 주민들 및 연대 온 사람들의 통행을 금지하여 장시간 산길도보를 해야 했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최소한의 물품들을 반입금지하거나 주민들이 직접 들고 오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켰다.

한전의 의료제공을 거부한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확인 차 의료진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올라갔으나 경찰은 의료진의 출입을 제한시켰다. 또한 현장으로 평화롭게 방문할 의사를 밝힌 탈핵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주민들을 위로하고, 최소한의 물품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경찰의 통제에 막혀 진입하지 못했고, 물품도 전달하지 못했다.



비바람과 추위를 막기 어려운 천막

2) 일 지

10월 4일

· 주민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됨.(단식을 이어가던 2인, 경찰에 항의행동을 하던 1인, 넘어진 주민 1인, 한전 측으로 묘를 이장하라고 연락을 받고 묘를 살피러 다녀온 1인)

·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경찰이 천막을 돌려줌. 그러나 비바람을 막기 어려운 상태. 비가림막이 필요.

10월 5일

- 0640 주민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마련한 장작을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흥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빼앗음.
- 0700 오전 7시경 한의사 2인이 126번 현장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살피기 위해 올라가려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4시간가량 진입하지 못함. 한의사가 국가인권위에 전화로 진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하자 국가인권위가 경찰에 요청하여 현장에 갈 수 있었음. 차로 진입을 허락하지 않아 의약품과 의료 기구를 들고 걸어감. 주민들의 건강상태는 기존의 질환들이 좀 더 악화된 상황이며, 노숙으로 인해 대부분이 감기증세를 보임. 장시간 산길로 통행을 해 다리, 관절에 무리가 된 상황. 한의사에 의견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함.
- 주민 1명(김00, 80세)이 아침에 혈압 약을 먹었는데도 혈압이 상승하여 병원으로 이송됨.
- 시공업체 사장이 주민들에게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 적다.”라는 말을 해 주민들의 반발과 거세 항의를 받음. 주민들은 자신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크게 분노함.
- 탈핵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경찰의 통행금지로 방문하지 못함. 참가자들이 준비한 물품들이 경찰의 제지로 반입되지 못함.
- 진보당 이상규 의원 경남경찰청장, 126번 현장 경찰책임자 면담.(경찰은 인권침해 없다, 왜곡이다, 주민의 안전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

3. 109번 현장

1) 개 괄

109번 현장은 가파른 산 정상에 위치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제한적이고, 전화도 잘 되지 않는 곳이라 외부와의 연결이 잘 되지 않았다. 10월 1일 이후로 109번 현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

2) 일 지

10월 4일

- 주민과 함께 인권침해감시단, 변호사, 연대온 사람들 7명이 농성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경찰의 제지로 진입하지 못함.
- 경찰은 이미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니 물품을 가지고 돌아가라 했으나 물품만이라도 현장에 놓고 갈 수 있도록 요구해 경찰에 의해 전달하는 것으로 합의.(전달 물품: 비 가림용 비닐 1롤, 핫팩, 우비, 깔개, 휴지, 물티슈, 구급약, 파스, 수건)
- 경찰은 주민들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천막과 생수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나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직접 확인만하고 내려오겠다고 했으나 거부됨.

10월 6일 : 평리마을과 바드리마을(84, 89번 현장)에서 활동

1) 개 괄

사복경찰의 과도한 채증은 빈번히 지속되었고, 사복경찰의 채증을 중단하라는 항의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바드리와 같이 깊은 산속에 고립되어 있는 현장에서는 경찰이 주민과 활동가들의 항의를 묵살하

는 정도가 더 심했다. 또한 교대로 오는 경찰병력이 24시간 동안 상시 배치되어있는 것만으로도 주민은 위축감을 느끼고 있었다.



채증 중인 경찰

2) 일 지

0950 감시단 평리입구 도착

- 도로변 주차된 경찰버스 번호판을 ‘긴급출동’(?) 스티커로 가려 놓았음
-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 잠시 충돌

1000 감시단 농성장 진입

1100 평화와 건강을 위한 울산의사회의 진료 시작

1110 국가인권위 직원 도착하여 현장 둘러본 후, 주민들에게 가급적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을 권유. 경찰이 지나간다고 하면 비켜주라는 식으로 이야기 함. 내일도 출입구 저렇게 막는다는데 그럼 또 충돌이 생기겠네요라고도 함.

1200 여성경찰 6~7명 통과. 정보과 형사가 경찰 병력 지나가게 두면 연대하는 분들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두겠다고 식으로 회유

1220 경찰 2명 통과

1230 바드리 주민 1명, 신원확인 후 통과

1240 김준한 신부 방문

1300 정의당 합류

1320 통영 지역 단체 합류

1350 정의당, 다른 마을로 출발

1600 여성경찰 5명 통과

1700 경찰 30여명, 도시락과 음료수 박스를 하나씩 들고 통과. 이후 근무 교대

1715 바드리로 이동(주민 차량 협조)

1720 감시단 바드리 마을 도착

1740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민들 천막 가까이로 내려온 경찰과 계속 말싸움, 마찰이 지속됨. 도로를 점유하고 통행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며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경찰은 “불법인 근거를 대라.”, “그럼 고발하세요.” 라며 대응함. 통행을 막고 있는 경찰들에게 항의하며 지나가게 해줄 것을 요구하자 사복경찰을 포함한 4~5명의 인원이 불법 채증 시작

1755 대치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증을 하고 있어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함. 그 중 한 명이 본인이 김해 서부경찰서 정OO 경사라고 밝힘. 112에 해당 경찰이 있는지 확인함

1800 천막 등 물품을 실은 경찰들의 차량을 주민 6명에서 방패 앞에 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음

1817~25 경찰이 약 5분 간격으로 3차례 경고 방송을 함.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 교통 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당할 수 있다.”

1830 경찰 지휘관은 주민들이 도로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올라오라고 지시하고, 주민들을 밀어낼 것을 재차 명령. 이내 주민들을 고착시킨 후 차량 진입시킴

10월 7일 : 바드리마을과 동화전 마을, 금곡헬기장에서 활동

1. 바드리마을(84, 89번 현장)

1) 개 괄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 소통 부재, 과도한 채증이 주민들의 모멸감과 경찰에 대한 적개심을 더욱 부추겼다.



주민을 채증하는 경찰

2) 일 지

1545 감시단 바드리 마을 도착

1600 진입하는 차량 및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한다며 농성장 근처로 7~8명의 경찰이 내려와 있었음. 주민들이 항의하자 사복 경찰들이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계속 불법 채증함. 현장지킴이들에 의하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하는 모습들도 경찰이 채증하고 있었다고 함. (증거사진 자료는 추후 받기로 하였음)

1628 화가 난 주민들이 아무도 진입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도로 가운데 돛자리를 깔고 앉음

1640 약품을 실은 경찰차가 진입하자 주민들은 내려서 들고 올라가라며, 차량진입은 안된다고 막음. 약간의 실랑이 후 농성장 근처로 내려와 신원확인하고 있는 경찰들을 철수시키고 원래 하던대로 주민이 확인하게 하면 차량을 진입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바로 철수시켰으나 차량진입하자마자 다시 경찰들을 농성장 근처로 복귀시킴.

1700 주민들이 도로에 누워 경찰 차량 진입 막음. 여성경찰 예닐곱명 등장과 함께 지휘관으로 보이는 경찰이 고압적으로 주민들을 “다 밀어버려.”, “들어내세요.”라고 계속 명령함. 주민들 모두 고립, 고착시키고 차량 진입하게 함.

1730 폐소공포증이 있던 현장지킴이 1명이 경찰에 의해 사지가 들려 고립되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온 몸을 부들부들 떠는 등 고통을 호소하며 119에 후송됨

1800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 30여명 현장 방문

1830 경찰 지휘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던 신부와 주민, 지킴이를 포함한 40여명이 연좌시위. 이를 사복 경찰 2명이 미니버스 차량 위에 올라가서 채증

1855 바드리 마을 주민 차량 진입을 위해 경찰이 물러선 순간 신부들이 진입하려는 것을 경찰이 제지함. 계속해서 면담 요구함.

1900 바드리 현장 지휘관이 나와 상부의 명령으로 근무하고 있고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함.

2. 동화전 마을(96번 현장)

1) 개 괄

96번 현장에는 구덩이를 파고 주민 4~5명이 들어가 있다. 지난 10월 6일 뉴시스와 조선일보에서 주민들의 결의를 보여주는 무덤을 통합진보당이 파 주었다는 보도 이후, 그 진위를 알고 싶어 하는 언론사들이 10월 7일에 밀양을 많이 찾아와, 주민들을 인터뷰하였다. 밀양 송전탑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이마저도 공안몰이의 프레임으로 보게 하려는 일부 언론사의 보도 때문에 밀양 주민들은 언론에 대해 점점 더 불신하게 되었다. 또 평리에 있는 한 경찰이 SNS를 통해 경찰이 밀양주민들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는 등의 글을 올리고 과도한 공무집행은 없다며 여론을 호도하고자 했던 과정에서 주민들은 억울함과 고립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96번 현장에 있던 구덩이

2) 일 지

0730 감시단 동화전 마을회관 도착하여 주민분을 만나 96번 송전탑 현장 진입

· 96번 송전탑 부지에 구덩이를 파고 주민 4~5명이 안에 들어가 있었음. 구덩이 위로 목을 매달 밧줄과 휘발유를 만들어놓았음. 주민 7~8명이 상주하고 있는 곳에 경찰병력은 200여명정도 있었음.

· 현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워 공사 재개된 10월 1일부터 한 번도 집에 내려가지 않은 주민도 있음.

· 지난 5일(토) 오전 송전탑을 세우면 목을 매달고, 현장에서 죽겠다고 결심한 고령의 주민들이 호미, 삽등을 이용하여 구덩이를 파는 과정에서 통진당 당원들이 이를 거드는 모습이 TV조선, 뉴시스 등에 악의적으로 보도되었음. 이로 인해 주민들의 언론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임. 위의 보도와 관련하여 CBS 노컷뉴스, SBS, 연합뉴스 기자들이 찾아와서 주민들에게 사실관계 확인 인터뷰를 하였음.

1110 계속 공사 자재 등을 매단 것처럼 보이는 헬기가 지나가고, 헬기가 보일 때마다 주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함.

3. 금곡헬기장

1) 개 괄

10월 7일 금곡 헬기장에서 오후 1시 30분 경으로 예정되었던 천주교 미사는 사전에 경찰과 협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헬기의 잦은 비행으로 종교행사에 방해를 받았다. 또한 대치상황이 아닌 평화로운 종교활동을 경찰은 불법적으로 채증하였다.



2시간여 지체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미사

2) 일 지

1330 예정되어있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미사가 자재를 운반하는 헬기 소음으로 인해 2시간여 지체됨

1350 약 200여명의 병력이 추가로 투입됨

· 헬기 문제로 인해 미사가 지연되어 묵주기도를 하면서 미사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사복입은 경찰들을 포함해 4~5명이 계속 채증함

10월 8일 : 평발마을, 여수마을, 바드리마을에서 활동

1) 개 괄

8일은 태풍으로 인해 특이할만한 충돌 상황은 없었다. 그러나 방문한 모든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통행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고, 일부 경찰 및 전의경의 경우 신분 식별이 불가했으며, 사복을 입은 의경 및 경찰들의 불법채증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여수마을에서 15시 경, 경찰 측에 통행제한의 이유를 물었고 경찰은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경찰의 일반적 수권해석에 의한 것이고, 교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통행을 제한했다고 답했다. ‘공사방해금지 가치분 신청’을 했다는 점도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는 법원에서 ‘공사방해금지 가치분 인용결정’이 나기 이전이었음에도 해당 사유를 통행제한의 근거로 제시했다.

2) 일 지

1200 평발마을(127번 송전탑) 방문

1400 상동면 여수마을(126번 송전탑) 농성현장 방문 및 경찰측 면담

1700 단장면 바드리(84,89번 송전탑) 농성현장 방문

10월 9일 : 여수마을, 도곡리, 평리마을, 바드리마을, 금곡헬기장에서 활동

1) 개 괄

바드리 현장에서는 2명의 시민이 현장 길목으로 들어가려던 중 경찰에게 제지당하고 몸싸움 후 들려 나왔다. 8일과 9일 방문한 모든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통행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일부 경찰 및 전의경의 경우 신분식별이 불가했으며, 사복을 입은 의경 및 경찰들의 불법채증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9일 방문한 도곡리에서 경찰 측 통행제한의 근거를 물었으나 현장 책임자가 통행제한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다’며 설명을 거부했고, “밀양 경찰서 상황실로 문의하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평리에서도 통행을 제한하면서 ‘상부지시’라는 점 이외 통행제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주민들은 “기자들마저도 한전 측의 입장을 동의하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 통행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9일 평리에서는 경찰이 셔츠 형태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식별 가능한 표식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채증을 하는 경찰의 경우 등산복을 입은 등 제복을 입지 않았으며 식별이 불가했다.



평리마을에서 채증을 하고 있다. 누가 채증을 하고 있는지 식별할 수 없다.

1) 일 지

1팀

1030 여수마을, 주민과 2일 연행 상황 관련 인터뷰

1400 상동면 여수마을(126번 송전탑) 농성현장 방문 및 주민 인터뷰

1630 상동면 도곡리(109번 송전탑) 농성현장 방문

2팀

1200 금곡 헬기장 방문

1300 단장면 평리 농성현장 방문

1500 단장면 바드리(84,49번 송전탑) 농성현장 방문

10월 10일 : 여수마을, 도곡리, 동화전마을에서 활동

0. 개 괄

이번 공사 재개 후 주민이 처음으로 연행(조**, 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10일 새벽 109번 현장에서 산으로 오르던 경찰병력에 항의하던 주민들이 주변에 있던 축분(소오줌)을 서너차례 바가지로 뿌렸고, 경찰은 오전 11시 45분 경 두 주민을 연행해갔다. 그러나 연행과정에서 경찰은 채증 된 사진을 들고 “죄를 지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만하고, 임의동행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임의동행’임을 고지했다고 증언하나, 고령의 주민은 ‘임의동행’이 무엇인지, 본인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가처분 대상자가 아닌 이들에게 현장이 가처분 상태라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고, 업무방해 혐의가 있으므로 모두 입산을 금지시켰다. 이 외에도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공간에서도 “정해진 집회 참가자만 출입 가능”하다는 발언이나 “집회신고 허가 기간”이라는 발언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경찰의 모습들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경찰은 주민들이 설치한 바리케이트를 가리키며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협박의 말을 하였고, 무리한 사진 채증을 일삼으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지속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매일 5시 가량부터 주민들과 경찰들의 충돌 시작이 되고, 밤새 돌 쫓는 소리(10시까지 들린다고 함)와 공사장 불빛으로 인해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해 심각한 스트레스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의 경우 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경찰이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여 경운기가 다니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경찰병력이 주민과의 협의 없이 밭에 대소변과 쓰레기를 남기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126번 공사현장 올라가는 초입. 경찰은 통행제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도곡마을 새벽 충돌 과정에서 부상당한 할머니 손목



밀양경찰이 2차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이 설치했다는 바리케이트 모습.

1. 여수마을(126번 현장)

1) 일 지

0711 인권침해감시단 도착

- 산 입구를 경찰이 가로막고 차량통제 못하게 함.
- 도로교통법 조항을 들먹이며 인권활동가에게 신분증 확인 요구함.
- 집회 신고 낸 곳이라 항의하니 집회신고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시간을 끄.
- 집회 신고가 안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며, 돌아가라 요구. 시간이 지난 후에 집회 신고를 접수 했는데 심의 중이고 반려예정이니 돌아가라고 이야기 함.
- 기다리다 결국 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함.

=> 현장 책임자 부산동래 방범순찰 대장 경감 강호진(동영상, 녹취 있음)

2. 도곡리(109번 현장)

1) 일 지

(8시 13분, 인권침해감시단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끝나 있었다. 이에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정리했다. 새벽 5시경 고령의 할머니 4~5명이 마을회관 앞길을 막고 앉아 있었고, 10여분 뒤 경찰병력이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일부 주민들이 더 나오기 시작했고, 5시 30분경부터 충돌이 발생했다. 10여명 정도의 고령의 할머니들은 경찰병력이 산으로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올라가지 말 것을 요구했다. 5시 30분경부터 경찰과 충돌했고, 1차로 30여명 정도가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충돌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주민들이 주변에 있던 축분(소오줌) 서너차례 바가지로 뿌렸고, 여성경찰들이 할머니들을 제지, 고착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이 사진촬영을 하자, 경찰이 손으로 가로 막으며 사진 촬영 방해. 반면 경찰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무차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다. 도로를 막고 있던 경운기를 경찰이 옮기면서 경운기 주인 할머니에게 통행을 방해했으니 경찰에 와서 조사 받으라는 말을 하는 등 주민들에게 “연행하겠다.”, “경찰서에 와서 조사받아야 한다.” 등 협박을 했다.

이 외에도 새벽 5시경 일부 병력이 주민의 제지를 뚫고 산으로 오르던 중 우사에서 일하던 김OO(남) 주민의 눈에 띄었고, 주민은 “어딜 올라가냐”며 소리를 쳤다. 이 과정에서 경찰 여러 명에 목을 헤드락을 당했으며 손이 뒤로 꺾인 채 2분 이상 결박당했다. 분노해서 눈에 띄는 분노를 던지려고 하자 재차 여러 명에 의해 결박당해 이웃집 마당에 내팽겨쳐졌다.)

0813 인권침해감시단 도착

0942 면사무소 직원들이 오전 충돌시 경찰이 증거로 수집하겠다고 압수해놓은 가스통, 펜스 등을 위험물이라는 트럭에 싣고 가겠다고 주민들과 실랑이. 주민들의 저지로 가져가지 못함.

1000 109번 공사현장 확인 차 인권침해감시단 2인 산길을 따라 공사현장으로 오르기 시작. 산 중턱에서 경찰 검문. 검문의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공사방해방지' 차원으로 검문한다고 답변. 우리는 공사방해가 아니라 공사현장을 확인하러 간다고 주장. 신분확인 후 출입허용. 이후 공사현장 확인한 결과 기초공사 중.

1047 오전에 경찰이 증거물로 내놓은 것을 면사무소에서 가져가려 한 것에 대해 주민들 항의하러 면사무소 방문. 면장에게 이유를 따져 물었고, 처음에는 시청에서 시킨 일이라 발뺌하다가, 나중에는 경찰이 협조요청을 해왔다고 진실을 이야기 함. 경찰이 충돌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증거물을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해서 면사무소에서 진행했다고 실토함. 경찰은 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합의. 했다고 이야기했다 함.

1145 오전 충돌시 분노를 부었다는 이유로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없는 사이 조**(87세, 본인은 92세라고 말씀함), 이**(78세) 할머니를 밀양서로 연행함. 연행하는 과정에서 임의동행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임의동행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음.

1240 밀양 경찰서에 조사 받으시는 할머니들 감시단이 만남. 할머니들은 공무집행방해로 조사 중이었고, 경찰은 외부세력 운운하는 이야기를 종종 함.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 받겠다고 제안했으나, 할머니들은 조사 빨리 받고 나가겠다고 하심. 인권활동가 2명이 조서 받는 시간동안 동석하여 조사 받음. 조사 받고 마지막에 임의동행 동의서에 지장 받으려 할 때, 임의동행에 대해 제대로 고지 했는지, 현장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항의하자, 자신들이 이야기 했고, 할머니들이 따라왔다고 이야기 함. 임의동행의 의미와 제대로 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주민을 연행해오고, 조사했다고 추측됨. 조사 끝나고 돌아가면서도 경찰은 외부세력 때문에 이렇다고 주민들에게 이야기 함.

3. 동화전마을(95, 96번 현장)

1) 일 지

0900 주민 6분이 95번 앞 황토방(주민들과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지음)에 10월2일부터 머물고 계심. 밤에 화장실을 가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경찰 과도하게 조명을 켜는 등 할머니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민감하게 반응함. 현장에 나가서 집들이 비어있다는 소문이 나 도둑이 든 집들이 몇 있음. 집안에 귀중품이 많지 않아 큰 피해는 없으나 불안해함. 농사일을 잘 못하고 있음. 밀양경찰서장이 방문, 할머니들이 식사 등에 불편 없으시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불법적인 행위와 과격한 행동 (구덩이 파기, 현장에 올라가기) 등은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

· 96번 현장에는 한전직원 60여명이 노숙 중이며 공사가 진행 중임, 경찰도 매우 많음.

· 유일하게 방문 가능한 현장임. 단 여러 명이 갈 경우에는 진입 불가하고 한두 명 내외로만 경찰 허락 받고 갈 수 있음.

·현장이 산꼭대기에 있어 접근이 어려운 까닭인지 할머니들과 함께 현장을 지키는 활동가들이 부족한 상태임.

10월 11일 : 주민들에 대한 표적, 강제연행, 인권교육 실시

1) 개 괄

10일 두 명의 주민을 ‘임의동행’한데 이어 11일 고준길씨를 표적 연행했다. 특히 10일부터 경찰은 고준길씨와 고준길씨의 사모님을 의도적으로 찾았던 정황이 있어, 주민 일부에 대한 표적 수사나 연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인권침해감시단은 앞으로 있을 경찰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례와 법에 보장된 권리에 대한 교육을 주민을 상대로 진행했다.

2) 일 지

0710 경찰 교대시간을 즈음해서, 경찰이 오가는 길에 앉아있던 고준길 주민(70세)에게 밀양서 지능범죄팀장 임동준 경위가 비키라고 시비를 걸기 시작. 이 상황이 10여분동안 지속. 그 이후, 고준길씨에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강제적으로 연행.

· 임동준 경위는 고준길씨에게 "선생님과 사모님이 싸움을 주도하고 있는거 아니냐."라고 지속적으로 시비.(고준길씨는 교장으로 퇴직후 남은 여생을 밀양에서 보내려던 분.)

· 연행시 미란다 원칙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음. 더구나 당시 모든 이들은 임동준 경위에게 상당한 술냄새가 나서 공무집행중에 술을 먹으면 되느냐고 항의. 임동준 경위의 음주 경위에 대해 의혹을 가진 장하나의원(민주당)실에서 임동준 경위의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임동준 경위는 어제 마신 맥주3캔이 무엇이 문제냐며 도리어 화를 내며, 강하게 음주측정을 거부.

· 경찰차로 태운 뒤, 고준길씨가 사과하지 않으면 내리지 않겠다고 하자, 영장제시 혹은 임의동행 등 아무런 고지도 없이 그대로 태우고 창원서부경찰서로 이송.

· 오후 감시단은 사진채증, 불법연행 등 밀양에서 벌어지는 경찰과 한전직원들의 무차별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동화전마을, 용회동, 상동면, 보라마을, 여수마을 주민을 상대로 인권교육 실시.

· 주민들은 경찰의 무차별적인 채증과 통행제한, 폭력행사 등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언론, 국가인권위 등 경찰과 한전의 위법한 행위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바로잡아야 할 기관들마저 등을 돌렸다고 하소연.

10월 12일 :금오마을 농성장, 금곡 헬기장, 평리 농성장, 밀양시청에서 활동

1) 개 괄

12일은 11시 밀양시청 앞에서 밀양사회봉사단체협의회가 '외부 불순세력 척결 밀양시민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예정되어 있어 항의하러 간다고 한전직원 출입통제 투쟁은 취소되었다. 공사 현장과 통하는 모든 농로를 경찰이 통제하였고. 한전공사인부와 경찰 식사병력 교대가 주민 저항 없이 진행되었다.

2) 일 지

0720 아랫도곡 주민들 인터뷰 진행.

▶ 인터뷰 내용: 밤에도 라이트를 켜놓고 공사 중이기에 밤에도 산등성이가 환 함. 그걸 보면 잠도 안오고 분노가 오름. 매일 탱크 소리를 듣고 있음· 경찰차 소리가 탱크. 새벽부터 경찰 군화 발자국 소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교대로 추수 등 농사일을 하지만 걱정과 분노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어제 경운기 타고 감따러 가는데 경찰이 막아서 항의하고도 한참이 지나서 현장 지휘관이 와서야 통행허용. 11일에 경찰들이 체포를 하러 왔는데, 인권단체가 감시를 하니 체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말씀하시고, 인권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부탁함.

0740 고답로 입구에서 고답 어르신들 인터뷰.

▶ 인터뷰 내용: 윤○○ 어르신은 몸이 편찮으셔서 부산에서 거주하며 병원을 다니지만, 송전탑으로 인해 고향 없어질 것이라며, 병원치료를 거르면서 투쟁에 나오고 있음. 한전이 유리한 내용만 내세운다고 주장함. 공사도로 편입부지 관련 소송, 묘지를 이장해야 하고, 땅과 묘지를 3년 후 원상 복귀 해준 다고 한전측 주장.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은 한전뿐아니라 밀양시도 하였음. 토지대장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2007년까지 계속 오르다 보상 절차가 시작되는 2008년 갑자기 반으로 떨어짐.

0800 금오마을 농성장 방문, 상동역 앞 천막농성장 10여명 주민 분들 나와 있음. 금오마을 이장님은 11일째 단식투쟁 중. 쇠약함이 두드러짐. 대책위 차원 대책 필요. 긴급진료와 소통관계 복원 필요.

0900 금곡 헬기장(4공구)로 가서, 현장에 움막을 짓고 시위하는 어르신들과 인사를 하고,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를 한 후 기자 3분과 동행하여 평리로 이동함.

0930 평리농성장으로 이동.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장판을 펼쳐놓고 있음.

1040 밀양시청 도착. 밀양경찰서 서장을 비롯 병력 500명 정도 집결. 반대주민 150여명. 감시단 3명 배치. 주최측 참여자 2~30명 정도 추산. 밀양사회봉사단체협의회 '외부 불순세력 척결 밀양시민 총궐기대회' 시에서 준비함. 주민들 강력 항의로 집회 무산됨.

1140 경찰 방송차 출현 '집회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경고 방송. 주민들 격렬 항의.

1230 금곡헬기장 앞 농성장 도착. 시청관계집회 뒤 집회 참여자들의 금곡농성장 방문 계획이 있던 바, 집회 무산뒤 행위 대비 금곡농성장 대기. 헬기작업 오후 계속 진행됨. 이후 용산대책위, 삼척 탈핵회의, 민주노총

등 지지 방문.

1500 동화전, 96번 현장 방문.

1740 보라마을회관 대동마당 참석.

10월 13일 : 도곡리 및 대구 세계에너지총회장에서 활동

1. 도곡리(109번 현장)

1) 개 괄

109번 현장은 산 속에 있고, 공사를 위해 헬기가 자재를 나르고 있으며,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다. 경찰은 산 입구에서부터 “공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추정으로 원천봉쇄를 하여 주민들이 매일 다니던 산길을 막고 있었다. 상급 지휘관은 휴대폰 채증을 지시하며 불법채증을 했다.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의경과 여성경찰은 복면을 하지 않고, 명찰을 달고 있었으나 지휘하는 책임자들은 조끼를 입거나 두꺼운 점퍼를 입어서 명찰을 하고 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었고, 문제제기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2차 또다른 진입로 차단에서는 의경 및 여성경찰들도 명찰을 하지 않고, 점퍼를 입고 있었다.



지휘관들은 점퍼나 조끼를 입고 있어 명찰을 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또 다른 진입로 차단, 모두 점퍼를 입어 명찰이 보이지 않는다.

2) 일 지

0700 고답 마을회관 앞으로 주민 10여명과 환경단체, 인권단체에서 온 참가자들 15여명이 모여서 마을 뒤쪽으로 산으로 걸어 올라가기 시작.

0810 경찰 80여명 정도(그 중 10여명은 여성경찰)가 진입로를 막음. 길을 막는 근거를 요구하자 “공사현장 근처로 올라가면 할머니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막는것”이라고 함. “공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막는 것이라고도 함. 공사현장은 3시간이나 등산을 더 해야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산길을 초입부터 다 막는 것에 항의하였으나 답변은 하지 않았음.

0830 경찰이 막는 옆쪽 산비탈로 마을 주민들이 올라가려고 하자 경찰들이 달려들어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 지휘관들은 모두 조끼를 입고 있거나 점퍼를 입고 있어 명찰이 없었음. 명찰을 달지 않은 것에 항의하고 소속을 밝혀라는 요구에 경기청과 경북청에서 왔다고 대답함. 개인 휴대폰으로 채증을 지시해서 항의하자 “개인휴대폰 채증도 효력이 발생한다. 계속 채증해라”라고 지시를 내림. 개인휴대폰 채증은 계속 됨.

0850 길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앉아 있으면서 씬.

0920 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고답 마을회관 앞으로 도착.

0945 주민들과 참가자들은 다른 진입로쪽으로 이동하려고 이동. 이 와중에 경찰로부터 주민 서보명씨 출두 요청 관련하여 전화가 옴. 12일 시청 앞에서 시청주도의 관계집회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서보명, 김영자 두 명에게 연락하였다고 함.

1000 주민들과 참가자 다른 진입로로 걸어가다가 경찰50여명에 의해서 또 막힘. 산소에 간다고 하는 마을 주민 한명은 그냥 보내 줌.

1130 앞에서 앉아서 일본 반핵운동을 함께 했던 참가자의 강연을 듣거나, 손체조, 안마 등을 하며 기다림.

1150 마을회관으로 이동하는 중 산에서 내려오던 길에 마을 주민 두 명(최**, 박**)이 다른 산길을 통해 공사현장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음.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갖고 오늘 내려올 거라고 주민들에게 이야기 하였다고 함.

1200 단체 참가자들은 마을회관으로 이동하여 4시 세계에너지총회 행사장 앞 기자회견 참가를 위해 대구로 출발. 마을주민들 일부는 마을회관에서 식사, 일부는 마을회관으로 오지 않고 경찰과 대치하던 곳에서 점심식사를 함.

1230 식사 중 몇 명이라도 세계에너지총회에 참가하자고 의견을 모으고 출발하기로 결정.

1300 고답마을회관으로 당진환경운동연합 등 참가자 10명 추가로 옴.

1330 마을주민 5명 대구로 출발함.

2. 대구 세계에너지총회장

1) 개 괄

2013세계에너지총회가 열리는 대구 엑스코 주변에서 이상욱 퍼포먼스 작가가 몸에 녹색페인트를 바르고 광장에서 걸어가는 행위를 벌였다. 이를 국무총리실 직속 경호원 3명이 검은 큰 우산으로 에워싸자 동행한 인권활동가는 ‘퍼포먼스를 방해하지 마라, 지나다닐 수 있도록 길을 터달라’고 항의하였다. 경호원들의 행위가 보행권과 표현의 자유를 막는 행위임을 수 십 차례 문제제기 하였음에도 개입 또는 갈등 조정의 역할을 하지 않은채 인권활동가를 현행범으로 연행하였다. 특히 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등이 세계에너지총회가 열리는 13일 오후 4시 대구 엑스코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고, 언론사에 사전 취재요청서도 배포한 터라 우발적 시위도 아니었다. 또한 연행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체포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미란다원칙을 분명하게 고지 받지 않은채 연행된 서창호 활동가



우산으로 평화적인 퍼포먼스를 막는 국무총리실 직속 경호원

2) 일 지

1440 2013세계에너지총회가 열리는 대구 엑스코 앞에서 송전탑 반대 기자회견을 위해 참석하기 위해 대구 엑스코 앞 도착

1450 2013세계에너지총회 주변에서 이상욱 퍼포먼스 작가가 온몸에 녹색페인트를 바르면서 퍼포먼스 시작. 퍼포먼스 내용은 녹색페인트를 온몸에 바른 이상욱 작가가 혼자 천천히 대구 엑스코 앞 광장에서 걸어 다니는 행위예술. 퍼포먼스를 시작하자마자 국무총리실 직속 경호원 사람들이 이상욱 작가를 계속 따라다님. 이상욱 작가가 대구 엑스코 건너편 건물에서 엑스코 광장 앞에 다다르자 국무총리실 직속 경호원 3명이 각자 준비한 검은색 큰우산을 가지고 이상욱 작가를 에워싸며 퍼포먼스 자체를 방해

1500 이에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활동가는 이상욱 작가의 퍼포먼스를 큰 우산으로 가리는 것이 보행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국무총리실 직속 경호원 3명에게 중단할 것을 수 십 차례 계속 요구함. 특히 이상욱 작가가 1인시위를 하거나 피켓을 들고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예술행위임을 수 십 차례 강조를 함. 그러나 검은 큰 우산으로 이상욱 작가의 퍼포먼스를 방해와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계속 됨.

1510 근처에 있던 경찰이 이상욱 작가 주변에 도착. 국무총리실 직속 경호원 3명중 1명이 서창호 활동가에게 계속해서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서창호 활동가가 왜 욕을 하느냐며 문제제기 하고 이 와중에 서로 몸이 부딪침. 그러자 욕을 하였던 경호원이 경찰을 보면서 서창호 활동가를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구두로 전하자마자 옆에 있던 경찰은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서창호 활동가를 연행하려 함. 경찰이 추가로 와서 대구 엑스코 건물 앞에 세워둔 경찰차에 서창호 활동가를 강제연행하려고 함.

서창호 활동가가 강제연행의 이유를 계속 물으며 불법연행임을 지속적으로 경찰들에게 문제제기.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경찰의 부당한 강제연행에 문제 제기. 서창호 활동가의 연행과정에서 경찰의 미란다 원칙 고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았음.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약식으로 말하고, 체포사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음.

1520 서창호 활동가가 경찰차를 타고 산격지구대로 이송. 서창호 활동가 이동 후, 바로 연이어 함께 항의하던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연행 시도. 차를 가로 막으며 방해했다고 말하며 미란다 고지를 함. 주변 사람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며 무조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이후 따로 부르겠다고 말하고 떠남.

700 서창호 활동가 나옴.

1) 개 괄

주민들은 아침 9시 30분 경 바드리마을 다리로 향하는 길목에 늘어 앉았고, 경찰은 도로를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 위반이므로 이동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길을 오가는 차량의 통행은 전혀 방해받지 않았으며 감시단이 계산한 것만으로도 100대 이상의 차량(경찰 도시락 운반용 차량 등 포함)이 아무런 지장 없이 통행했다. 이는 오후 4시에 발생한 상황에도 이어진다. 당시 길가에는 기사가 사용하는 언론사 차량, 주민들의 이동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두 대가 남아있었다. 하루 종일 차량이 그 옆으로 충분히 여유있게 이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견인조치를 강행하기 위해 경찰병력을 배치했고 경찰이 길 양편으로 주민들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견인 시도 차량 근처에 있던 여성주민들에 대한 물리적 사용이 강행되었다. 경찰은 '들고 나가!', '고착시켜!', '끌어내!', '내보내!' 등의 말만 반복했으며, 이동을 강제하는 근거가 무엇인냐고 묻는 말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질문을 회피했다. 결국 여성경찰 7~8명이 여성주민 1명씩 사지를 들어 강제로 3~5미터 가량 이동시켜 고착하는 강제구인 및 노상감금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주민 한 명의 상의가 거의 벗겨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주민들 연좌 시작



연좌 중에도 차량이 지나갈 경우
길을 비켜주는 주민들



여성경찰이 완력으로 끌어내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의가 거의 벗겨진 주민



여성경찰이 주민을 강제구인하는 과정에서
발이 하늘을 향할 정도로 몸이 뒤집힌 주민

2) 일 지

0730 주민들 바드리마을 입구로 이동. 다리 입구에 경찰 병력 이미 배치되어 있음. 주민들 걸어오기 시작하자마자 채증 시작. 개인 스마트폰으로 채증하는 경찰도 1인 발견. 범행 당시와 직후가 아닌 경우 증거 수집할 권한 없다고 항의. 대부분 채증 기기 내렸으나 1인 끝까지 내리지 않는 모습 관찰.

0740 입구에서 길 한편에 앉아 주민들 연좌 시작. 피켓 들고 있음. 채증 하려고 할 때마다 항의하면서 제지함.

0800 경찰 입구 통제 방법 변경(전면 폐쇄에서 개방형으로 좌우로 양쪽에 배치). 주민 차량은 계속 통행하고 있음.

0930 (레미콘 출발했다는 연락 받음.) 주민들 가로 방향으로 길목을 막아 앉음. 지휘관 도로점거는 불법이라며 채증 명령. 실질적 통제 방해 없이 공공도로에 앉아있는 것은 불법 아님. 점거만을 이유로 채증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항의. 지휘관에게 소속, 신분, 성명 대도록 요구했으나 무시했고, 감시단 활동가가 사진 찍으려고 하자 손으로 쳐내면서 끌어내라고 지시.

0940 사복경찰들이 주민들 앞쪽에서 채증 시도. 경찰 도로 불법 점거라며, 형법 185조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 12조 2항을 언급하며 이동을 요구하는 방송. 소속, 신분, 성명 전혀 밝히지 않음. 감시단이 경찰 방송 내용에 대한 반박 및 채증 중단하라고 항의. 마침 올라오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주민들 비켜줌. 다시 주민들 식사 목에 걸고 연좌. 채증에 계속 항의하자 내림.

0950 한전본부 간부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 일부 항의하러 이동(바드리마을 표지석 있는 근처로). 길목에서는 경찰 방송 1회 더 같은 내용으로 진행. 항의하는 주민들 따라 병력 일부 이동(여성경찰 포함). 사복경찰이 항의하는 주민들 채증함. 주민들 항의에 한전 직원은 현장을 떠남. (레미콘이 밀양댐 쪽으로 이동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음.)

1000 마을 입구로 방송차량 들어옴. 길가에 세워둔 주민들 차량 이동 요구하는 안내 방송. 소속, 신분, 성명 밝히지 않고, 길가의 차를 옮겨라,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옮겨지 않으면 견인조치하겠다, 경고방송 3회 이후에도 이동 안하면 연행하고 형사입건하겠다는 내용의 방송. 주민들 방송차량 앞으로 가서 교통 방해도 안되는데 왜 견인하겠다고 협박하느냐며 항의. 교통계 경찰도 현장 도착.

한편, 다리 입구 부근에서 경찰은 불쑥 '채증해'라는 말을 던짐. 차량이 이동하면서 주민들이 비켜준 사이에, 경찰 병력이 내려오면서 주민들 길 옆으로 밀어내려고 시도. 주민들이 바로 연좌했고 경찰은 깔개를 빼앗아 가려고 물리적 시도. 연행, 검거 운운하며 협박함. 감시단은 도로교통 방해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며 지휘관의 부당한 명령에 항의. 경찰병력 물러섬.

1010 주민들 연좌한 상황에서 노래 부르기 시작하는 등 상황이 안정됨. 교통계 경찰 7명이 나와서 견인과 관련한 협의

1100 경찰이 주차되어 있는 주민들의 차량 이동을 다시 요구하며 견인조치하겠다고 협박. 주민들이 항의하자 불법은 아니라고 하며 양해를 구함. (경찰이 차량 조회를 하고 온 것으로 보임.)

1150 주민들 점심식사. 식사 중에도 이동 차량은 보내줌. (인부용으로 추정되는 간이화장실 실은 차량도 보내줌.)

1350 인권침해 상황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 진행. 주민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답변. 주민들은 채증을 하며 범죄자 취급하는 것에 대한 분노, 연행하겠다는 거나 체포하겠다는 등의 일상적인 협박과

괴롭힘, 신분 확인도 안되는 경찰의 문제점 고발 등 경찰의 인권침해를 호소했음. 교육의 전후로 주민들은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거나 모여서 서로 복돋는 분위기로 별다른 충돌 가능성 없었음.

1600 경찰 길가에 주차 중인 차량들 이동하라고 방송하기 시작. 안 빼면 견인하겠다고 함. 견인조치의 근거가 무엇이나고 물었으나 차가 다니는 데 방해된다고만 하고 대답 더 이상 안함. 실제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경찰은 채증조에게 채증 준비하라고 지시하면서 주민들을 동요시킴.

1610 병력 증강 배치, 차량 주변으로 경찰들 배치. 견인차량 도착. 광범위한 채증 진행. 여성경찰 배치. 지휘관은 차량 옆에 서 있는 주민을 끌어내라고 지시.

1620 주민들 저항. 여성경찰들이 여성주민을 에워싸더니 주민을 끌어내기 위해 사지를 붙잡음. 경찰 지휘관은 들고 나가라고 지시. 경찰 병력이 길에 서 있던 주민들을 반대편 쪽으로 밀어붙이고, 병력에 갇힌 여성주민들에게 완력을 사용해 차량으로부터 분리시킴.

1630 견인 완료. 이후 병력 철수하고 길가에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1830 인권침해감시활동 종료

10월 16일 : 바드리마을(84, 89번 현장)에서 활동

1) 개괄

새벽 4시 30분경 주민 한 명이 “트랙터로 바드리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경찰과의 옥신각신 끝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경찰은 전경 한 명이 “주민이 운전한 트랙터에 치여 부상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경찰이 뒷걸음질을 치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문** 증언)

이로부터 시작된 상황은 6시 50분경 송전탑 공사 차량 8대가 지나간 후 종료되었다. 연행자 호송 후 경찰은 트랙터 견인을 시도했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견인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항의하는 다른 주민들(대부분 고령의 여성 주민들)을 길 옆 과수원으로 밀어붙였고, 여성경찰들은 완력을 써서 주민들을 끌어내렸다. 주위에서 여성주민들에 대한 물리력 사용을 중단하라고 항의하는 주민 및 감시단은 경찰에 의해 30여 미터 가량 힘으로 밀어내었다. 감시단이 길을 돌아서 다시 과수원으로 갔을 때 여성 주민들은 거의 탈진 상태였으며, 결국 여성주민 한 명은 119로 호송되었다. 길에서 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밀어낸 후 송전탑 공사를 위한 대형차량 8대가 공사 현장을 향해 올라갔다. 당시 주민들은 채 20여명도 되지 않았고, 연대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도 50여명에 불과한 상황이었으나 경찰병력은 1,000여명(경찰버스차량 육안으로 30여대 확인)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오전 9시 55분 경찰은 주민들을 막가파식으로 체포한다. 6명 정도 되는 여성경찰들은 작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체포를 준비하고, 연습했다. 체포를 시작하여 주민 전체를 도로 밑 캠핑장으로 옮기기까지 걸린 시간은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주민 한 명당 여성경찰 6명과 남자경찰 1명이 달려들어 주민들의 사지를 들고, 캠핑장으로 이동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휘관들은 체포과정에서 ‘발은 남자가 들어라’, ‘주민의 신발을 벗길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체포되어 캠핑장 입구로 이동된 후에도 경찰은 주민들을 20분 동안 감금하였다. 감금된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은 채 경찰은 명령조의 말을 하며 주민들을 자극했고, 저항하는 주민 한 분에게 많게는 7~8명이 달려붙어 주민들의 행동을 제약했다. 공사차량이 내려올 때까지 경찰의 노상강금은

이어졌다.

인권침해감시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채증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인권침해감시단을 비롯한 경우도 많았다. 인권침해 상황을 기록하는 감시단의 기록 수첩을 훑쳐보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해 항의해도 무시했다. 또한 항의하는 감시단에게 밀양경찰서장은 “조용히 해!”, “당신(너?) 뭐야?!”라는 반응을 보였고, 공권력 집행의 법적 근거를 물으며 동영상 촬영을 시도하자, “치워!”라며 인권침해감시단 소속 활동가의 손을 거세게 쳐냈다. 또한 인권침해감시단 소속 활동가를 마주했을 때 “이런 쌍” 등의 욕설을 사용하기도 했다.



16일 새벽 자행한 무리한 현행범 체포



도로 아래로 밀려나 항의하다 실신한 주민



농성 중에도 차량이 지나가기 위해 자리를 비키는 주민들



감시단에게 거친 말을 내뱉는 경찰서장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리자는 의견을 묵살한 지휘관 A



밀양 주민들을 막가파식으로 체포하는 경찰

2) 일지

0600 인권침해감시단 바드리 마을 입구 도착. 바드리마을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경찰 통제가 이루어짐. 경찰은 '트랙터로 길이 막혔다'고 했지만 내려서 걸어가보니 트랙터가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었음. 현장에 도착한 후 주민들로부터 들은 새벽 상황은 다음과 같음. 용회마을 주민 박모씨가 트랙터를 몰고 가던 중 경찰병력이 차량을 막았다고 함. 이 과정에서 의경 한 명이 뒤로 넘어지며 트랙터에 치었다고 주장함. 당시 현장 목격자는 의경이 스스로 뒷걸음치다가 넘어졌다고 함. 의경은 119에 실려갔으며 이후 경찰은 박 씨를 강제로 연행하여 호송차에 실음. (이후 확인된 바로는, 의경은 타박상 정도로 퇴원 조치. 경찰이 소견 내용을 작성해서 의사에게 서명 요구하며 전치 2주 진단 받았다고 함. 연행된 박 씨는 연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입 안에 피가 나고 이가 흔들렸다고 함. 당시 남편의 연행에 항의하던 박 씨의 부인은 경찰이 밀쳐 넘어지면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음.)

0610 트랙터 주변에 경찰 병력이 깔렸고, 경찰은 트랙터를 견인하기 위해 병력들을 동원하여 시민들을 길 밖으로 밀어냈음. 주민들이 비탈 밖으로 밀렸고, 다시 올라오려는 주민을 올라오지 못하게 막음. 왜 주민들을 막는지 물어보자 '공무집행 중'이라 주장. 주민들을 걱정하며 길 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감시단 포함)도 경찰들의 물리력에 의해 트랙터 후방 30미터 지점까지 밀려남.

0630 비탈길 옆에 있는 천막까지 주민들을 밀어붙이고 그 자리에서 여성경찰들이 고착 상태 지속. 그 과정에서 한 분이 숨이 가빠하시다 쓰러지셨고, 응급차를 부름. 주민이 쓰러져 있는 순간에도 경찰은 채증을 계속함.

0645 주민들이 비탈길 옆 천막에서 고착되어 있는 사이 공사용 대형 차량 8대가 삼평교를 지나 공사 현장으로 올라감. 그 후 트랙터 주위와 길 옆에 있던 병력 철수 시작.

0710 주민들(9명) 연좌 중. 경찰들이 둘러싸자 항의. 차량 이동을 위해 비키라고 함. 당시는 통행하려는 차량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주민들이 계속 항의했고, 경찰은 그냥 둔다고 함.

0735 '경찰행정차량'이라는 종이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주민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지나가려 하자 연좌 중인 주민 11명이 그간의 부당한 경찰 행태에 대해 항의함. 경찰이 차량 통행을 이유로 비켜달라고 함. 경찰은 형사입건을 협박하기도 했음.

0745 밀양경찰서장이 직접 주민들에게 나와서 차량 통행해야 한다면서 비켜달라고 함. 밀양서장 옆에 서있던 경찰관은 언론의 취재가 주민들이 연좌를 지속하게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함. (경찰이 송전탑 공사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행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발언임.) 당시 주민들 주위에는 언론보다 많은 채증 카메라가 있었음.

0750 주민들 뒤편에서 한 사람이 걸어내려오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함. 주민들은 앞쪽의 경찰 차량 때문에 길이 막혀 있는 것이라고 말함. 경찰이 경찰차량을 조금 뒤로 뺐음. 주민들은 "학교에는 보내야지"라는 말을 하면서 일어나 길 옆으로 비켜줌. 차량이 내려오려는 중에 여성경찰들이 신속하게 진입해 주민들을 길 양옆으로 밀어붙임. 그 사이에 주민들 앞쪽에 있던 경찰차량도 올라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길 옆으로 비켜섰는데도 여성경찰들을 배치해 주민들을 자극하는 것에 대해 감시단이 항의했으나 밀양경찰서장은 "조용히 해!"라고 매우 위압적인 태도로 대응했음.

0800 차량이 모두 지나간 후 주민들이 다시 자리에 앉음. 지휘관 A는 주민들을 물리력으로 들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다른 경찰관에게 했음. 그 경찰관은 구급차가 배치되기를 기다려서 하자는 취지의 건의를 함.

지휘관 A는 "왜 기다려"라는 말로 무시하며 여성경찰들에게 체포 준비를 하도록 함. 그러나 아직까지 체포는 시도되지 않았음.

0915 경찰 병력 증강 배치되기 시작.

0930 아침 식사 중이던 주민들은 경찰 병력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근처 경찰관들에게 항의의함. 경찰은 식사하는 주민들을 계속해서 채증함.

0950 경찰, 강제로 끌고가겠다고 확성기로 방송. 주민 차량 통행을 위해 주민들이 일어나자 여성경찰을 투입함. 연좌하던 주민들에 대한 불법체포 시작.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나고 따져묻자 경찰은 체포가 아니라고 변명함. 연좌 중이던 주민들을 한 사람씩 차례대로, 사지를 드는 방식으로 캠핑장 입구로 이동시킴. 남성 경찰들은 여성경찰들의 체포가 방해받지 않도록 연좌 중이던 공간을 둘러쌌. 상황을 촬영 중인 언론 취재진과 경찰 사이에 마찰이 있기도 했음.

1000 주차중이던 트랙터(박 씨 소유)를 차주가 아닌 사람이 와서 끌고 감. 연좌하던 주민들이 모두 경찰에 의해 불법체포되고 캠핑장에 미리 깔려 있던 깔개에 완력으로 눌혀짐. 미리 돌레를 에워싸고 있던 여성경찰들은 이 자리에서도 주민들에게 물리력 사용을 서슴치 않았고 주민들은 안정을 취할 새도 없이 몸을 붙들려야 했음. 주민들 오열. 한 주민이 경찰에게 고혈압으로 쓰러진 주민의 혈압 측정 요청. 한전병원의 진료를 주민들이 거부하고 있음을 경찰에게 알려주었음. 하지만 경찰은 한전병원 의료진에게 진료 협조를 요청했고 이를 주민들이 거부함.

1015 캠핑장에서 오전 상황에 대한 인권교육 진행

1140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소장 현장 도착. 현장 상황 공유 후 공사 현장 확인을 위해 이동함. 10여분 동안

1450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소장 현장 떠남

- 89호 송전탑 공사 현장 확인한 내용 공유.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내부 밀착업(목조작업) 정도만 진행이 된 상황.

- 경찰 병력 배치된 상황에 대해 경찰과 협조한 내용 공유. 주민들이 대추나무밭 농성장 밖으로 나와 다시 연좌농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력 철수는 안된다고 함. 통행로도 없이 도로에 병력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과 경찰이 출입구를 둘러싸고 있다는 점이 주민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통행로 확보와 배치된 경찰 병력은 등 돌리고 있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함.

1655 인권침해감시활동 종료

* 16일 오후부터 바드리마을 입구에서부터 경찰이 차량에 대한 검문 시작

10월 17일 : 바드리마을(84, 89번 현장)에서 활동

1) 개 괄

17일 10시 바드리 마을에서는 밀양주민들의 신고리 3~4호기 준공 지연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부터 50여 명의 경찰 병력이 바드리 마을 입구 앞에 배치되었고, 경찰은 '기자회견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마을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쌓고, 안으로 들어오는 차들을 검문하며, 차량출입을 통제했다. 과도한 경찰병력 배치와 차량통제에 바드리 마을 입구에 있는 '사자평명물식당' 사장과 관계자, 그리고

변호사는 경찰의 영업방해 행위를 항의하러 경찰관계자를 만나러 가기도 하였다.

17일에는 경찰의 채증에 대해 감시단과 주민들의 항의할 때, 대부분의 경우 채증을 중단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경찰의 채증에 대한 항의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플랜카드 뒤편에서는 감시단이 항의하면 채증 카메라를 내렸다가 다시 몰래 채증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한편, 17일에는 한 여성이 주민들이 구호를 외치는 순간만을 노려 개인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그 여성은 감시단이 경찰인지 직접 물었을 때 자신은 경찰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가 경찰임이 분명해 보이는 정황적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만약 경찰임을 숨긴 것이라면, 이것은 신분을 숨긴 명백한 민간인사찰이다.



수십명의 경찰이 배치되어 있는 바드리 마을 입구, 경찰들이 차량통행을 막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이 개인 스마트폰으로 채증 중이다.



감시단이 항의하면 카메라를 내렸다가 다시 몰래 채증하는 경찰

2) 일 지

(인권침해감시단 도착 이전 경찰은 주민들 5명이 길가에 앉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담요에 눕혀 캠핑장으로 이동시켰다고 함.)

0945 바드리마을 입구 도착. 마을 입구에서부터 경찰 병력을 배치하여 차량들의 진입을 막음. 차량 진입을 막는 이유에 대해 경찰에게 물어보자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답함. 기자회견 물품을 실은 차량의 경우에도 경찰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바드리 마을 입구에서 차량을 통제하던 경찰은 보고를 통해 협조를 하기 보다는 안된다는 이야기만 반복함. 도로에 가득하게 배치된 경찰은 불필요하게 이동하면서 주민들을 수시로 자극함.(지난 기간 동안 경찰에 의해 이루어진 폭력과 욕설 등으로 인해 주민들은 경찰과 대면하는 것만으로도 자극을 받는 상황임)

1005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 취재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TV조선 기자에게 취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며 기자에게 항의함. 약간의 충돌 발생. 이계삼 선생님이 주민들을 자제시키면서 취재 자체는 허용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충돌은 종료 됨.

1006 사자평명물식당 앞에서 기자회견 시작.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 채증이 수시로 이루어짐. 채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항의함. 감시단의 항의와 기록에 경찰이 자기는 왜 찍냐는 이야기를 함. 발언자들에게 대한 채증이 수시로 이루어졌고, 성미산 마을 학생들이 발언과 노래를 하는 동안에도 채증이 이루어짐. 노래하는 장면을 왜 찍냐는 질문에 경찰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기자회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함.

1120 기자회견을 마치고 주민들이 이동하자 경찰 병력 철수 시작.

1200 주민들 점심식사

1730 감시활동 종료.

10월 18-19일

18일과 19일에는 인권침해감시단의 활동이 없었다. 20일에 밀양에 내려간 감시단은 주민들에게 18일과 19일 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9일 10시 경에는 바드리 마을에서 마을주민 송**씨가 '집시법 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영장 없이 연행되었다. 영장 없이 현장에서 끌려가는 것은 현행범일 때에만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19일 오전 8시 반 경찰이 바드리 농성장 통로를 막았고, 이에 주민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다.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송**씨는 연행되기 전, 구호를 외치지도 않았고, 통로를 막고 있는 경찰들에게 항의하며 경찰 바로 앞에 앉았을 때에도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다. 또한 바드리 농성장 통로를 막고, 주민들과 마찰이 있을 당시, 경찰은 "아 멋지다 할머니!", "할머니 잘하시네~" 등 주민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였고, "농성장 비닐 뜯어버린다.", "더 붙여, 안으로 더 밀어, 밀착해. 학생들 안쪽으로 넣어 놔" 등의 발언으로 주민들을 도발하고, 자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9일에는 경찰이 마을주민 김**의 핸드폰을 압수해가는 일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여성경찰을 동원, 주민의 손을 양쪽으로 잡은 후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갔다. 또한 영장을 확인하겠다는 주민의 요구에 영장을 보여준 경찰은 영장에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고 진술한(욕설) 부분으로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주민이 항의하자 "그렇게 군소리 할거면 보지 마세요.", "원래 앞장도 못보여주는 건데 보여줬구만", "억울하면 변호사 사서 소송하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0월 20일 : 바드리마을에서 활동

1) 개 괄

이 날 오후에는 대한민국 시민햇빛 발전협동조합 네트워크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사복경찰의 불법적인 채증이 계속되었다.

2) 일 지

1540 대한민국 시민햇빛 발전협동조합 네트워크 기자회견 시작

1548 사복입은 채증경찰 등장.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기자회견에 기자도 아닌데 사복입고 채증하지 말라고 항의하며 관등성명과 신분증을 요구. 신분은 신분증 뒷면에 소속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하는데도 사복경찰은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게 신분증을 꺼내서 앞면만 살짝 보여줌.(거의 보여주는 시늉을 하고 바로 집어넣음)

1555 채증을 그만 둔 사복경찰에게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경찰은 "나도 벌어먹고 사는거고.. 좋게 얘기하면 좋게 신분증도 꺼낸다."며 시민들이 좋은 태도로 신분증을 요구하기를 요구. 약 4미터 정도 안팎에서 사람들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멀리서 보여 달라고 하면 신분증을 가지고 그 앞까지 가서 보여줘야 하느냐."며 항의.

1604 채증을 그만두었던 사복경찰들 채증 재시작. 감시단이 동영상으로 기록하자 "이 사람(감시단을 가리키며)이 불법으로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도 뭐라고 안하지 않느냐"라며 발언. 이에 감시단은 "불법이 아니며 공무집행하는 국가권력을 촬영하는 것이다" 라고 밝힘, 이에 사복경찰은(채증촬영은 중단된 상태) "나는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공무집행이 아니다" 라고 발언함.

1617 기자회견 종료

10월 21일 : 바드리마을에서 활동

1) 개 괄

경찰은 한전의 공사차량이 지나가는 시간 전후로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21일에도 7시 경 공사차량이 지나갔고(주민), 공사차량이 지나가기 2시간 정도 이전부터 경찰병력이 길을 막았다.

2) 일 지

0545 아침 5시 45분 농성장에서 도로로의 통로를 경찰들이 다시 뺨뺨하게 길 막기 시작. 농성자들 항의.

0549 주민들의 항의에 옆길은 터짐

0644 경찰버스 3대 길가에 주차, 3대는 지나감(평소와 다르게 많은 경찰이 이동한다는 주민의 진술.)

0700 (제보)하얀색 트럭에 철근같은 자재로 보이는 것 실은 트럭이 지나감

0730 경찰, 곳곳에 약 18명에서 20명을 한 조로 새로 두 군대에 배치. 봉고차로 뺨뺨하게 경찰들을 태워서 산쪽으로 올라감.

0820 경찰 무리가 지나가자 고성에서 지원오신 할머니들이 "한전 편만 드는 경찰은 집어치우라"고 항의.

1053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시작. 사복경찰들의 채증도 함께 시작. 사람들의 감시로 도중에 중단. 사람들이 채증하는 사복경찰에게 항의하며 사복경찰을 촬영하자 경찰은 "당신들은 기자도 아닌데 왜 채증하느냐"며 항의.

1104 경찰의 1회 집회 해산 경고.

1106 경찰의 2회 집회 해산 경고.

1116 경찰의 3회 집회 해산 경고.

1118 경찰의 4회 집회 해산 경고.

1133 사복 채증하는 경찰에게 경찰이냐고 하자 경찰 아니라고 답함.

1141 경찰의 5회 집회 해산 경고

1147 경찰의 6회 집회 해산 경고. 기자회견 종료.



10월 22일 : 바드리마을에서 활동

1) 개괄

감시단이 22일 저녁에 도착하여 당일 상황은 22일과 23일 밀양주민들과 지킴이들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22일, 바드리마을에서는 한전의 레미콘 차량을 보내면서 경찰은 새벽부터 주민들의 이동을 막았고,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왜, 어떤 이유로, 어떤 법적 근거로 막았는지 밝히지 않은 채 주민들의 이동을 막았으며, 여경들을 동원해 사지를 6~10명이 할머니를 비롯한 주민들의 사지를 들어서 자리를 조금 옮긴 후에 자갈길에 던지거나 어깨를 비틀거나 팔목을 꼬집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70세 윤 씨를 비롯한 고 씨, 손 씨 등 여러 명이 온몸에 타박상이나 찰과상을 입었다. 오후 1시경 지킴이 중 최 씨는 경찰과 실랑이 중 탈진하였고, 응급차로 후송했다. 사람이 쓰러졌음에도 경찰은 차가 가야 한다면서 비키라고 말하고 차량을 우선 통행시키는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주민들이 심하게 다쳐 대책위에서 파스를 6만원어치나 사서 붙일 정도로 심했으며, 주민 몇 분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 또한 사복경찰인 남자 형사들이 여성 농민을 밀치고 고착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오전 11시경 두 번째 레미콘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도로에 뛰어든 20대 여성에게 경찰들과 사복이 계속 쫓아 왔다. 그 과정에서 사복 경찰이 “너 네 엄마는 이려는 거 아냐?” 등의 조롱 섞인 말로 자극하였다. 이 외에도 경찰은 산어린이학교에서 농활 온 중학생들 13명과 교사 2명을 1시간가량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감금했다. 나중에 대책위 활동가가 와서 왜 막느냐고 항의를 한 후이나 경찰은 길을 터주었다. 길을 터준 후에도 경찰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어떤 이유와 법적 근거로 감금했는지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어디가냐고만 물었다. 당시 감금되었던 중학생 조 씨는 처음에는 상황을 몰라서 겁을 먹었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화가 났다고 했다.



8시 40분경, 수십 명의 여경이
고령의 주민들을 제압, 고착하고 있다



영문을 모른 채 학생들이 갇혀 있는 모습.
한 시간 가량 갇혀 있었다

2) 일지

0500 바드리 마을 입구 경찰버스 6대 포함 10대 가량 대기. 경찰 약 200명가량 다리 위에서 대기. 여경 20명. 방패로 다리와 입구 차단
0600 경찰 총원 중. 밀양경찰서장 현장에 나타남
0730 단장면 사무소 쪽 경찰버스 9 대, 현장 앞 경찰버스 8~9대, 삼거리 경찰버스 3대/경찰은 200여명 정도

0820 첫 번째 레미콘차 6대 금곡교에서 이동. 경찰 순찰차 앞뒤로 1대씩, 경찰 오토바이 2대, 경찰버스 1대 함께 지나감. 레미콘 타설 기구는 바드리 현장으로 다 올라감. 주민들과 김준한 신부님 모두 삼거 정류장 근처에서 길 양쪽으로 고립된 상태. 명물식당 농성장에 주민 10명 고립상태. 총 3군데에서 주민 고립
0840 문정선 의원 다리에 차를 대놓자 경찰은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조수석을 통해 문을 강제로 따서 문 의원을 나오게 하고 견인차로 견인해감
0850 두 번째 레미콘차 5대 바드리 현장으로 들어감. 금곡교를 지난 레미콘차는 총 10대.
0940 철탑 자재 실은 트럭 금곡헬기장으로 이동
1050 경찰이 다시 길을 막고 금곡 쪽에서 관용차 6대가 바드리로 이동
1100 세번째 레미콘차 5대 바드리로 들어감. 9시 경에 들어갔던 레미콘차 5대 공사현장에서 나감
1250 네 번째 레미콘차 5대 바드리로 들어감
1300 최00 경찰과 실랑이 중 탈진. 응급차로 후송. 사람이 쓰러졌음에도 경찰은 차가 가야 한다면서 비키라고 말하고 차량을 우선 통행시킴. 개별로 고립된 주민들이 집에 갈테니 비켜달라고 하자, 경찰이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해서 5명이 귀가
1400 레미콘차 5대 바드리로 들어감. 총 20대
1400 보라마을 안00 출석요구서 받음. 16일 길에 앉아 있다 끌려 나온 6분 중 1인. 오늘 바드리에 있다가 4공구 현장으로 갔고, 경찰은 자택으로 갔다가 안계시니 전화를 걸어왔다고 함. 당일 연행되지 않았고 이름을 말한 적도 없는데,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다 알고 있었고 남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이야기 했다 함. 광주의 여경이 그날 끌어내는 과정에서 얼굴에 상처가 났다며 고소하겠다고 경찰에 조서를 쓰고 갔고 따라서 어머니에게도 경찰에 와야 한다면 4공구로 경찰을 보낼 테니 따라오라고 했다 함.

10월 23일 : 바드리마을에서 활동

1) 개괄

10월 23일에는 공사를 하지 않는데도 이동을 통제하는 등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방해했다. 감시단은 소속을 알려주고 명함을 보여주며 경찰에게 질문을 시도했으나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었고, 중대장은 경찰에게 인권교육을 다 시키고 온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또한 공사현장의 병력을 확인하기 위해 감시단이 현장으로 올라가려 했지만 막았다. 반면 다른 차량들은 갈 수 있도록 했다. 16시경 인권위에서 조사를 나온 조사관들과 함께 올라가게 해달라는 제안을 했지만 경찰은 다른 사람이 같이 갈수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인권위 조사관만 현장에 올라갔다. 또한 경찰들은 바드리마을 입구에 나와 있는 할머니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말로 흔들기도 했다. 오전 11시경 83세의 강 씨가 화장실로 가는 중 만난 여경이 “오늘 나온 이유가 안 나오면 동네에서 벌금내기 때문 아니냐?”라며 조롱하는 내용의 폭언을 하였다. 강 씨는 내 스스로 왔다고 말했지만 본인이 나이가 많고 배운 게 많지 않다고 생각 없이 나온 사람 취급하여 불쾌했다고 했다.



현장으로 올라가려는 감시단이 탄 차량만을 막는 밀양경찰서 경위



한전 측 직원과 논의하는 경찰



주민들의 사지를 들어 옮기는 여경

2) 일 지

0920 인권침해 감시단 바드리 농성장 도착

0930 경찰에게 소속과 통행차단의 이유 질의했으나 거부. 중대장은 인권교육을 시킨다고 하였으나 어떤 내용으로 언제 했느냐고 구체적으로 묻자 거부.

1030 주민들 피해상황 인터뷰와 사진 촬영

1100 황00 화장실에 가는 중 여경이 “오늘 나온 이유가 안 나오면 동네에서 벌금내기 때문 아니냐?” 조롱함

1330 인권침해감시단이 공사현장 병력을 확인하려 올라가려함. 밀양경찰서 전민우 경위는 대놓고 올라가는 것을 막음.

1400 농활 온 산어린이학교 학생들이 농활을 하고 있는 동화전 마을회관에 가서 감금사건 인터뷰

1600 인권위 조사관 도착. 경찰들이 인권침해감시 활동을 방해하니 경찰들에게 제안해 같이 올라가자고 함. 경찰이 거부하자 인권위 조사관들만 공사현장으로 올라감.

1700 조사 마침. 저녁에 어제 경찰소환 연락을 받은 안00씨가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여경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언론보도와 대책위 설명을 들음.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경찰이 사건에 대해 언론에 과장보도 하였음.

10월 24일 : 밀양댐 근처 헬기자재야적장에서 활동

1) 개 괄

감시단은 밀양댐 근처에 있는 헬기자재야적장(이하 헬기장)을 감시하였다. 경찰은 공식적인 절차 없이 주민들에게 업무방해라면 이동하라고 했으며, 심지어 한전 측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며 주민들을 강제이동 시켰다. 그 과정에서 여경의 팔꿈치에 머리를 맞아 78세의 할머니가 실신해 응급차에 실려 갔다.

한편 한전은 출입구에 일반적인 옥외집회신고서와는 다른 옥외집회신고서를 게시해놓았다. 신고접수증에 적힌 내용이 이상하다고 지적하자 한전 직원은 집회신고서를 찢어버렸다. 또한 경찰이라고 사칭하며 채증을 했던 사복을 입은 사람이 경찰이 아닌 것이 드러나, 사복을 입은 경찰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마를 다치고 쓰러지신 주민



일반적인 양식과 다른 공문



경찰 사칭한 한전 직원에게 항의하는 미디어팀

2) 일지

0720 인권침해감시단 밀양댐 근처에 있는 헬기자재야적장에 도착. 한전 직원들 대책위와 감시단이 차에서 내리자 바로 출입문을 닫음. 출입문에는 보통의 집회신고접수증(2013-128호)과는 다른 신고서가 게시된 것을 보고 직원에게 문제점 지적. 한전 직원은 최근에 한 것은 있는데 게시를 안했을 뿐이라고 말함. 또한 감시단이 왜 공용도로를 막는지, 적법하게 통행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문서를 보여달라고 요구.

0740 항공유 탱크로리 도착

0745 밀양댐 부근에 경찰 병력 2~3대 도착. 경감에게 집회신고접수증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

0800 주민들 6명 헬기장에 도착. 바로 경찰이 해산명령을 함. 감시단이 항의하자 경고일뿐이라며 말을 돌림.

0815 경찰버스 3대 추가.

0820 경찰이 한전 측 직원에게 나와서 업무방해라고 말하라고 시키고 탱크로리 운전자에게도 주민들 앞으로 올 것을 지시. 주민들 6명 출입구에 누움. 경찰은 한전직원이 주민들에게 “업무방해니 일어나세요”라고 하고 바로 해산명령을 한 후 여경들을 동원, 이동을 지시.

0825 항공유 탱크로리 진입.

0830 김 할머니(78세)가 연행 중 여경의 팔꿈치에 머리를 부딪치고 쓰러지심. 이마에 혈관이 부풀어오르는 등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도 감시단의 응급조치를 막음. 항의하고 겨우 들어가서 응급조치 함.

0831 헬기가 헬기장으로 이동.

0850 응급차가 와서 이송.

0910 밀양댐 레미콘 2대 진입

0920 응급실에 같이 간 대책위 활동가로부터 김 할머니가 어떻게 다치셨는지를 들음. 또한 주민 고모씨에게 경찰이 소환 전화를 줌전에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음, 소환은 정식 문서로 해줄 것을 요청하려 했으나 경찰이 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함.

0940 주민들에게 그동안 여경들에게 연행될 때 안전조치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으니 그런 적이 없으며, 안경을 낀 사람도 아무런 조치없이 끌어가다가 안경이 깨진 사람이 많다고 말함. 24일 당일에도 안경을 낀 주민이 2명이나 됨. 또한 감시단은 사복경찰들에게 신분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시위현장에 있는 것의 위법성,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함.

1010 인권침해감시단과 주민은 경찰에 여경들이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채 가격을 하거나 꼬집는 등의 일이 많으니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함. 경찰은 알았다며 확인해보겠다고 함.

1030 미디어팀이 사복입고 채증한 사람이 경찰로 보이지 않으며, 그동안 계속 채증을 했다는 제보를 받음. 그에 따라 경찰에게 해당 사람의 신분을 물으니 모른다고 해서 함께 갈 것을 요청. 경찰은 사복을 입은 사람과 귀엣말을 했으나 그 내용을 감시단에게 말하지 않음. 단지 경찰이 아니라고 말함. 그리고 사복을 입고 경찰을 사칭한 한전 직원은 출입문 안으로 도망갔으나 경찰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음.

1040 주민, 미디어 팀, 감시단이 현장에서 나옴.

밀양 주민 증언록 모음

※ 밀양 인권침해감시단이 10월 15, 17, 20일 진행한 주민 인터뷰를 증언록 형식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 박스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증언에서 다루는 상황의 배경을 설명한 것입니다.

* (-)는 사실 전달을 위해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추가한 부분입니다.

1. 김OO (59, 용회마을)

농촌인데, 일단은 바쁘거든요, 지금. 눈코뜰 새 없이 바쁘데 할매들 다 모여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할매들 나오시라카기가 힘들거든. 나오는 사람들도 힘들게 나오고. 할머니 이래 고생을 시키고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정부가 할매들 마 죽이는……. 아까(10.15. 아침) 높은 사람이, 한전 뭐 전무인가 이사인가 왔는데, 그 사람이 정정당당한 사람 같으면 왜 이래 마을길로 와가지고 할매 할배 수고한다고 안하겠어요. 멀리 숨어가지고 엿보고 하는 행위는 진짜 나쁜 행위거든요. 욕을 얻어먹어도 방망이 얻어맞아도 저거는 우리한테 할 말 없습니다. 이거 하루이틀 예삿일이 아닙니다.

10.15. 아침 용회마을 주민들은 레미콘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드리 마을로 모였다. 주민들이 거의 바드리 마을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용회 마을에 나타나 김OO 님이 찍힌 사진을 들고 주민들에게 이것저것 물으며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아래는 그 상황과 더불어, 10월 공사 재개 이후 경찰과 맞닥뜨리며 들었던 심경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리고 내 동네에 아까 전화가 오기를, 마을 입구에서 형사인지 경찰인지 몰라도, 내 사진이드라고 함디다, 이 사람 이 동네 사느냐고 묻더래요. 동네분이 모른다고 했더래요. 오늘 여기 다 온 상태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찾았는지는 말을 안하구요. 아, 여경들 발로 찾다니? 여경들이 다쳤다고, 이 아줌마가 여경들을 때려가지고 그래서 찾는다고. 사진이 많이 찍히고 하니까 그거를 덮어씌울라고, 마 그렇게 생각해요. 난 여경들 손목도 잡아 본 일이 없어요. 제가 사진이 좀 많이 박혀가지고 찾은 것 같아요. 내가 차를 태워서 할머니들 모시고 다니고 그러니까 내를 없애뿌마 동네 할머니들 안 태우고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겠지. 경찰들이 나 많이 알거든요. 눈여겨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관찰합니다 그 사람들은.

전에는 불안했는데 지금은 안 불안해요. 인권에서 오셔가지고 도와주고 변호사님들 와가지고, 불안해하지 마라, 전부 다 협박해도, 체포한다 연행한다 해도, 뭐 개인으로 하면 두렵지만 이래 활동가들이 와가 많이 도와주고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니까, 할매들이 무서운 거는 한결 덜해졌어요. 우리끼리 하면 사실 별 별 떨죠.

처음에도 알고 텨비긴 텨뵈는데, 공권력이 경찰을 너무 많이, 몇 천 명 푼다 삼천 명 푼다, 이거 협박 아닙니까? 완전 할매들 덜덜 떨게 할라고 하는 거지. 저거는 공사 현장에서 막으면 우리가 감당을 죽든 살든 해보겠는데, 아예 우리를 막으면서 우리를 못 울리 보내면서 우리 보고 길 막았다고 불법이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짓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그거는 알지요. 저그가 막으면서 우리 보고 불법이라고 하는 행위는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연행한다, 체포한다 이런 조로 불법이다, 그냥 길을 막고 있다고 불법이라고 그러면 할머니들이 악을 써가 지고, 너가 길을 열면 우리가 막지를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쪼매 강한 거를 보이면은 체포한다 연행한다 비키라 불법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이름도 절대 안 밝히고 명찰도 안 달아요. 경찰하고 뭐 입 섞어 말하기 싫어요. 한전 도와주는 경찰한테 말해봤자 뭐하겠어요. 주민을 보호해야 될 경찰이, 한전을 돕고 없는 서민을 죽이면서 돕는데, 입 섞어가 말할 필요가 없죠.

10월 공사 재개 직후에는 주민들이 공사 현장까지 가려고, 경찰이 길을 막으면 길에서 노숙을 하는 등 갖은 고생을 했다. 특히 10월 1~2일에는 비가 내려 주민들이 비도 피하지 못하고 길에서 자야 했다.

한번 몸싸움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동네 분들이 할머니들이 대여섯 명 됐어요. 다 쓰러졌어요. 그날 기절하고 119로 다 실려갔어요. 네 명이 우리 동네에서 다 실려갔어요. 시체같이 실신해 놀래가지고 전부 까 무라쳐가지고 누워있는데, 119를 부르지도 않고 인격을 그만큼 모독스럽게 하는 경찰입니다. 119가 밑에 있는데도 부르지도 않아요. 우리 동네에 고 선생님이라고, 교장 선생님 퇴임하셔가지고 계시는데, “니네들 할머니 쓰러져가 있는데 5분 경과했다, 10분 경과했다.” 그런 식으로 40분을 방치했다 해도 저그는 눈도 깜짝거리지도 않아요. 나중에 할 수 없어가 119 불러가지고, 다 타고 갔어요. 링겔 한 대씩 말고. 날바닥에 비탈진 데서 웅크리고 추운 데다가 아침에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전부 다 뺏은 거예요. 날바닥에 누워가지고, “직이라, 우리 밟고 넘어가라, 밟고 지나가라, 못 간다.” 하고 드러눕었으니까 한기도. 할매들이 전부 다 기진맥진 맥이 다 풀려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셔도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밖에서 그레 날바닥에서 잤으니까. 지네들은 저기 부곡 특급 호텔에, 거기서 비오는 날도 호화판으로 누리고 잤다대요. 우리는 그날 비 온다고 새우잠을 자서, 비가 막 산에서 쏟아지는데도, 밑에 119도 있고 병원차도 다 있는데도, 경찰도 요 바로 밑에 있는데도 할머니들 보호 한 번 안함디다. 산에서 물이 팔팔 토랑물마냥 내려오는데도 보호를 안 해요, 경찰이. 너무나 억울하죠.

할매들 더 강해요. 저것들이 할머니들을 물러서게 만들려고. 젊은 사람들이 선도해가지고 할머니들이 그레 하는 줄 알아요. 할머니 자기 재산 자기 자식한테 주려고 평생 일궈온 건데 호락호락 한전에 넘겨주고 싶겠습니까. 나는 어차피 다 살았다 하는 거지. 목숨을 내놓고 싸우겠다고.

핵을 없애는 운동을 하잖아요. 밀양 주민 안타까워 오지만 이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이 건 절대로 들어서면 안 되겠고,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자손한테 물려줄 이 땅을 건강하고 튼튼하고 좋은 땅을 물려줄라고 할매들이 다, 자식한테 물려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도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 입어가지고 진짜로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송전탑이 들어서면 절대로 안 된다고.

<경찰에게 한 마디>

경찰청장 나름대로 자기 고민이 있겠지만은, 정부에서 누르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은, 진짜로 똑바른 경찰청장이라면 똑바로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경찰청장이 돼야 우리나라 똑바로 선다고 봅니다.

2. 송OO (58, 용회마을)

지금 저 현장에는 주민은 아무도 없잖아요. 공사 현장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다른 차들은 다 보내주면서 철탑을 막는 사람들한테는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입구부터 막아가지고 저희가 들어가지를 못하게 만들고, 일단 경찰들이 그렇게 많이 동원되었다는 자체부터가 주민들한테 위압감을 주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아무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왔다고 하지만 한전의 공사를 위해서 나왔다고밖에 믿을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고.

경찰은 송전탑 반대에 적극적인 주민들의 신원을 모두 파악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상황이 발생하거나 채증을 할 때에도 특정인을 지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25명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얼굴을 가려도 자기들은 아니까 이름을 부르고, 아줌마 어찌구 저주고, 이런 거 자체가 저는 너무 듣기가 싫고예. 일단 제가 일어서면 카메라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자존심 상하고, 공권력이라는 게 이런데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우리가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한전보다 경찰이 더 미운 거예요.

현재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거 많은 경찰력을 여기 보냈다는 거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또 아까 보다시피 차량을 충분히 댈 수 있는, 보통 때 늘 대는 그런 길도 못 대게끔 하면서 공권력 집행한다고 말할 때 너무 기가 차서. 자기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길을 통제를 안 하면 저희들도 굳이 여기 막을 이유가 없죠. 저희들의 재산권과 모든 것이 박탈당하고 다 잃고 있는 마당에 누가 감히 맞서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자기 재산이고 자기 건강이 다 날아가는 판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만 붙잡으면 “채증해! 채증해! 이거 사진 찍어! 채증해!” 채증하는 사람들도 한 두명이 아니예요. 사복경찰부터 시작해서 업무 경찰들 계속 갖다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리로 올라갔을 때는 경찰이 방패를 양 사방으로 디근자 모양으로 에워싸고, 우리가 거기에 누워있었거든요. 조금 비키라고, 갑갑하다고 해도, 이건 완전히 감옥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희가 이태까지 살아오면서…….

채증을 하는 경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예. 우리가 평리에서 앉아 있다가 어디 일어난다든지 하면 찍고, 우리가 앉아있는데도 한 번씩 올라와서 밑에서 찍고. 제가 그냥 앉아있는 상태에서 찍어서 내가 막 고함을 질렀어요. 찍지 말라고. 우리가 아침에 길 올라갈 때 실갱이가 있었어요. 그럴 때 무조건 채증하라는 거죠. 자기들은 어차피 자기 비위에 뭐라든지 한다 하면. 예를 들어 사복 경찰이 올라갈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사복이기 때문에 한전 직원인지 경찰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에 한전이나 경찰이나 신분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채증하고, 어쨌든 카메라를 계속 들이대는 거죠.

바드리 마을 공사 현장은, 현재 농성장이 있는 마을 입구에서 지그재그로 나 있는 오르막길을 따라 차로 올라가도 20여 분이 걸리는 곳에 있다. 주민들은 공사 현장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마을 입구에서부터 경찰이 통행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크다.

제가 그랬어요. “주민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당신들 우리한테 도와준 게 뭐 있냐.” 평리 있을 때는 비바람 그렇게 불고, 비닐 천막 다 찢어져가 위에만 비닐이 있었잖아요. 그게 구멍이 나서 비가 줄줄 새고, 그렇게 번개치고 할 때, 경찰차가 밑에 있었는데 한 번 올라와서 물어보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주민을 위한 겁니까. 자기들은 다 버스 안에 들어가 있고 누구 하나 “괜찮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고예. 우리가 경찰에 기대도 안 하지만 진짜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경찰은 지금 버스가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밀양에 길 하나 차선을 완전히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제가 평리 올 때도, 밤에 새벽길을 오는데 경찰들이 앞에 앉아 있는 거를 제가 못 봤어요. 길에서 좀 나왔던 모양이에요. 제가 온 순간에 그 사람들이 탁 일어섰어요. 자기도 놀랐을 꺼예요. 그리 안 보이는 상황에 버스를 대 놓고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게 경찰 버스가 그렇게 많이 길가에 대어져 있거든요. 우리 승용차는 그 대로도 아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틈에, 댈 수 있는 자리인데도, 저희들은 정말 위법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위법이라카면 저희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너무 억울하고, 사실은 분한 거예요.

무조건 막고, 경찰들이 길을 막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싸울 이유가 없는데. 차가 내려와도예, 거기 있는 차 보고 주민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다고 우리 평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너희가 터라, 너네가 터면 우리가 터겠다, 우리가 송전탑 부지까지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거기 가서 너희가 막는다면 그래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한전하고 그 현장에서 싸우게 되면 그거를 막기 위해 너네가 있는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왜 길 밑에서부터 차단을 시키고 하느냐.” 그것도 겹겹이 네 겹이나 되게끔 층층이로 쌓고 있는 건. 여기서 부지까지는, 84번을 올라가려면 3킬로 넘게 올라가야 하고, 89번은 2.5킬로 그 정도 가야 하는 거런데.

경찰이 한전의 공사를 돕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언론의 왜곡 보도도 주민들을 힘들게 한다.

인권침해라는 그 자체가 우리들한테 누르는 힘이 있잖아요. 무언의 압력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너무 분노하고. 아까도 알다시피 한전의 전무가 와가지고 저기서 경찰하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이랑 경찰이 결탁되어 있는 건 분명해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고통 받고 있는 국가에 대해 우리가 비판을 하고 싶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이 경찰이 더 미운 거예요. 공권력을 앞세워서 한전이 일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그 많은 경찰력이 동원되었다는 자체가 주민들한테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지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 철탑부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싸워보겠다는 거는 철탑이 세워지면 모든 게,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데 어느 누가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변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도 티비에서 나오는 뉴스 언론만 보고 밀양을 너무 나쁘게 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우리는 그런 부분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언론에서 매도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경찰력까지 이렇게 몇 천 명이 동원돼가지고 그렇다는 게.

언론에서 그때 통합진보당이 와서 굴을 파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선일보에다 전할르 했어요. 할머니들 스스로 판 거를 그런 식으로 타이틀을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조선일보에 났더라고예. 그래서 “너가 직접 와서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전화를 했었거든요. 정정보도 하라고. 언

론이 취재를 와도 그런 식으로 하나까 주민들이 언론에 대해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취재를 해가도 다 거짓, 똑같아, 이러니까 거부하는 데도 있고. 한 번 MBC 기자가 왔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에 오는 분들은 바르게 적어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올라가면 편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정확한 보도가 안 되는 거죠. 취재를 해갈 때 우리가 “잘 부탁드립니다. 있는 진실 그대로를 해주십시오.” 하면 “네.” 하고 올라갑니다. 그 분들은 현장 볼 때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가서는 내용이 그렇게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사회공론화 기구를 만들자, 아니면 공개석상에서 한전하고 우리가 토론을 한 번 하자,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KBS나 MBC나 SBS나 답이 없잖아요.

아까 어떤 할아버지가 “저기 서가 있으면 10만 원 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대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아파서 자발적으로 와서 도와주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시각은 한전이 그렇게 하는 거야. 한전은 모든 걸 동원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돈을 많이 가졌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위거든요.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면서 경찰과 마주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처음에 경찰이라는 걸 처음 가니까 진짜 두렵기도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사진 찍은 거를 내놓고 특수공무 집행방해라는 죄목을 대니까. 우리는 보상을 더 받기 위해 그런다는 말에 항의하러 갔던 거고 허가권을 지연시켜달라고 시장한테 갔을 뿐인데, 경찰은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하나까, 뭐라고 해야 하나 그런 두려움보다 분노가 일어나서, 지금은 제가 잡혀가도 하나도 무서운 거 없어요. 솔직히 나를 제발 잡아가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그 소리 해요. 내를 제발 잡아가라. 솔직한 말로……. 정부가 국민을 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법이라고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이 국가에 대한 분노와 반감이 너무 커져가지고. 용산 사태라든지 쌍용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왜 벌어졌는가를 진짜 저희도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직접 안 겪어보고는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경찰이 결국은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경찰도 그렇지만 이 정부가 765 송전탑으로 주민들을 하나 하나 정신적으로 고문해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주민들을 말려 죽인다는 생각이, 가격하거나 폭행하거나 직접 때리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들 하물며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권마저 우리가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고요.

자꾸 뭘 다해야 하는데 뭘 다 놓쳐요. 다 잊어버리고. 집에 있어도 사람이 멍한 상태 있잖아요. 원래 안 그랬는데, “지금 뭘 해야 되노?” 기억력도 너무 많이 없어지고.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어떤 때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돌아서면서 잇는 게 많으니까. 잠을 깊게 못 자요. 숙면을 취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하여튼 제가 제일 억울한 거는 제가 누리고 살아야 될 지금 이런 시간들을 다 놓치고 산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바드리에서 목에 쇠사슬을 땀 때 진짜 너무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예. 정말 한 순간 목을 딱 조르면 그대로 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죽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면서 저기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감정 조절이 잘 안돼요. 집에 들어가서도 뭐든 화풀이를 남편에게 다 하고. 무슨 말 하면 말투도 곱게 안 나오고. 입을 벌리면 제가 악을 써대고, 그런 모습 자체가 너무 싫은데도 제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해가는 내 모습이 너무 싫고, 이게 모든 주민들이 그렇지만 어

편 결말이 나든지 더 이상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게 힘들어.

10.15. 인터뷰 즈음의 마음을 물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있다면 시간을 갖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고. 밀양도 8년 동안 허송 세월한 거잖아요. 이렇게 시간적으로 소모해가면서 왜 이렇게 했냐고요. 결국 자기들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밀어붙이겠다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부도 발전이 없잖아요. 우리도 정부를 신뢰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우리 밀양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또 다시 일어날 거예요. 이런 사태가 없이 사람들 아픔을 들어주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바로잡을 수 있게 해야지 이런 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농사 이렇게 바쁜 시기에 저 사람들이 공사를 하거든요. 그 자체도 너무 사람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정부가 정책을 잘못 하고, 모든 것을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덤터기는 주민들한테 덮어씌우는 국가. 저는 진짜 안 싸우고 싶거든요. 나도 돈만 있으면 떠나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자기가 가진 땅, 집이지 그게 팔리지 않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송전탑이 안 좋다는 거를 알지만 그 밑에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진짜 이렇게 대한민국이 싫었던 적은 없는 거 같아요. 자기 국가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싸울 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저희들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죠. 마 내가 여기서 주저앉는다면 너무 억울하고, 힘이 모지라지만 끝까지 그래도 싸워가지고 후회는 안 남도록 해야 할 것 같애.

맨 처음에 힘들었던 거는, 왜 내가 이 좋은 시간을 이런 데 허비해야 하나, 그게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팠어. 근데 지금은 오로지 끝까지 투쟁해서 정의가 뭐라는 거를 작은 힘이지만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부가 갈수록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권력으로 밀어붙이고 몇 천 명씩 그렇게 때려잡는다면, 우리가 힘으로는 못 당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느 것이 정당했다는 진실은 뒤에 가서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작은 힘이지만 이렇게 힘을 모아가는 거고. 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 처에서 오거든요. 저희가 그 분들, 그런 사람들 따뜻한 마음들 때문에 힘을 더 얻어요.

<경찰에게 한 마디>

위에서 지시가 내려 오면 뭐 할 수밖에 없는 조직 사회라는 특성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각 개인의 마음은 판단하는 게 틀릴 거 아입니까. 내리가는 현장에서만이라도 자기들이 그렇게 오버 안 해도 될 부분까지도 그렇게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협을 준다는지 말 자체를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경찰이라는 거는 어느 선을 떠나서 이 편이 아니고 저 편이 아니고 중간적인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눈으로 볼 때는 100% 한전의 편을 드는 거예요. 경찰도 우리를 잘 쳐내가지고 공사를 잘 하면 정부에서 자기는 신임 받고 또 진급할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는 동안 돈이 다가 아니다, 돈 맞을 안 사람들이 돈을 안다고, 양심이라는 게 있을 텐데 사는 동안 그래도 '내가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했구나' 그런 걸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양심이라는 것은 안 버리고.

3. 구OO (64, 용회마을)

10월 공사 재개 이후 경찰의 부당한 행위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물었다. 현재 바드리마을 입구의 농성장은 바드리마을 공사현장까지 한참 떨어진 거리다. 바드리마을은 밀양에서 풍경 좋은 '오지 마을'로 알려져 있는 마을이다.

경찰이 제일 부당하게 하는 건 지나친 통행제한이죠. 지금 농성장 있는 데에서 공사현장까지 5킬로미터 되거든요. 5킬로미터 앞에서 막는다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1킬로도 심할 것 같은데, 5킬로 앞에서 겹겹이 막아서, 평소에 우리가 늘 다니던 도로를 전혀 못 다니게 하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죠. 경찰이 왜 막는지 대답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런 거 보면 자기들도 분명히 불법을 하는 것 같거든요. 떳떳하게 대답하는 걸 못 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이 길 위에 농성장을 차렸으니까 하루에도 차가 여러 번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앉았던 자리를 다 걷었다가 다시 폼다가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길 아닌 곳에서 경찰이 막으면 주민이 통행에 불편을 안 느끼겠죠. 그러니까 지나 다니는 주민들의 원망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주민들의 통행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건 우리는 백 프로 통행하게끔 그때그때 해주는데도 우리가 걷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불만이 있죠.

우리는 지금 한전의 공사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죠. 한전은 분명히 합의하고 공사하기로 했는데 63% 이상이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강행했다 말입니다. 한전 자체가 이미 부당한 건데 그것을 경찰이 현장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답답하죠. 한전하고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요, 맞붙어봐야 되고, 그런 한전 구경을 경찰이 못하게 하니까 그게 제일 답답한 일이죠.

두 번째는 채증 문제죠. 우리 있는 곳은 길하고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경찰 버스가 길의 절반 이상, 2/3 정도를 막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밥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그 버스 안에서 채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찰보고 제발 우리를 올려보내 달라 애원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우리도 경찰하고 마찰이 되는 거죠. 그 채증은 또 엄청나지요. 카메라가 보통 한 서너 대는 돌아가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핸드폰으로, 마찰이 딱 일어나는 순간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지요. 우리가 아무리 지적을 해도 끄떡도 안 하고, 마찰이 다 끝났는데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 개인을 오래 비춥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를 찍어서요.

채증 때문에 주민 분들이 많이 화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자극이 되죠. 주민들을 아무래도 위축시킬 심산, 나중에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심산이겠죠? 실제로 현장의 사진이 아닌데도 그걸로 공사방해금지 처분 신청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주민들한테는 많이 부담이 되죠. 나도 오늘(10.15.) 사진에 OO 씨랑 내가 나왔다면서 동네 주민들한테 경찰이 사진을 보여줬다고.

그리고 경찰이 우리하고 맞설 때 불법이다, 연행한다, 심지어는 체포하겠다 그런 말 너무 남발하거든요. 주민들을 많이 불안하게 하죠. 근거를 말하지도 않고 물어봐도 무시하고.

그리고 지나친 물리력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항의하고, 사실 별 힘이 없잖아요. 그 위치에 있다뿐이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완력으로 뭐 어떻게 해보자는 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그 위치에 버티고 있을 뿐입니

다. 그런데 여경이라든가 남자 경찰이 너무 많은 숫자로 한 사람한테 대여섯 명씩 붙어서 너무 심하게 끌어내는 게…….

우리가 한전과의 싸움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출입을 못하게 해놓고 한전을 통과시키는 걸 봤을 때 우리가 많이 흥분되잖아요. 항의를 할 때 엄청 사지를 제압당하고, 남자 경찰이 우리 손가락을 너무 휘어버려요. 일인당 두 사람씩 달려들어 가지고 손가락이 세차게 휘어가지고 한전을 통과하게끔 하던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힘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힘없는 사람한테 너무 힘자랑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여기서 연행될 때 멍이 손가락에 자국으로.

주민들 외에 기자나 사회단체 활동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거의 모든 주민들이 강조해서 말하는 부분이다.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주민들은 여러 가지 법도 모르고, 사실 이런 일을 당해본 적도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아는 게 없잖아요. 주민들만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마음에 부담이 되는 소리를 참 많이 하지요. 당신들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항의하면 자기들끼리 막 웃고 그래요. 우리는 이게 너무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 앞에서 거의 비웃듯이 웃거나, “당신들이 이래봤자 무슨 소용인데 이런 짓을 하느냐”라든가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하죠. 그럴 때 엄청 자존심 상하지요.

10.11. 오전 7시 30분경, 고OO 님(70세)이 연행되었다. 고OO 님은 구OO 님의 남편으로, 당시 평리에 함께 있었다. 밀양서 지능팀 임동준 경위가 고OO 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10여 분 후, “이야기를 하겠다”며 고OO 님을 강제로 연행했다. 당시 임동준 경위에게 상당한 술 냄새가 나서 주민들은 공무 집행 중에 술을 먹으면 되겠냐고 항의했다. 경찰은 고OO 님을 차에 태운 뒤 항의가 계속 있자 내리라고 하더니, 다시 임의동행 등 아무런 고지 없이 차에 그대로 태운 채 창원서부경찰서로 이송했다. 전날(10.10)부터 경찰이 고OO 님과 구OO 님을 의도적으로 찾았던 정황이 있어, 주민 일부에 대한 표적 수사나 연행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일었다. 아래는 당시 상황에 대한 구OO 님의 증언이다.

술에 만취한 경찰이 거의 시비조로 하드라고요. 눈동자가 너무 야비하게 바라보드라고. 진짜 기분이 이거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기분이 안 좋드라고. 그러면서 “어 고 쌤 부부가 다 지시하네, 맞네?” 이런 반말 비슷한 걸 한다 말입니다. 두 사람이, 두 부부가 다 하네 이런 식으로. 왜 그런 소릴 하냐고 항의해도 비아냥거림이었어요. 이렇게도 무시할 수 있구나. 이렇게 사람을 덮어씌울 수 있구나. 거의 표적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경찰이 만취 상태에서 자기 올바른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였던 것 같애. 그래도 우리 두 사람이 머리도 하얗고 한데, 그 나이 젊은 사람이 반말 하면서. 속으로 ‘시골이니까 이런 일 당하는구나. 그래도 도시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진짜 깊은 시골이니까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몽롱하게 걸어가고 있던데, 이거는 해도 너무 심하다, 도가 지나친 거죠. 그 경찰이 평소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변 동료도 합해서 형사가 네 사람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조차 술 냄새를 못 맡았는지. 그 사람들 다 합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런 동료를 데리고 공무랍시고 하는데 누구 한 사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행이니까요. 근접했을 때 술 냄새를 아주 역하게 맡았죠. 지나치

다, 거의 만취다, 거기 문제제기를 하고 장하나 의원실에서 음주 측정을 하라고 했는데 거부 했잖아요? 그런 문제되는 상황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되는 게 경찰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억울하다면 더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의혹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취 상태를 지적했을 때부터 그 사람이 우리 곁에 안 왔습니다. 멀리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경찰을 너무 많이 줘다 보니까 만성이 되는 거 같아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당해야 되고, 저 사람들은 원래 저러는구나. 나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 같애.

(고OO 님 연행에 대해) 이게 도대체 뭐하는 절차냐고 엄청 항의하니까, 자기들이 대화라 하고 연행한다는 소리 절대 안 했거든요. 대화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차에 문을 열고 들어갔죠. 문을 열어놓고 하든지 밖에 나와서 하라고. 그럴 때마다 문을 광광 닫더라고요. 대화 한다는 경찰이 또 나를 끌어내고요. 자기들이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데리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문제 삼으니까 분명히 (차에서) 내리라고 했거든요. 노인을 허리를 꺾고 허리를 아프게 하고 못 걷게 하고 (차에) 집어넣고, 이제 문제가 된다 싶으니까 내려라 했을 때 우리는 정말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양반(고OO 님)이 사과 안 받고는 내릴 수 없다 하니까, 그러니까 (경찰서로) 데려가는 건 또 뭐니까? 그것도 밀양경찰서에 술 취한 경찰 내려놓고 나서 먼 창원 서부경찰서까지 데리고 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수사를 하고, 정당한 절차 하나도 없이. 그거는 막 비빔밥이래. 두루 얹쳐가지고 연행을 하겠다는 건지 그냥 겁을 주겠다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죠.

10월 공사 재개 이후 경찰을 마주하면서 지금까지의 심경을 물었다.

평소 경찰을 봤을 때 두려움이 없었어요. 자기들도 양심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설마 설마 공정하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당하기 전까지는요. 근데 실제로 당해보니까 공무원이 공권력이 이렇게도 할 수 있는구나 그걸 느꼈지요. 지금은 경찰이 바로 보일 턱이 없죠. 그 전에는 한전이 너무 부당하고 거짓을 일삼고 어느 것 하나 이치에 닿지 않는 사업을 했잖아요. 경찰이 거의 동일선상으로 보이죠. 아무리 상부의 어떤 명령이 있었더라도 이게 정당한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부당한 명령이어도 따라야 되는가, 부당한 명령인데도 과잉되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식이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을 위해 있는 공무원 아닙니까?

한전도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이면서 어느 것 하나 투명하게 한 게 없고, 진실 외면하고 돈벌이를 위하는 게 우리 눈에 너무 많이 비춰졌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하고, 그 대안들이 한전 측에서 나온 자료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765kV를 안 하면 대안이 없다는 거는 사실무근이거든요. 이걸 진실이 아니죠. 이걸 거짓입니다. 이 거짓된 기업을 바르냐 그르냐 가리지 않고 정부가 한전의 말 그대로 밀어붙이고 공권력을 삼 천, 병력 삼 천을 투입해서 주민들을 제압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느낌이 어떤가 하면요. 정말로 우리 어느 누구 하나 시골에 살면서 선량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공권력하고 맞닥뜨려졌을 때, 버려졌구나, 우리는 이제 버려졌구나……. 사실이고 진실이고 다 떠나서 거짓이 이기고,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상황. 이 송전탑을 세우려고 삼천 공권력을 투입했을 때 정부한테 버림받은 느낌밖에 안 들어요. 벼랑 끝에 서 있던 주민들을 그대로 밀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걸로. 이제 국민이 아니에요. 버렸어요. 정부는, 이 정권은 우리를 버렸어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돼요. 어느 무엇 하나 보호받지 못하니까요. 나라가 있는 이유가 뭐니까? 기본권 이런 거를 보장하기 위해

서 나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외세에 침입당한 것도 아니고, 아무 권리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다 내놓으세요. 힘의 논리밖에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정의는 애저녁에 사라진 거 같아요.

※ 10.19. 송OO 님 연행 당시 상황에 대해 10.20. 추가 인터뷰 진행.

10.19. 바드리 마을 입구에서 송OO 님이 연행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밖 대추밭 안에 설치된 농성장(비닐천막)에서 도로 쪽으로 난 농성장 출입구를 막고 있었다. 주민들이 너무 가깝게 막지 말라고 항의하던 중, 차 한 대가 주민들 가까이로 왔고 송OO 님은 그 자리에서 체포, 연행되었다. 당시 경찰 무전기에서 차량 번호를 정확히 언급하면서 주민 앞으로 와서 멈추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어, 기획체포의 의혹이 제기되었던 연행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송전탑반대대책위의 21일자 보도자료 참고.

한 일곱 시경부터 그랬을까요? 의경들이 길 쪽에서 조금 더 밑으로(농성장 진입로 방향으로) 밀착해서 서가 있었어요. 자기들 서 있는 자리 끝난 데서부터, 저 교통 제한하는 표지를 씌워놨어요. 노인 분들이 (농성장)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좀 뒤로 물러서라 물러서라 해도 안 물러서고. 저기 책임자가 (의경) 애들한테 “단 일 센티도 움직이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줄을 좀 없애라, 너무 답답하다, 여기까지 막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좀 없애라” 그러니까 들은 척도 안하더라고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농성장) 안에 있는 비닐 천막을 걷겠다고. (비닐 천막은) 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추밭 밑에 열기설기 해놨잖아요. 그걸 걷겠다 하고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화가 나게 이야기길 하드라구요.

우리가, 당신들이 앞으로 안 나가면, 이 줄 안 없애면 당신들 앞에 앉겠다 해가지고 의경들 바로 발 앞에 앉았어요. 그 앞에 OO도 앉고 나도 앉고 또 다른 데서 온 분도 한 분 앉고요. 요새는 (경찰이) 하는 게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통행 방해 안 되게 앉았습니다. 얼마든지 차가 지나가게끔. 그렇게 통행 방해도 안 되는 상태인데도 세 사람을 다 끌어내서, 여경들이 와가지고 사지를 들고 끌어냈죠. 한 명 당 보통 여섯 일곱 이레 붙으니까요. 여기 보이는 이 자갈밭(오토캠핑장)으로 끌어냈고,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갔죠. 우리는 이 줄 없앨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시 그 자리에 앉았죠. 두 번째 또 끌어냈고,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이 자갈밭으로 안 끌어내고, 저쪽 길(큰길) 가까운 데까지 끌려나갔어요.

끌려나가는데 뭐 연행해라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우리는 통행 방해 한 적이 없으니까, 다 데리고 가봐, 하면서 이랬죠. 그 중에 (경찰이) OO를 가리키면서 “뭐 대조해봐라” 그래쫘드만 OO를 연행하겠대요. 그래서 무슨 죄냐 무슨 법 위반이냐고 그랬더니 집시법 위반이라네요. 우리는 집시법 위반을 한 적이 없거든요. 구호를 외친 적도 없고, 노래 한 마디 부른 적도 없고요. 그냥 그 앞에 앉아 있었을 따름이지. 우리는 끌려나가면 의경들이 발을 뺨 둘러싸고 한겹 싸고 가에 또 겹 싸고 꼼짝도 못하게 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OO를 데리고 연행을 한 거죠. 참 가혹하다 싶을 만큼 그런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앉았을 때 이 사람들(경찰)이 어떤 짓을 하나면요. 들어오는 차를 하나 스톱을 시켜서, 사람이 (차 다니는) 길에서 이만큼이나 들어와 있는데(길 가쪽으로 물러 있는데), 확성기를 대고 이 차를 이리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이 사진이 확성기로 이리로 유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리가 이만큼이나 있었어. 자리가 이래 여유가 있는데, 우리가 절대 통행 방해 안하기로 하고 앉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OO 아니거든요. (16일에) 여기서 트랙터 사건 조작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찍은 거예요. 이 사람 또 조작하는구나 싶어서.

또 끌고 갈 때도, 이때까진 아이들(의경들)이 그래도 안 다치게끔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별 무리 없이 끌고 가는, 우리가 힘으로 완전 제압은 당했지만 그렇게 끌고 갔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어제는 완전히 이 팔목을 확 꺾어가지고 가드라고요. 굉장히 아프게요. 여경이요. 그래서 “너 왜 내 팔목 꺾느냐?” 하고 항의를 했거든요. 이름 뭐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경이 “팔목 꺾을 수 있다.” 그러대요. 그래서 왜 꺾느냐 했더니, 할퀴 까봐 꺾는다 하드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퀴는 거 봤느냐, 그래도 내가 너희들한테 들려나갈 때 너희가 여자라서 몸부림 한 번이라도 덜 쳤다, 너그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랬다, 그런데 어데 팔목을 꺾어?” 하면서 사진 좀 찍자 하나까는 얼굴을 피하고. 여수마을에서는 할머니들 꼬집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때까지 안 당해봤거든요. 근데 어제 팔목을 살짝 꺾는 것도 아니고 획 꺾는 거라요. 소문만 들었더라면은 나쁜 애들이 있구나 그랬죠.

여기 레미콘이 오고 임박했으니까, 그 전에 기를 꺾겠다는 걸 느끼죠. 한 사람 구속당했죠, 두 사람 연행 당했죠. 하나도 해당 안 되는 불법으로 사건을 만들어가면서, 아침 첫 새벽에 미디어팀이 미처 오기 전에 이런 짓을 해대거든요. 사람 인원 수가 적을 때.

4. 강OO (56, 고정마을)

109번 공사 현장은 밀양에 세워지는 송전탑 부지 중에서도 높고 가파른 곳으로 알려져 있다. 차로 접근이 불가능해 1시간 반~2시간 가량 등산을 해야 올라갈 수 있는 현장이다. 공사가 재개된 10월 1일, 상동면 고정, 고답, 도곡 마을 주민이 공사 현장으로 가려고 했으나 저지당했고, 10월 2일에는 강OO 님(63세)이 허리를 다쳤다. 10월 4일까지 일부 주민이 현장 근처에 있었으나, 배터리가 없어 연락도 잘 되지 않았다. 수녀님들이 음식을 전해드리려는 것도 경찰이 막았다. 결국 주민들은 10월 4일 마을로 내려왔다. 1일부터 4일까지 경찰은 현장 근처, 산 중턱 묘 근처, 산아래 길 입구로 차례로 내려오며 길을 막았다. 아래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의 상황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다.

첫날(10.1)에는, 오전에 막 감을 따는데 갑자기 공사하고 있다고 소식이 왔어. 진짜 모든 거 중단하고 갔잖아. 산꼭대기 109번 자리, 거기 올라갔어. 마 진짜 경찰 미리 준비를 다 했드만. 그때는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그냥 오늘은 내려가자 해서 일단 하산을 했어요. 할머니들이, 올라오니까 벌써 가자고 그러냐고. 우리도 한 시간 이십 분 정도 가는 거리, 할머니들은 두 시간씩, 진짜 다리 아픈 사람들은 세 시간 걸어서 올라가는 거리니까.

그 다음날(10.2)에 우리가 새벽에 갔잖아. 뚫고 가지를 못하니까 새벽 세 시 반쯤 돼서 올라가는데 것도 정보가 들어갔나 봐요. 딱 길이 차단이 다 돼있어. 그래 우리가 산길을, 진짜 밤이니까 그 길로 갔지, 낮에 같으면 못 갔지 싶어. 가시닝쿨이 막, 그 Ning쿨 뚫고 전쟁을 치루면서 갔거든요.

가다가 몸싸움이 벌어지는데 경찰이 가방을 딱 잡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놔라, 이것 좀 놔라” 했거든. 안 놔주는 거예요. 힘껏 땡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런 나뭇가지를 손에 잡힐 만한 거를 딱 잡고 내 몸을 땡겨가 있는데 그거를 뒤에서 탁 놔버리는 거예요. 놔면 어떻게 돼. 거서 내가 구르지. 그 밤에, 거서 내가 굴렀다니까. 그래 내가 “사람 죽으라고 그러냐”고 막 그래했어. 그래도 거기는 잔나무가 많아서 내가 한 바퀴, 두 바퀴 딱 구르니까 나무에 걸려가 서더라고. 이 비탈길에서 이 밤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 죽여도 모르겠

네 그래 하면서 밀고 뺑기고 하면서 갔어요. 올라가면서 미끄러지고, 그날 산에 올라갔다 오니까 온몸이 멍투성이더라고. (바지를 걷어 종아리에 여전히 남은 멍 자국을 보여주며) 이런 멍들이 온 몸에 들었지. 이렇게 온 천지에다 멍이.

그날(10.2)은 작업장 앞에까지 갔는데, 세 시간도 더 걸렸어요. 가니까 이제 날이 밝아질라 하더라. 거기서 싸우고 밀고 들어가자고 하는데 사람이 넘어져가고 깔리고 이랬다고. 내가 딱 보니까 앞에서는 방패 가꼬 밀고 우리가 뒤에서 밀고 하니까 앞에 사람이 넘어지는 거야. 순간적으로 앞에 넘어지면, 뒤에서 또 밀면 그 사람 많이 다치잖아. 경찰이 맨 미는 거야. 내가 방패를 잡고 “이걸 제발 빼라. 지금 사람이 쓰러졌다. 저 사람 죽일라고 이러느냐.” 이러니까 경찰은 나도 드갈 꺼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게 아니라 좀 비켜라, 저 넘어진 사람 안 보이나, 좀 일반치자” 이러니까, 그때서야 일으켜 세웠는데 그 사람이 처억 들려 나오는데 추욱 늘어진 거야. 그날 비도 오고 땅이 축축했어요. 깔만한 것도 없었어. 대충 사람을 놓힌 거야.

그래 한전에 의사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할머니 눈을 이리 뒤집어보지만 “의식이 있어 괜찮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니가 의사냐? 의식이 있어 괜찮다, 이게 말이라고 하냐고, 그럼 여서 사람이 죽으라는 거냐고 뭐꼬?” 욕을 진탕 했어요. 많이 안 다쳤나, 이게 아니고, 의식이 있어 괜찮다는, 이기 무슨 말이냐고. 그때 119를 불렀어. 안개가 많이 끼가지고 헬기가 안 되니까 대원들이 올라와서 하는데, 저거 올라오는 시간이 짧은 사람이라도 50분 걸리니까. 그 할머니가 병원에 가니까 갈비뼈 두 개가 금이 갔다 안카나. 두 시간 넘게 거기 누워있다가 119가 올라온 거야.

그리고 그날 작업현장 근처까지 가면 들려 나오는 거야. 아까 저 언니는 들어내려 하는데 안 들리나가겠다고 나무를 안고 굴렀다고 하더라고. 나무를 이래 딱 쥐고 있으면, 나무가 길잖아, 나무를 톱으로 자꾸자꾸 자르더라, 그것도 전기톱을 가져와서, 사람이 안고 있는데, 나무 양쪽을 잘라가꼬, 거 뭐꼬 담요, 저런 담요 같은 데 말려가지고 들려나왔어. 들리나올 때 그냥 놓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하면서 탁 놔뿌더라. 허리 수술한 사람들 시골에 진짜 많아. 그런 사람들 강제로 탁 놔뿌면 거 어떡해. 그 허리 다 다시 다친다니까. 그런 걸 몰라 경찰들은. 살 갖다놔도 된다고. 그냥 끌어만 놔도 되고. 근데 하나 둘 셋 하고 탁 놔뿌더라. 내 이걸 안 당했음 모르는데.

그날(10.2) 저녁에 할머니들이 안 내려가신대. 새벽에 올라오면서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주무시려고 하더라고. 내일도 저놈들이 못 올라오게 거기서 막으면 우리 못 올라온다 카면서 거기서 잔다는 거야. “안됩니다. 여기서 자면은 오늘은 아무 준비가 안돼서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가라 우리는 못 가겠다.” 할머니들이 이러는 거야. 덮을 것도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도 같이 있을게요.” 이라고 젊은 사람 몇 명이 같이 있었어. 있는데, 밑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 밥을 먹여야 하니까 올라온다카더라고. 할머니들이 혈압약, 심장약 이런 약을 드시니까, 전화해서, 우리 집 가서는 무슨 약 가오고, 툭툭한 잠바 하나 가온나, 시켰어.

올라오는데 거 항상 우리 막는 묘 있는 데서 막더라네. “왜 못 가냐. 이 밥이 다 저 위에 있는 사람들 밥이다.” 이라니까, “한 끼 굶어가 안 죽는다” 카더라네. 밑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 한 끼 굶어서는 안 죽는다 카더라. 물론, 한 끼 굶으면 안 죽어, 안 죽기는……. 약은 경찰이 우리보고 내려와서 받아가라 카더라네. 거 말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거가 어딘데 할머니들이 거 내려가서 거 받아가. 젊은 아저씨들이 우리가 가야 하

겠다고 옆으로 빠지다가 몇 시간을 끌으니까 올려 보내줬어. 두 시간 넘겨 왔더라고. 까는 거 몇 개하고, 위에 비닐 종이 덮으라고, 못 자리 할 때 위에 덮는 하얀 천 같은 거 덮고 자라고. 이불 같은 거는 일체 안 올려 주니까. 그날 추웠는데. 우리 올라가면 가방조사 다해야 돼. 다 가방 열어가지고 봐. 가방 안에 뭐 들었나 싶어가지고. 거부하면 못 올라가지. 그래서 할머니들이 전부 가방 다 열어주고 보여주고 이랬어. 왜 검사하느냐고 하니까 위에서 지시가 있었다고.

그 다음에는 아예 그 근처(현장 근처)도 못 가게 밑에서 막아뺀 거야. 거 밑에 묘가 이래 2층 있는데 완전 내리막길이야. 거 묘에서 막는 거야. 거기서 우리가 오르막길이니 못 미는데, 진짜 이래 잡아 뺑겨뺑면 저들도 구르고 우리도 굴러. 완전 내리막길이니까. 거기에서 막 몸싸움을 하면서 따지고 이럴 때 우리 동네 아지매가 여경 다리를 잡았는가봐. 여경이 그 아지매보고 내리막길에서 잡았다고 욕을 했나보더라고. 그 순간에는 넘어갔는데 싸움이 진정이 돼서 돌아서 한참을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났나보지. 나중에 막 퍼붓더라고. 그래도 경찰인데, 하여튼 좀 심한 말을 했는가봐. 그래 좀 잡으면 어쩌서 그런 말을 하냐는 식으로, 막 그래 화가 났던가 봐. 그 아지매가 혈압이 툭 떨어져 가서 쓰러져뺏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고. 이래 보면은 진짜 못되게 하는 애들은 진짜 못 되게 해요.

지금(10.4~)은 묘 있는 데서 한참 내려와서 길 입구에서 막아. 묘 주인이 오면 그거 말을 한다니까. 한전에서 손을 보든 봐줘야 돼. 너무 훼손이 많이 돼가 있다니까. 거기서 경찰이 진을 치니까 거기서 밀고 뺑기고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끈 가지고 묘에 못 들어가게끔 가로막기라고 했는데도. 그거는 가족들이 보면, 그건 진짜 아니야. 거기서 밀고 뺑기고 한다는 거는. 차라리 조금 올라가면은 평평한 데 있는데 거기를 막지 왜 여기를 막느냐 하니까, 저그도 거기를 막으라 하니까 막는다 하는 거야. 이거는 아니다. 지금은 밑에서 막아.

그리고 우리 새벽에 가서 잔 날(10.3)도 있잖아요. 공사장에 일하러 들어오는 사람 우리가 막았거든. “저 사람 일로 못 들러보내주겠다. 개입하지 마라.” 하니까 안 하겠다. 한전하고 우리 사이니까 저거는 개입을 안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막았어. 우리가 딱 막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경찰 한 중대라 해야 되나 방패를 들고 쪽 내려가는거라.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은 어디 가지?”, 속으로는 다른 쪽으로 오는 사람들 막으러 가는갑다 이리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한전 사람들 데꼬 올라오는기라.

우리는 경찰이 아니라 한전 경비원이라카거든. 우리가 인자 막았는데, 경찰이 그 방패 가꼬 우리를 미는데……. 진짜 그때는 우리가 힘이 없는 게 너무 서럽더라고. 진짜 그때 눈물 나더라. 한 할머니는 경찰 앞에서 막 울었다니까. 펄쩍펄쩍, 왜 저놈들은 넣어주고 우리는……. 그때는 진짜 뭐라해야 되노, 아, 진짜 저게 우리나라 경찰인가 싶더라고. 우리 주민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한전 사람들 데꼬 올라올 그때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 하면은, 우리는 국민으로 대접을 못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그때는 가슴이 아퍼. 그래가 마 할머니 한 사람은 막 우는데, 왜 저는 넣어주고 우린 안 넣어주냐고 막 우는데, 우리는 힘이 약하니까. 똘을 뺏긴다는 느낌 있잖아요. 막 울고불고 하는데 진정을 시켰지만 얼마나 억울하면 그라겠노 싶은 마음이 탁 들더라고. 정말 그때 우리가 비참하고, 정말 비참해.

들어가드만 포크레인 소리가 딱 나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제정신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마 경찰을 밀어붙이면서 비키라, 그래가 또 하면은, “할머니, 이제 그만, 그만~” 이러는 거야, 우리 보고. 우리가 뭐 장난치러 온 거도 아닌데, 그만했으면 뺏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라.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데 저거는 무슨 장

난 비슷하게, 이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주민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면서 경찰과 부딪치는 동안 스스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곧잘 하셨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한 자신을 보는 것이 힘들고, 힘이 없어서 넘어설 수 없는 벽에 부딪치는 것이 비참하다는 강OO 님의 말씀은 다른 모든 주민들의 말이기도 할 것이다.

사람 많이 변해버렸어. 나도 입이 부끄러워가 욕을 못했거든. 처음에 결혼을 해서 신랑이 내보고 욕했다고 내가 시누한테 가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시누가 무슨 욕했냐고 하니까 나는 그 말 못한다고 나중에 오면 물어보라고 하니까 우리 형님은 엄청 심한 욕을 했다고 생각한기라. 신랑이 배 타는 사람인데, 뱃사람들은 입이 거칠잖아. 신랑이 왔어. “뭐라 했길래 도대체 자가 울고 난리가 났노?” “아, 뭐라 했어요? 시발놈의 새끼라고 했지.” 우리 형님이 대뜸 나한테 “그게 욕이까?” 이러는 거야. 나는 그 자체가 욕인 거야. 지금은 여기 탱기면서, 처음엔 미안해서 욕이 안 나오는데, 말이 탁 튀어나오는기 그 말부터 먼저 나오니까 나도 순간 놀랬다니까. 한전 노란 조끼 입은 아들이 이래 쪽 서가지고 우리 움직일 때 전경 보고 어이 어이 어이 이리 시키는 거라. 딱 보니까 바로, 야 이 새끼야, 나오드라고. 너가 내려와서 해라, 와 야를 시키노. 이런 말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억수로…….

여기 오기 전에 부산 살면서는 마트 서비스업 쪽에 근무를 하니까 부드럽잖아. 지금은 여기 와서 역세졌다 해야 되나. 신랑한테도 뭐 좀만 했다고 하면 성질부터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조그만 한 말에도 탁 쏘는 거예요. 안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도 사람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노래도 있잖아. 한전 때문에 내가내가 못살겠다.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다 사람 인권에 문제가 생긴다 아이가. 여기 선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경들이 예민하드라고. 마음을 억수로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뻑뻑해졌어. 우리 욕을 너무 많이 배웠다 막 그래하거든.

사람이 자꾸자꾸 쌓이고 쌓이니까. (명치를 가리키면서) 여기가 답답하다고 모든 사람이 그래요. 5월에는 내 올라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때는 내가 바로 밑에 길로 가면 가파르면서도 조금 일찍 가니까 그리 갔어. 요만큼 가니까 포크레인 소리가 막 나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 심장이 팔딱팔딱 뛰는데, 빨리 가가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 가야 되는데 걸음이 안 가지는 거라, 숨을 진짜 막 진짜 가슴이 터질 뻔해야 된다 하나, 빨리 못가지지 마음만 급해가, 그렇게 올라가가고 현장 앞에 떡 가니까 땀이 물이 줄줄 흐르는 게 안 멈춰져요. 땀이 아니고 물이 줄줄 빠지는 거 있잖아. 그러면서 내가 노오래지면서 딱 쓰러지더라는 거야. 땀이 진정이 안 되는 기라. 물이 줄줄줄. 옆에서 막 햇빛을 좀 가려주고 한참을 누워있으니까 약간 진정이 되더라고. 그때는 전경들도 많이 오진 않았어.

경찰들하고 이야기 하면은 우리보고, “할머니, 그 109번 되게 높잖아. 여기 철탑 서면 안되요?” 하고 물어보는 경찰이 있어. “서면 된다.” 내가 그래. “여기 같은 먼 거리, 마을하고도 많이 떨어졌어, 이 정도의 거리 같으면 우리가 말을 안 한다. 이기 지금 109번이 우리 상동면의 첫 번째 탑이다. 이기 마을로 내려온다. 감 발복판에도 서고 그래서 우리가 막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앉아가꼬 산봉우리 보인다 아이가. “우리집 앞에 설 철탑이 저 봉우리 같은 저기에 선다 딱 저 봉우리에. 그랬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노?” 이러니까 “정말이예요?” 이란다. “그러면 우리도 막죠. 마을로 내려와요? 저거는 산으로 가는 거 아니예요?” 저그도 그래 해.

“산으로 가야 되는데 우째 된 판인가 전부 다 마을로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다.” 저그도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데 저그는 위에 명을 받은 사람이라 올리보내면 저그가 혼난대. 그래서 못 보낸다고 이해를 해달라고.

제일 힘든 거는 우리 감을 빨리 못 따가지고. 감이 크면서 빨리빨리 따야 빨개지잖아. 밑에 꼭지 쪽에 크게 꼭지가 벌어져가지고, 제때 못 따가지고 엄청 다 버렸어. 우리 감을 천오백 박스 따내거든. 감 꼭지 밑에 벌어지면 상품이 안 돼. 우리 올케한테 몇 개 보내줬더니 이 좋은 감을 왜 보내줬냐고. 밑에가 벌어져가지고 이거를 못 쓴다고 했지. 그런 감을 노란 컨테이너 박스 그거 열 박스를 버렸다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돈이다. 그걸 해가지고 먹고살고 이러는 긴데. 못 따가지고 감나무에서 홍시가 돼가지고 땅바닥에, 바람 불면 철퍼덕 철퍼덕 떨어지고, 감이 그러고 있다니까. 그게 정말 힘들어. 하필이면 왜 이때 일을 하냐 이거야. 지금 여기가 제일 바쁜 철이잖아. 그럴 때하면 우리가 무너져가지고 저그가 잘 할 줄 아는 모양이야. 그게 제일 힘들어. 일을 제대로 못해내니까.

그라고 산에 가면서도 맨날 경찰하고 부딪치기. 우리 맘대로 할 수 없는 경찰이잖아. 뻑 하면 잡아간다고 해 싸치. 뻑 하면 무조건 잡아간대. 체포해가라 그러면 시골 할매들 벌벌 떨 줄 아는 모양이야. 경찰하고 부딪치고 너무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못 밀어붙이는 거 그게 제일 힘들어. 그라고 우리는 경찰들 밀어가지고 넘어지가 다칠까 그거 걸려. 저그도 진짜 할머니들은 손자 같은 아들이잖아. 우리는 경찰이 한전 직원을 에워싸가지고 들어간 그때가, 그때는 뭐라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참하니까. 그때 우리가 제일 비참해가지고. 아 힘 있는 사람은 저렇구나, 우리는 너무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힘 없는 사람은 완전 짓밟히는. 그래서 아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뭘 해가지고 힘이 있겠노. 단결해가고 힘 되는 그거밖에 없다. 어르신들 다 모이가 단결 거기다. 어르신들이 난 진짜 고맙다. 대단하다. 할머니들이 더 잘해 진짜. 우리가 쪼개 흔들리면 탁 다잡는다니까.

<경찰에게 한 마디>

“경찰청장님, 잘 알아보시고 야들 고생시키지 마시고. 야들은 올 필요가 없습니다. 말 들으니까 재정도 별로 없다카더라고. 그거 낭비하면서 올 필요가 없어. 그거 바닥나면 한전에서 달라고 할 겁니까. 우리 세금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재정도 다 쓰고 없다고 하더라고.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야들 보내지 마세요.”

5. 신OO (50, 여수마을)

“체포하겠다! 연행해! 채증해!”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말들이예요. 주민들 움직임 조금이라도 있으면 “채증해”, 또 누구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채증해”, “경찰 몸에 손을 대거나 이러면 체포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런 건 보통 나오는 얘기에요. 그냥 입에 달고 나오는 얘기. 우리는 잡아가라고 하죠. 주민들은 이젠, 어차피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잡아가지도 않아요. 말만 그렇게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죠. 비참하죠. 내 살려고 왔는데 왜 저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하나. 전에는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 이해를 못했거든요. 살아야 하는데 저런 극단적인 생각을 했나 했는데 저희가 그 입장이 되니까 ‘아 이래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분들이 왜 목숨을 끊으셨는지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요새는 그런 생각들이 자주 들어요.

126번 현장은 부북면과 상동면이 맞닿아 있는 곳으로 현장 근처까지 임도가 나 있는 곳이다. 10월 1일부터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들이 현장에 가려고 시도했으나 경찰이 길을 내주지 않아 주민들이 고립된 상황에서 노숙을 시작했다. 10월 1일에는 김** 님(57)이 강제로 구급차로 끌려나왔고, 2일에는 이**(73), 박**(80) 두 분이 부상당했으며, 경찰이 천막을 빼앗은 후 돌려주지 않아 추위에 계속 노출되었다. 주민들의 음식물 반입이 제한 당해 경찰의 검사 후 경찰 차량을 통해서만 반입이 되었다. 1일부터 신OO 님을 포함해 주민 3명이 단식을 했고, 그 중 김** 님은 3일에 밀양병원으로 이송, 신OO 님과 다른 한 분은 현장에서 수액을 맞았다. 아래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의 상황에 대한 증언이다.

첫날(10.1)에는 길이 막혀서 못 갔어요. 저는 경찰 눈을 피해서 산길로 해서 126번 천막 있는 곳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저희가 몇 명 없을 때, 저희 일곱 명 있는 데를 경찰들이 에워싸고 동네 언니 한 분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일곱 명이 제가 있던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를 한 사람씩 스무 명이나 되는 경찰들이 에워싼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그 한 명 있는 언니를 담요에 푹푹 말아서 119에 신고 가더라고. 안 가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을 무슨 짐 꾸러듯이 싸가지고. 그걸 보고 저 언니를 데리고 가려고 우릴 에워쌌구나 하는 걸 알았던 거죠. 너무 비참하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울부짖는 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 언니는 가서 그냥 혈압만 체크하고 다시 왔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를 또 싸려고 하더라고요. 마침 그때 국회의원들이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제가 “그래, 너네 계속 우리를 싸고 있어라. 지금 국회의원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속 풀더니 하나씩 하나씩 모습을 감췄어요. 기자분이 계시거나 이러면 경찰이 말하는 것부터도 유해져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카메라가 있거나 외부 사람들이 있거나 하면 조금씩 조심을 해요.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에는 그야말로 때깃장 쳐요. 잡아땡기고 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없으면 진짜 이곳에서 우리들끼리 죽어도 모르겠구나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땀땀하고 정당하게 하는 거면 설명하고, 자기들 정복 갖춰 입고 해야 하잖아요. 특히 126번 같은 경우는 오렌지 모자 쓴 사람들이 있었어요. 개네들은 완전히 그런 쪽으로 하는 애들인가 봐요. 숲 속이나 이런 데 있다가 주민들하고 충돌이 생긴다거나 상황이 발생되면 딱 무전으로 “오렌지 원투쓰리” 하면 애네들이 튀어나와요. 개네는 하나같이 다 복면하고 있어요. 오렌지 모자에 마스크 하고. 그러고서는 개네들은 진짜 인정사정 없이 짐짝 치우듯이 치우고 비틀고 그렇게 해요. 주민들한테도 고함 치고 큰소리 쳐요.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옛날에 한진 가서 김진숙 씨 내려오세요 설득할 때, 경찰들이 다들 존댓말 할 때 자기는 거기다가 반말했다고, 그게 무슨 자랑이고 벼슬인 줄 알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말에 충격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지. 그 사람들은 나이들도 있어요. 나이가 아주 어린 사람들이 아니야. 오렌지 모자 쓴 애들이라고, 할머니들이 빨간 모자, 빨간 모자 이랬더니, 4일 날 아침인가는 오렌지 모자 말고 그냥 까만색 모자 같은 거 쓰고 왔더라고. 얼굴은 다 개네들이었어요. 다 복면을 쓰고 있었고.

처음엔 물이나 음식을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내려가면 못 올라오니까 내려갈 수도 없었고. 대책위에서 어른들이 못 먹는다고 첫날(10.1) 저녁에 빵이랑 김밥 필요한 거를 보냈는데 경찰이 안 보내줘서 경찰한테 전해 달라 했어요. 어른들은 경찰이 주는 건지 알고, 너희들이 주는 건 필요 없다고 다 던져버리고. 근데 알고

보니까 대책위에서 보냈다 그래서, 그게 아깝잖아요, 그거 다 모아가지고, 다 찌그러진 거 드셨어요. 계속 주민들 통제하니까 이장님이 계속 산길로 배낭에 먹을 거나 이런 것 신고 왔거든요. 추워서 불을 피웠을 때 (10.3)도 그게 산림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체포하겠다고 주민들을 겁박하고, 계속 불을 피우니까 소화기 가져와서 불을 끄면서, 가스버너에 라면 드시게 하려고 물을 끓이는데 거기까지 소화기를 뿌리는 바람에 먹는 것도 못 먹게 만들어서 어른들이 화가 나서 다 집어던지면서 우리 이거 안 먹는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죠. 의원님들이 왔을 때 통행만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라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도 그것도 약속이 안 지켜졌어요. 우리 이장님이 혼자라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요. 먹을 꺼라든지 필요한 물품을. 그런데 갈 때마다 꼭 밀양에서 나온 정보과 직원이 대동해가, 연락을 취해가, 또 단계 단계 지날 때마다 그런 식으로 확인을 받았어요. 그거는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죠. 자기들 말로는 주민들이 죽니 사니, 휘발유를 가지고 다니니, 그런 걸 검사한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거기(126번 인근 농성장 자리)는 원래 찾길이 있는 길이에요. 중간중간에서 막는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는 와야 되니까 경찰 눈을 피해서 산으로 산으로 자꾸. 길도 잃게 되고. 새벽 두 시 반에 집에서 출발한 우리 주민 세 명이 그날 낮 한 시 돼서 오는 상황도 벌어진단 말이에요. 경찰들이 막아도 주민들은 오거든요. 산 속에서 밤에 불도 못 키고 오는 거예요. 불빛을 보면 경찰들이 와서 막을까 싶어 가지고, 불도 없는 상황에서 헤매다가 온데 상처, 길 있는 것도 아닌 데로 헤매고 오니까 다 굶히고 그렇게 오시는 거죠.

단식은, 10월 1일 아침부터 안 먹은 거죠.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굳이 단식한다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부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는 사이에 먹을 수도 없었고, 먹히지도 않았고, 그러니 본의 아니게 단식을 하게 된 거죠. 먹기도 싫었고요. 배도 고프 줄도 모르겠고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생각도 들고, 아예 먹어야 되는 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단지 왜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러나 하는 것만 생각되고, 헬기가 나른다거나 한전 직원들이 일하러 왔다갔다 하는 것만 보이니까 다른 거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평소엔 잘 먹어요. 같이 어울려서 일하고, 놀고, 우스운 이야기 있으면 깔깔대고 웃고. 웃고 깔깔대는 거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해요. 안 그러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125번 현장은 상동면에 있는 곳이다. 10월 14일, 2차로 공사 구역이 확대될 때 재개된 공사 현장이다. 힘이 빠지다가도 힘이 날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얼마전부터 125번도 공사 들어갔는데, 그날(10.14)은 완전 산 구석구석을 막은 거예요. 인제 화장실 가는 거를 산에서 불 일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불일 보러 가는 걸 제지를 안했는데 그날은 그것까지 막은 거예요. 우리가 불일 보러 산으로 가면 따라와가지고, 내 불일 본다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을 통해서 125번으로 갈까 싶어서 막은 거지. “내 집 너무 급하다.” 그러면 여기서 보라고 해가지고 우리 동네 주민이 그 애들 방패 서있는데서 봤잖아요. 그거를, 자기들 보는 앞에서 불일 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암만 나이든 사람이라도 그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한전 출퇴근, 교대 시간에 한전을 보호해주려고 온 거예요. 주민 몇 명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경찰 수십명이 막아가지고, 한전 사람들은 그야말로 호위를 받으면서.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고개 숙이고 가는데, 간부

급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고개 뺏뺏이 딱 세우고 개선장군처럼 왔다갔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길이 그거 한 길인 줄 알았어요. 그저께 보니까 그 밑에 길이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하고 굳이 부딪히지 않고 그 길로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은 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로 갈 수 있었던 길인데도 왜 굳이 주민들하고 충돌하고 경찰이 막아 주는 그 과정을 아침저녁으로 겪어가면서 이 길로 통행을 했냐 이거죠. 우리가 볼 때는, 힘이 있다 과시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비참하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경찰들은 움직여서 손발이 돼줬던 거고.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기들이 불필요한 물건 치우듯이 푹푹 말아서 데리고 가고, 그러니 진짜 비참하지. 차라리 한전하고 붙어가지고 치고 박고 싸우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손을 들든지 한전이 못하겠다 하든지 결론이 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경찰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국가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손발을 다 묶어버리니까 자괴감이죠. 내가 이 나라에서 뭘 해야 하고, 내가 굳이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하나. 진짜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 나라, 그냥 이 나라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예요. 그냥 아무 데나 있는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일 뿐이에요.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을 때 그래도 힘이 나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도와줘 오는 걸 보며 ‘아 그래도 이것이 희망이구나.’ 그런 걸 봐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나라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외부세력이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야말로 분노죠. 자기들이 못하는 거를 남이 했다고 해서 비난할 꺼는 없거든요. 내가 못하는 거 대신 해주는 거라면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몰아가는 거는 참을 수 없는 거죠.

외부세력들이 할머니를 세뇌해서 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 분들이 우리한테 세뇌당해서 온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하기 때문에 도와주러 오시는 거니까 우리한테 세뇌당해서 오신 거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할머니들이 세뇌당해서,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 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하다못해 기자들한테 까지도 그런다잖아요. 우리가 무슨 상황이 되면 아는 기자 분들한테 전화를 하니 기자한테 그런대요. “왜 주민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기자를 찾냐. 당신이 주민들을 조종하는 것 아니냐.” 거기 대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대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너무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발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주민들 내려가게 해달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경찰이 이만큼 많은 숫자가 여기 와야 하는지 자체가 이해가 안 되요. 항의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여경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어쨌든 주민들에게 가해를 했잖아요. 몸에 상처를 내거나 잡고 그러면 어른들 얼마든지 큰소리로 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끄럽다고 말을 해야. 할머니들 그야말로 하소연하는 거, 푸념하는 거잖아요. 당하거나 분을 삭히기 위해서. 그럼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126번 현장에서) 거기다 대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려고 문을 딱 닫고 차에 들어가고 이래요. 인간이기를 포기했다고 봐야 하는 거지. 자기 부모 같고 할머니 같고 그러면 그렇게 말을 안 하겠죠. 우리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거지. 자기네들이 상대해야 하는 일종의 게임 상대, 이렇게밖에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할머니들 보면 진짜 나라에서 하라는 거대로 다 하고 사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한테 배신을 당하는 거죠. 어른들이 거기에 분개를 하시는 거죠.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내라는 거 꼬박꼬박, 많은 적들 살아오면서 내라는 거 다 내고, 그렇다고 해서 내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고, 내 벌어서 조금 벌면

버는 대로 그렇게 사셨다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나라가 보탬은 안 주더라도 내꺼 내가 지키고 살겠다는데 그걸 강제로 빼앗아가고, 그걸 항의한다고 해서 칠팔십 먹은 할머니들을 빨갱이니 좌파니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여태 이렇게 살았는가 이런 배신감들이 크신 것 같아요.

<경찰에게 한 마디>

“경찰들도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분들이니까,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그건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기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6. 이OO (48, 동화전마을)

10월 15일 바드리마을 입구에서는 경찰이 길가에 댄 차를 두고 시비를 걸었다. 평소에 늘 대던 곳인데 주민들에게 현행범 체포 운운까지 하며 협박하더니 오후 4시경 차 한 대를 견인해갔다. 이OO님은 당시 차 뒤편에서 있다가 여경들에게 끌려나오는 과정에서 웃웃이 거의 벗겨지는 사건을 겪게 되었다. 인터뷰는 17일에 진행되었고, 인터뷰 직전까지도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이런저런 말을 건네던 이OO님은 인터뷰를 시작하고 당일 상황에 대해 질문하자 표정이 굳어지고 말을 피했다.

주민들을 가만 놔두노면 아무 충돌 없을 건데, 자극을 유도하고 괜히 시비 붙게 만들고 이래하니까 우리도 그게 괴롭고. 그날(10.15)도 도롯가에 차 주차돼 있는 거 불법은 아니거든요. 저그는 불법 불법 하지만 동네 사람들 다 거 대나놓고 볼 일 보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불법도 아닌 장소에 견인해간다 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죠. 아무 이유도 없이 그걸 견인한다카니까. 내가 차 뒤에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끌어내!” 그런 말도 오고가고 여경들이 막 우루루루 한꺼번에 몰려오고 여경들이 붙잡고 가면서 실랑이 있고 이래하니까 충돌이 있었죠.

여경들이 달려들고 하니까, 나는 침에 서가있었는데, 여경들이 내 몸을 잡아뿌니까 자연히 사람이 눕게 되더라고요. 끌려가는 비참한 꼴을 보이기 싫어서 누부니까 한 팔에 두서이서 달라붙어 목하고 이래 다리 들어부니까 내가 꿈쩍할 수 없으니까, 우에하다본께니 저 옷까지 벗겨질 지경까지 됐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이 벌어지니까 나도 상황이 우에 돌아갔는지 잘 모르겠고, 머리로 희미하니 그런데. 난 몸 안 끌려갈라꼬 하니까, 우에 벗겨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옷이 벗겨져있더라고. 완전히 위에 티가 다 벗겨져 있더라고, 잠바만 걸쳐져 있는 상태고 티가 다 벗겨져 있더라고.

끌어낼 때 설명도 없고 무조건 비키라 카는 말만 했지. 왜 비켜야 하는지 이유는 설명 안하고 무조건 비키라, 내가 이유를 설명하라 카니까 그 이유를 못 대더라고. 가만 말 안하고 가만 있더라고. 내가 너그들한테 비켜줘야 하는 정당한 사유를 대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 명이 그러 하니까 한쪽에 뭐 팔에 두서이씩 잡아 있으니까 내가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들린 상태에서 내가 옷이 벗겨져있으니까, 저그는 뭐 우에서 소리도 나고 하니까 덮는 시늉도 하더라고. 아줌마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뭐 그런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마.

끌리나가고도 한참 주저앉아 있었지. 내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도 모르겠고 우에 돌아갔는가 그것도 모르

겠고. 황당스러운 일만 벌어졌으니까 사람이 참 비참하다는 생각도 들고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도 들고, 온갖 생각이 다 들데. 다른 사람이 뭐라 뭐라 카는데도 그건 안 들리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그 생각만 자꾸 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내 재산 가지고 내 주장도 못하면서 비참하게 끌려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10월 1일 공사 재개 이후로 지금까지 경찰에게 당한 억울한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물었다.

우리 첫날(10.1) 올라갈라카고, 경찰은 못 올라가게 저지를 할 꺼 아입니까. 그 순간 경찰들이 하는 말이 ‘끌어내!’ 카는 거, 그건 인격적 모욕이거든에. 끌어내! 할머니들을 보고 끌어내 카는 거는 인격적 모욕이고, 우리처럼 촌에서 살아 할머니들은 칠십 팔십 평생 살면서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었을 켜네. 끌어내! 밀쳐버려! 젊은 아한테 이런 말 듣는 거는, 이때가 살면서 들어보지도 않은 말이거든요. 국어사전에나 있는,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지. 평소에 상대방하고 있을 때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올라가는 상태에서도 계속 경찰들한테 저지 당하면서 우리는 움막까지 가려고 사투를 벌여가면서, 어떤 할머니는 산으로 올라가시고 우리는 도로에서 해 가면서 움막 중간까지 갔거든. 우에우에 하면서 올라가까 경찰한테 저지당하니까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데, 여성이니까 소변을 해결해야 되니까, 소변 보러 간다고 숲으로 가면은 여성들이 따라오는 게 아이고, 남자 전경들이 대여섯 명씩 우루루루 와요. 할머니 한 분이 소변 보러 가는데, 우리 소변 보러 갑니다 카면서 가는데도. 보면, 알잖아요? 한꺼번에 일어나 가는 게 아니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가니까, 그러면 대여섯 명이 우루루루 와서. 뭐 죄수 취급하듯이, 우리가 죽을 죄인처럼 그렇게 인격적 모욕을 당하는 게 여성으로서 수치스럽고. 칠십 팔십 먹은 노인도 여성은 여성이거든요. 할머니도 여성은 여성이거든. 할머니들이 말하거든. 수치스럽다고. 아무리 젊은 애들이지만 그래 하는 거 좀 그렇다 하면서.

그리고 또, 움막에 가면 이슬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까지만 갈 수 있도록 사정사정했거든요. 경찰이 안 들어주는 기라. 그때 김제남 의원님이 오셔가고 말을 해가고 우에 해가고 움막까지 가기는 했는데 가도 오래된 움막이다 보니까 배설물이라든지 쓰레기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잠을 청할 수가 없었죠. 노숙하는 것만큼 더 힘들었고. 하. 생각하니 참. 억울하고. 억울해지네.

내 지금 결혼해서 동화전 동네에 26년 살았거든요. 살면서 이렇게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이케 하는 건 없죠. 우리 친구들 보면 저는 울보입니다, 울보. 친구랑 싸워도, 싸우기 싫어서 내가 먼저 우는 스타일인데. 초등학교 친구들 이래 보면 ‘아, 저 울보’라 할 겁니다. 그리 했는데 여기 오니까, 내가 이렇게 대처하다 보니까 사람이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기라. 아 몰라……. 아 나 어떡해……. 그래 내꺼 가꼬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없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 아 참, 말할라캐도 말이 잘 안 나올라칸다.

난 오십 년밖에 안 살았지만 칠팔십 산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전경들 속에 간헐가 살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노숙을 해가면서. 이 평온한, 산세 좋고 물세 좋고, 이런 산천에 와가꼬 내 열심히 일해가꼬, 하나 사고 하나 사면 하나 팔고 하나 팔아가꼬 더 넓은 데 더 좋고 넓은 땅 사서 또 가꾸고 이런 식으로 사는 할머니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기가 막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도 그런데 할머니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평생 일군 땅인데 하루아침에 도둑맞은 것처럼, 그래 안하겠습니까.

휴…….

경찰도. 군복도 보이고 군화도 보이고, 할머니들은 다다닥 발자국 소리 생전 안 듣다가, 그 위압감에. 완전히 사람이 우울증 비슷한, 스트레스. 아래께(10.15)도 전경들과 부딪치면서 허리가 우에 됐는가 아파서 서지도 못하겠고 구부정하니 이래가꼬. 완전히 스트레스 우울증이 마 겹쳐서 사람이 우에 될 것 같아요. 가슴도 답답하고. 내가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받아주면 되는데 안 받아주니까 그것도 답답하고. 그 상황이 자꾸 반복 반복되니까. 저 사람들(경찰)한테 말할 값어치도 못 느끼겠고. 말을 해도, 철답을 떠나서 사람이 말을 하면 그걸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거조차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게 참…….

아침이 오면 진짜 두렵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보내야 하나.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 안 부딪치고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칠십팔십 노인네들 뭘 해드려야 하는데 못해드릴 때,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답답하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답답하고. 해줄 수 없으니까 거기 젤 안타깝죠. 또 사람이 노숙을 하다보니까 몸을 웅크리고 자니까 모든 기능이 아침이 되면 이상한 것 같아요. 보통 때는 저녁에 들어와 아야 아야 누웠다가도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마음으로 일터에 가서 받을 땀는데, 지금은 하루 자도 그게 안 되니까. 탁 일어나면 어지럽기도 하고 몸이 뻣뻣하니까, 몸 기관들이 좀 생활의 리듬이 깨져버리니까 그게 참 어렵지.

‘경찰’, ‘불법’과 같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물었다.

즈그가 하는 건 다 되고 우리가 하는 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나오고, 저그가 쓸데 없는 자극을 하잖아. 할머니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할머니들 비키세요” 카면 저항을 오래 할 수 없잖아요. 굳이 끌어내는 것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칠팔십 넘은 할머니들이 저그들한테 무슨 가해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좋은 말로 하고 “할머니~” 카면 되는데 지휘하는 사람들 말투가 그런가 인간성이 그런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한테 대하는 말투가 다르니까 평소에 안 듣던 말을 어르신들이 지금 다 듣고 있단 말입니다.

일제시대 때 순사 그런 기분이 드니까. 우리는 그 시대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칠십 팔십 이래된 노인들은 일본 순사라카문 잘못을 안하더라도 잡혀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위압감, 그런 게 있죠. 할머니들은 지금 하는 거 보면 (경찰이) 일제 시대보다 더 하고, 6.25 때보다 더하다는 말을 하거든요. 우리들 세대에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말인데, 할머니들은 그 시대를 다 겪어오고 했으니까.

전경이나 경찰이라카문 첫째가 민생치안이잖아요. 우리가 급한 일 있으면 부를 수도 있고, 뭐 경찰서에 가면은 이렇게 해가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 상태가 안 되니까. 지금은 경찰들 보면, 우리를 끌어내는 사람, 우리를 죽이러 오는 사람,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저는 경찰이라고 하면, 나를 잡으러 왔구나, 나를 끌어내겠구나, 이런 생각 탁 듭니다.

불법이라카는 건 도로가에 뭐 신호위반을 하든지, 과속을 하든지 거기 불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오직 길가에 차를 대 놓은 게 불법이라카는 거 처음 들어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경찰들이 더 불법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재네가 하면 불법 아니고 주민들이 하면 불법이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도 끌리나오면서 이유를 대라니까 저들은 말을 못하고. 내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맞는갑다 하면 내가 스스로 나오면 되요. 내가 불법을 안 저지르니까 저항을 하는데. 불법의 뜻이 뭔지 경찰들한테 묻고 싶어요. 저한테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센가. 왜 듣도 못한 말을 할머니들이 들어야 하는지. 왜 불법이란 말을 들

어야 하는지. 이 세상이 진짜 안타깝네요. 날씨가 가문 갈수록 더 추워질 텐데, 할머니들이 건강 챙기셔야 하는데, 그것마저 허락 안하니까 거기 참 걱정입니다.

<경찰에게 한 마디>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대해주시고, 말 한 마디 한 마디 하더라도 따뜻하게. 우에됐든간에 우리는 경찰하고 대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젊은 애들 보면 내 손자 같고 자식 같고 동생 같고 그란 애들인데. 할머니들이 하소연할 데라고는 전경밖에 없으니까 그케 하는 것도 좀 받아주면 좋은데. 지휘관들이 한 마디 한 마디 해도 할머니들이 화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곱게 곱게 순화를 시켜서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말을 좀 가려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밀양에서 경찰이 철수하면 제일 좋죠. 당연히 철수해야 하는 거죠. 경찰 삼천 명 이라카는 게 국가적 손해고, 다른 곳에서 민생치안을 돌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주민들 캐봐야 백 명 안쪽인데 삼천 명이나 동원될 필요가 없는데. 제발 경찰들 물러가면 좋겠습니다.

활동이야기



밀양 2013년 10월 1-2일 행정대집행 첫날의 기록 - 끝나지 않는 ‘하루’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9월의 마지막 밤. 행정대집행이 내일이나 모레이나 설왕설래다. 한전 측의 약속도 있고 여러 정황도 있고 하여 1일은 아닐 거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서울에서 한전 서울본부 앞 집회가 예정되어있다. 을지로역 6번출구를 을지로 6가로 알고 간 나는 해마다 허탕치고 돌아와서 인권활동가 감시단을 기다린다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다.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고 상황은 예측불가니 망설여진다. 그래, 일단 가보자.

10월 1일, 오후 4시쯤 6명의 활동가가 밀양 너른마당에 도착했다. 대책위 간사는 정신이 없어서 말을 나누고 지시를 받기 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우리 집행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두 곳으로 나뉘어 들어가기로 했다. 가는 길에 밀양시청에서 이계삼 선생님을 잠깐 스쳤다. 선생은 끊임없이 통화를 해야 했기에 인사조차 나눌 틈을 찾을 수 없었고, 우리 서로가 탄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 인사를 대신했다. 우릴 태워다준다면 간사님도 농성장에 넣을 물품을 사러가는 게 더 급하게 돼서 우리 택시로 갈아탔다. 목적지는 평촌마을.

마을 입구에 경찰차 7대 정도가 서있다. 평온한 산골 마을에 정말 안 어울리는 물건이 아닐 수 없다. 산으로 들어서면 길목엔 주민들이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앉아계셨다. 바리케이트 위 나무에는 목을 땔 수 있게 줄이 서너개 매 있었다. 교수형 집행을 준비라도 한 듯 동그랗게 매듭진 줄이었다. 섬뜩했다. 공사현장은 산꼭대기에 있다. 여기서 구불구불 산길을 타고 한참을 가야한다. 트럭을 타고 한참을 갔다. 트럭에서 내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면 움막이 있다. 움막 앞에서 한 할머니를 보았다. 두 번 정도 뵈 분이었는데 인사를 하니 내 손등에 반갑다고 뽀뽀를 해주셨다(다음날 그 할머니가 쇠사슬로 몸을 감은 사진이 언론에 나왔다. 팔십대인 분이다). 너무 말라서 팔을 잡으면 마른 장작같이 느껴진다. 아니 성냥개비 같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할머니가 쥔 지팡이가 할머니 팔보다 굵어 보인다.

인터뷰를 하는 분, 밥을 짓는 분, 정신이 없다. 움막 바로 밑에 말로만 들었던 관 자리가 파있었다. 아주 깊게 파있었다. 그대로 뛰어들어 우릴 여기 묻어 달라 하실 것 같다. 그런 상상을 하니 구렁이가 너무 무섭다. 기자들이 그 관 자리를 열심히 찍어댔다. 관 자리를 들여다보는 순간 역한 냄새가 났다. 냄새의 정체는 된장국이였다. 환기가 안되는 움막 안에서 할머니들이 끼니를 들고 계셨다. 관 자리 앞 움막에서의 식사는 처연했다.

‘지금 안 먹어두면 다음 끼니가 언제 될지 모르니 먹어두라’는 할머니의 ‘명령’에 억지로 밥을 먹었다. 만약 을대비해 큰 물통을 채워놓고 그 물로 밥을 지으신 것이다. 주민들에게 따로 질문을 할 필요는 없었다. 그분들은 계속 말씀을 하셨다. 기자들 뒷통수에 대고 허공에 대고 또 그 무엇에 대고 계속 말씀을 하셨다.

“기자분들, 이번에는 좀 똑바로 보도해서 언론의 명예를 회복하세요.”

“당신들, 이 괴로움을 알아? 평생을 같이 살아온 이웃들이 갈라져서 인사도 못해. 길에서 마주쳐도 찬성 쪽 반대 쪽이라 서로 못본척 하며 지나가야 한다고. 그 고통을 알아? 난 그게 제일 괴로워”

“지긋지긋해. 이런 상태론 더 못살아. 이번엔 끝이 났으면 좋겠어. 우리가 죽으면 끝이야. 그게 끝이야.”

“우리 할매들을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

“국책사업이라매? 그럼 가장 돈 안들게 직선으로 굶던지. 왜 경북은 제끼고 지주들 사는데 제끼고 힘센 놈 있는데는 제끼고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들 있는데로만 선로를 그었대”

“보세요. 여기 산이 얼마나 좋아요? 자연이 이렇게 좋은데, 그게 귀중한 줄 모르고 그렇게 망쳐서 어찌려구” 어둑해졌는데 7시 정도밖에 안됐다. 깜깜할 때는 사고 날까봐 안쳐들어올거라고 새벽에 칠거라고 예측들을 하셨다. 그럼 새벽이 올 때까지 이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다. 갑자기 누군가 소리쳤다.

“불 다 꺼봐! 저기서 후레쉬가 비쳤어.” 움막 뒤 산 속을 가리켰다. 정말 후레쉬 불빛이 획 선을 그었다. 세번 정도 산 뒤로 쳐들어온 일이 있다고 했다. 할머니들은 산 속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야, 이 개놈들아. 나와. 나오라구.”

그 소동이 지나고 나자 할머니 몇 분이 비탈길을 올라오고 계셨다. 잠시 집에 다녀오시는 분들이었다. 대부분 평지를 걸어다니기도 힘들 몸인데 지팡이에 의지해 비탈을 오르셨다. 그리고 움막에서 밤을 지새셔야 한다. 할머니 30여분 정도가 다 주무시기에 움막은 좁았다. 60대 중반 쯤 되시는 분들(여기선 아주 젊은 축에 든다)이 밖에서 스티로폼을 깔고 누우셨다.

“멀쩡한 집 놔두고 우리가 이렇게 매일 노숙을 한다.” 누우신 할머니가 한탄하신다. “풀벌레소리에 별보며 자는 것도 관찮재”

“네, 저희도 노숙이 전문이에요. 관찮아요.”

인권운동연대 활동가 아요가 그렇게 대답했다.

“자녀분들이 걱정하시겠네요.” 옆에 계신 분께 물었다. “그렇죠 뭐. 송전탑이 이미 있는 마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자식들이 부모 보러 고향에 안온대요. 전자파 무서워서. 부모들이 자식 보러 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대요. 생이별인 거죠.”(밀양이 고향인 후배에게 이 대화를 얘기해줬더니 자기도 송전탑이 세워지면 아들 데리고 여길 못 올 것 같다며 그 말이 실감난다고 했다.)

산의 밤은 갑자기 추워졌다. 바람의 냉기가 날 세운 칼같다. 게다가 9시밖에 안됐는데 잠이 올 리가 없다. 경사진 비탈길에 스티로폼을 놓았기에 자꾸 몸이 미끄러진다. 미끄러지면 기어오르기를 반복해야 한다. 밤새 등산하는 기분이다. 이슬인지 비인지 헛갈리는 비도 내렸다. 금새 모든 것이 축축해졌다. ‘해가 뜨길 기다려야 하나? 해가 뜨면 쳐들어올텐데? 어느쪽이 더 좋은거지’ 자문하는 밤은 길고 길다.

우리 발밑에 누우신 할머니들은 상황을 공유하는 전화 때문에 자다가도 계속 깨셔야 했다. 그렇게 뜬 눈으로 새운 밤이 가고 새벽 4시가 됐다. 할머니들은 그 시각에 일어나서 만반의 준비를 하셨다. 콩나물국밥을 끓여 식사를 하시고 끈으로 서로의 몸을 묶는 것이었다. ‘지금 안 먹어두면 오늘 하루종일 먹을 가망이 없을 거’란 명령을 이번에는 듣지 않았다. 화장실 가는 것이 배고픔보다 무서웠기 때문이다. 할머니들은 움막안에 요강을 여러개 두고 계셨고, 움막 옆에 만든 변소가 있었다. 그 변소는 너무 얇게 파서 소변이 사방으로 튈 지경이 었다. 산 속이라지만 보는 눈들이 많으니 눈에 안 띄고 볼일 보기가 여의치 않다. 할머니들도 술한 보는 눈 속에서 볼일 보시긴 아주 불편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닥쳐올 일을 기다리며 하염없이 기다린다. 해가 뜨려면 아직 멀었다. 시간은 정말 가지 않는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지긋지긋하다. 피말리는 일이야. 차라리 빨리 닥쳤으면 좋겠다.” 할머니의 말이 맞다.

기다리던 ‘상황’(침탈)이 오든 오지않든 피말리는 건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런 피말림이 벌써 몇 년간 계속돼 온 것이다. “이번엔 끝장을 보고싶다”는 할머니의 말이 뭘 뜻인지 알 것 같다. 일상이 고문이다.

된 일을 벌여지길 기다리던 기자들이 ‘상황’이 오지 않자 하나 둘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문득 죽음을 기다리는 까마귀가 연상된다. 지금의 이 피말림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이거야말로 정말 중대한 ‘상황’이 아닌가? 꼭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노인들이 쓰러져야만 ‘상황’인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건 파국인 것이다. 상황은 너무 오래 지속돼왔고 지금 이순간도 계속되고 있다.

비가 내린다. 누군가 나무를 주워다 불을 지폈다. 빗속에서도 불은 활활 탔다. 하염없이 그 불꽃만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리 있어도 시계는 제자리다. 이제 겨우 6시, 이제 겨우 6시 5분.....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먹고 싸는 것 밖에 없어요. 마냥 그렇게 대기하는 거예요.” 내 지루한 표정을 읽었는지 한 지킴이가 그렇게 말을 한다.

동이 텅다. 다른 곳에서 집행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할머니들이 분하다는 듯 말씀하신다. “이놈들이 우릴 쳤다간 큰일 치를 줄 알고 나중으로 미루는 게야.” “맞아. 약한 곳부터 치는거야.” “조금씩 진을 빼려는 작전이구만. 나쁜 놈들.” “기자들 빠져 나가고 나면 해치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다. 이곳은 그동안 위낙 썩게 싸워서 집행을 하면 큰일을 치를 수 있다는 걸 저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행정대집행 예고 시간은 오전 11시다. 그 시각까지는 이곳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내 생애 가장 긴 오전시간이 가고 있다. 수십개의 나무토막이 숲이 되고 재가 되도록 9시도 되지 않는다. 드디어 11시가 지났다. 다른 곳에서 충돌과 부상 소식이 전해온다. 그곳으로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를 드렸다. “아무것도 못하고 가서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게 최고지.” 할머니들은 그렇게 우리를 보내며 ‘인권감시단’ 조끼를 벗어서 안보이게 넣고 가라 하셨다. “인권단체가 가버린 걸 알면 저것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이유에서였다. “기자들과 인권단체 있으면 저것들이 조심하는데 없으면 함부로 한다.” 아쉽고 아쉬워하신다.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트럭을 운전해주셨다. 비 때문에 산길에는 안개가 자욱하다. 트럭을 기다리는 동안 꼭 토도로에 나오는 버스가 등장할 것 같은 길이라는 생각이 했다. 그렇게 깊고 아름다운 골짜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명랑순정만화가 초특급 공포영화로 둔갑했다. “하루에 몇십번씩 이길을 다니세요” “그렇죠. 수십번씩 다니죠.” “힘드시겠어요.”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농부가 일을 해야 하는데 이려고 있으니 나랏일이 한심한거죠.”

그렇다. 지금은 한창 농사철이요 수확을 해야 할 때다. 감과 밤을 실어날라야 할 농부의 트럭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잠시 침묵하던 그 분이 힘주어 말씀하신다. “핵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본에서 벌어진 것 보고도 사람들이 경각심이 없어요.”

이번에는 고립돼 있다는 상동마을의 어딘가로 갔다. 산골짜기의 마을회관에 갔더니 주민분들은 없고 경찰들이 마을회관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있다. 경찰차가 마을을 꼭 채웠다. 농성장에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내려왔다는 주민 세 분이 한 귀퉁이에 앉아 계시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경찰들만 왔다갔다 한다. 완전히 경찰들의 마을이다. 주민들은 농성장에 새벽 3시에 올라가셨다 한다. 천막도 없는 산비탈이라 했다. 우리가 갈 수있냐고 여쭙봤더니 길도 없는 산이고 비와서 미끄러워 올라갈 수 없다 하셨다. 그때 국가인권위 조끼를 입은사람 둘이 내려왔다.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별일없이 서너시간 대치 중이라 자기들은 탄 곳으로 간다고했다. 아주 심드렁한 말투여서 더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다. 시청 직원이란 자가 따라 다니면서 어디서 왔냐고 꼬치꼬치 물었다. 당신한테 답할 의무가 없다고 했더니 ‘귀빈들이 오셨으니 자기도 정보를 구해야’ 한다. “우리 할매들을 왜 이리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란 말을 반복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해야 할 바를

모르겠는 우리는 돌아나올 수밖에 없었다.

너른마당에 되돌아가서 다음 지시를 받으니 금곡 4공구 앞 농성장에 김밥을 배달하라 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그곳엔 이미 두 번의 김밥배달이 있어서 다들 먹은 후라 했다. 행정대집행의 대표적 농성장이라 기자들도 많고 국회의원도 있고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도 많았다. 역시나 딱히 할 일이 없어 다시 너른마당으로 복귀.

다른 마을에서 돌아온 활동가들과 만나 그때까지의 상황을 공유했다. 긴 회의를 하고 나서도 아직도 오후시간이다.

‘하루가 왜 이리 긴 거야’ 우리는 이 말을 여러번 주고 받았다. 그런데 이 ‘하루’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확인해보니 행정대집행 문서에는 시작일은 있지만 끝나는 날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종료시까지’로 돼있다. 불안하고 초조한 피말림과 충돌과 상처로 점철된 ‘하루’가 그 ‘종료’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종료’가 과연 어떤종료가 될까? 과연 어떤 종료여야 할까.

[활동이야기 2]

예외 없이 모두가 평화적으로 살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딸기(평화바람 활동가)

밀양에서 2박 3일을 지냈습니다. 죽어서라도 송전탑 공사를 막겠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외침이 있는 그곳은 이미 경찰 병력에 의해 곳곳에 사람들이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반드시 새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고압 송전탑도 필요 하다고 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너무나 단순한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핵발전소를 통해 이익을 보려는 원전 마피아들과 건설 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의 편에 서 있는 경찰이 있고요.

한반도 산천 어디한곳 송전탑이 없는 산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밀양의 공사 현장 정상에 올라서면 전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아름다운 산 능선들이 겹겹이 드러납니다. 새벽 안개속 동화전 마을 96번 현장에서 아름다운 능선과 산이 품고 있는 작은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장관이었지요.

아마 밀양의 어르신들은 송전탑 문제만 아니었다면 핵발전소가 뭔지도 모른 채 대추농사 지으시며 살아가셨을 겁니다. 아마 텔레비전에 나오는 반핵 활동가들은 빨갱이, 국책사업 반대 세력으로만 알고 돌아가셨을 지도 모르지요. 송전탑 건설로 인해 평생 고향이었던 마을의 산이 파헤쳐지고 아들, 손자뻘 되는 한전 직원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할머니들이 지키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평생을 일궈온 자신들의 인생일 것 입니다. 대추리의 농민들이 그랬고 강정의 농민들이 그랬듯 땅과 산과 바다는 농부들에게 그들의 삶 전부 이니까요.

인생을 훑쳐가려는 도둑놈들에게 할매 할매들은 소리치고 애원하고 빌어 가면서 버티 왔습니다. 경찰이라면 교통순경이 전부 인줄 알았을 할매들이 공권력을 향해 소리칩니다. "헬기를 막아 주십시오" "공사를 막아 주십시오"

때로는 악에 바쳐 욕을 하다가도 "저들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하십니다.

우리들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외없이 성폭력범들을 증오하고 살인자들을 저주 합니다. 그런데 국가권력이나 자본이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에는 왜이리 예외 조항이 많은 것일까요?

국책사업이니 희생되어 마땅하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해고는 당연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파괴되는 사람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나요? 보상을 한다고요? 아무리 돈이 최고인 세상에 산다 해도 결국 우리는 돈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돈을 벌고 있지는 않나요? 과연 당신의 인생은 얼마의 돈과 바꿀 수 있는 것인가요?

단장면 바드리 경찰과의 대치 현장에서 한 할머니가 숲에서 잤을 들고 나오십니다. 그 와중에도 자연의 수확물을 찾아내는 그 보배 같은 눈썹미가 좋습니다. 경찰들이 산속으로 진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탈에 앉아 있으면서도 "도토리가 익어가네" 하시며 언제 주으러 올까 말하는 그 말소리가 참 다정합니다. 할머니들은 언제, 어느 산능선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시겠지요. 도시에서 사는 우리들은 결코 알아 챌 수 없는 보석같은 지혜입니다.

이 할머니들의 인생을 지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고 싶다는 강정주민들의 외침처럼 공간은 다르지만 밀양에서도 외치고 있습니다. "고마 요데로 살고 싶다"

그들이 자연그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은 지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이 큰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들의 피눈물 속에서 송전탑이 결국 건설된다 하여도 그 전기는 결국 피를 타고 흐르게 될 것입니다.

농성을 하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전기"였습니다. 대부분의 농성장에 전기가 없어 휴대폰 충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한칸한칸 없어지면 불안했습니다. 소식을 밖으로 알리지 못한다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휴대폰 꺼짐, 전기없음 그 자체가 불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삶은 전기에 많이 의존되어 있구나 싶었습니다. 전기 없어도 아무렇지 않는 할매들과는 참 대조적이지요.

서울은 에너지 자급률이 3%밖에 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면 그 전기가 다 어디서 오기에 그리 화려한 도시가 만들어 질까요? 우리의 화려한 삶이 결국은 다른 사람의 피눈물속에 만들어진 허상이라면 우리는 이 불합리한 세상을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평화적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이익, 자본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삶이 희생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삶도 온전한 것이 될 것만 같습니다.

[활동이야기 3]

밀양 송전탑 투쟁에 처음으로 가보았다

유성(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세상 무엇보다도 신중하고 안전하게 관리, 운영되는 듯이 선전되는 핵발전소들이지만, 그게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건 이미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를 보면서 눈치를 챘다. 남한의 핵발전소들이야 말해 뭘할까. 저것들은 보나 마나 시한폭탄들이겠구나 싶었다. 아니나 다를까 부품에 대한 시험검사서를 위조하는 등 말도 안되는 비리들이 터져 나왔고, 핵발전소의 전기를 도시로 공급하는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에서도 정부와 한전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유리한 타이밍을 다시 재는 듯 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는 듯 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는 언론을 통해 접하고, 이치우 어르신 소식이나 어르신들이 결사적으로 싸우고 계시단 건 알고 있었지만 한번도 가본 적은 없었다. 주변 활동가들과 핵발전소 저거 정말 위험하다는 얘기는 종종 했지만, 정작 그들이 연대하기 위해 내려갈 때는 따라나서게 되질 않았다. 일상에 쫓겨 서울에서 밀양까지의 먼 거리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사실 어떤 무기력이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빨갱이 사냥으로 남한 사회 전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직후인 지금, 정부와 한전이 다시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꼴을 보면서, 처음으로 다른 활동가들을 따라,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러 내려가보게 되었다.

진입부터 막는 건 뻔했다. 산 위의 농성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산 아래서부터 막고 있었다. 팽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 때, 팽성읍에 경찰 계엄을 조성하며 모든 통행을 검열하던 경험에서부터 해서, 수많은 현장에서,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자유들을 제한하는 예외 상태를 물리력을 앞세워 손쉽게 만들어냈다. 지긋지긋했다. 통행하기 위해선 기자증 등 반드시 권위 있는 존재들로부터 받은 증명서를 내놓으라 요구했다. 너 아무 것도 아니야? 그럼 못 가. 이유? 너에게 왜 말해야 하지? 길도 아닌 산을 타서야 주민들의 농성장으로 갈 수 있었다.

주민들과 연대하러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농성장은 평범해 보이면서도, 뭔가 초현실적이었다. 단식 농성 중이던 50대 여성들은 그냥 산의 맨 흙바닥 위에 깔개에 한 장 놓고 담요만 덮고 누워 계셨는데,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무장한 경찰 병력이 방패 들고 서 있었다. 보통은 누가 단식한다고 하고 있으면, 적어도 조심스러워하는 시늉이라도 하기 위해 병력을 조금 떨어진 곳에 배치하지 않나?

주민들은 빼앗긴 천막을 돌려달라고 항의하고 계셨다. 천막을 뺏겨서 산 위에서 밤이슬 그대로 맞으며 보내셨다고. 천막을 치진 않고 그냥 단식하시는 분들 덮어주기만 하겠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않더라고, 화를 내며 말씀들 하셨다.

새벽에 너무 춥고 시장해서 컵라면이라도 먹으려고 모닥불을 피웠더니, 와서 소화기로 모닥불을 끄더니 그

옆에 준비 중이던 컵라면과 물에도 뿌려버리더라고, 주민 한 분이 말씀하셨다. 그것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한다. 개 돼지 취급한다고.

주민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기자가 볼 때와 아닐 때 경찰의 태도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다. 주민들만 있을 때는 먹을 것도 안들여보내주더니, 국회의원이 오니까 조건 붙여 넣어주게 되는 경험은, 어르신들께는 상처이기도 했다. 젊고 많이 배운 도시 사람들의 말과 눈은 신경 쓰면서, 어르신들만 계실 때는 고압적으로 대한다고.

일본 후쿠시마 사고 당시, 동해에서 온 비구름이 서울까지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원도 태백 산맥에서 비를 내리게 하려다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 서울에 사는 건 특권이라고, 밀양에 와보고서야 새삼 피부로 느낀다.

[활동이야기 4]

침묵하지 맙시다.

신훈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변호사)

며칠 전 인권감시단으로 밀양에 다녀왔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경찰과 주민이 얼굴을 붉히고 한전 직원은 주민을 피해서 도둑질 하듯이 공사를 진행하고 지역 공무원들은 주민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지역공동체가 무너져 주민과 주민이 반목합니다. 송전탑 건설은 작은 전쟁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독일은 원자력발전소를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북쪽의 풍력발전소에서 남쪽으로 전기를 송전할 장래의 송전선로 건설이 이슈입니다. 길준규, <독일에서의 고압송전선로 수용 및 보상에 대한 절차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55집, 토지공법학회, 2011
독일 국토를 남북으로 가로지르겠지만, 우리와 같이 심각한 사회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독일 시민들은 이타적이고 우리나라 시민들은 이기적이어서 일까요? 아닙니다. 독일은 입지선정부터 시작하여 지중화선로, 보상, 향후 대책까지 송전선로 건설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주민 참여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 참여입니다.

독일 시민들은 매일 산에 오르며 공사를 막지 않아도, 경찰·용역·한전직원들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지 않아도, 길거리에서 집회를 하지 않아도, 생명을 걸고 무기한 단식을 하지 않아도, 분신이라는 극단

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의사를 민주적인 절차 안에서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송전탑 분쟁의 원인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개발독재 시절의 타성에 젖어 있어서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공사를 진행하는 정부와 한전에게 송전탑 분쟁의 책임이 있습니다.

고압 송전선로가 설치되는 지역은 주로 지방, 특히 시골입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고압 송전선로를 보기가 힘듭니다. 시골에서 땅을 일구며 자식을 산업역군으로 키워 우리나라가 압축적인 경제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신 분들이 송전탑 건설로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들입니다. 이들은 경제성장의 열매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더 쟁겨주지는 못할망정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먹고 살만한 나라입니다.

송전선로가 지나가면 항공방제 지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밤농사를 못 짓게 된다는 어떤 할아버지의 탄원서를 읽었습니다. 저는 의심이 많습니다. 밤농사를 짓는 다른 지역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약을 치지 않으면 벌레가 너무 많이 생겨서 상품성 있는 밤을 생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항공방제만 선택지인데 송전선로 150미터 이내 지역은 항공방제 제한지역입니다.

할아버지는 밤농사로 한해에 700~800만원 벌니다. 수입의 전부입니다. 한전에서 보상금 154만원 나왔습니다. 단 한번만 주는 보상금입니다. 밤나무가 심어진 산은 이제 팔리지도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수십년간 밤나무 심으며 일궈온 산을 껴안고 그냥 죽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도시로 와서 뒷골목에서 쓰레기를 주으며 연명해야 하는 걸까요?

밤농사 짓는 할아버지는 글을 모릅니다. 이웃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탄원서의 말미에서 할아버지는 ‘나라의 도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믿고 기대고 싶은 ‘나라의 도리’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선 안 되며 듣고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인간을 파괴하는 송전탑 공사를 멈추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재검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논의의 장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광범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여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공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다치는 사람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진짜’ 이유를 아시나요?
-언론사 기자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부탁-**

아요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활동가)

제가 밀양에 처음 간 것은 작년 1월 이치우 어르신이 분신하고 나서 제1차 탈핵 희망버스 때입니다. 부끄럽지만 이치우 어르신이 돌아가시 전에는 밀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희망버스를 타고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은 산 꼭대기 현장에 올라가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산 길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포대자루를 들고, 지팡이를 짚으며 오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증언을 고개 숙이고 눈물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어린이책시민연대라는 곳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엄마들이 많았습니다. 온라인 카페에 밀양에서 벌어지는 일을 누가 올렸는데, ‘설마.. 그런 일이..’라는 마음으로 희망버스를 타고 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듣고 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건설용역업체 직원들의 욕설과 폭력에 온 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나무를 자르지 못하게 온 몸으로 나무를 끌어안고 울고 불면서 싸운 그 동안의 설움과 외로움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르신들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머리가 희끗하신 한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샀다고 했습니다. 김진숙 인가 하는 여자가 트위터가 뭔가 하는 걸로 세상에 자신의 소식을 알렸다는 뉴스를 보고서, 그걸 하면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줄까 하는 마음에 샀지만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별목이 된 산비탈에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나무를 심고 또 울었습니다. 이 나무를 지키려고 어르신들은 또 얼마나 힘들게 싸워야 할까를 생각하니 도무지 돌아가는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마을 어르신들은 큰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굵은 허리를 더 굽혀서 인사를 했습니다.

지난 5월, 다시 공사가 재개되고 할머니들의 벗인 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토록 처절하게 싸우는 이유를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아시나요?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침해조사단이 꾸려서 밀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고 싶다”라고요. 목에 밧줄을 묶고, 옷을 벗고, 땅을 파고 싸우는 이유는 그냥 이대로 농사도 짓고 마을 사람들끼리 웃으며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산소가 여기에 있고, 평생 여기서 자랐고, 추석이 되면 자식들이 고향을 찾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8년째 한전(놈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수확을 해야 먹고 살텐데, 이렇게 바쁜 시기에 정부와 한전은 다시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가만 두지 않겠다’는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시 산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10월 2일부터 공사라지만 전날부터 밧줄을 온 몸에 감고 산속 움막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저도 127번 현장에서 밤이슬을 맞으며 함께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전쟁이 언

제 시작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잠도 못자고 초조함과 불안함을 이기려 허공에 욕을 내뿔었습니다. “그냥 죽여라, 이 짓을 언제까지 하노, 우리 죽이고 공사해라.” 오늘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몸에 불을 붙였던 이치우 어르신이 생각났습니다. 대책위도, 인권침해감시단도, 언론사 기자들도, 아무도 이 분들을 말할 수 없습니다. 공사 중단이 아니고서는 이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재를 나르는 금곡 헬기장과 송전탑 건설 현장 곳곳에 각 언론사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수많은 기자와 카메라에게 연거푸 인사를 합니다. 제발 우리 소식을 제대로 전달해 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신문기사, 뉴스방송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또다시 좌절을 합니다. ‘외부세력’이라는 촌스러운 멘트가 또다시 흘러나옵니다. 현장에 한번이라도 방문했던 기자분이라면 귀에 닳도록 들었을 겁니다. “단체에서 온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를 들어냅니다. 기자들과 카메라가 있으면 때리지도 않습니다.” 8년을 고립되어 싸웠습니다. 이제야 이 소식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기자와 카메라도 와서 찍어 줍니다. 혹여나 이 글을 읽게 될 기자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목소리가 온전하게 전해졌으면 합니다. 믿기 힘들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사회의 ‘진짜’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오지 말라칸다고 진짜로 안 옵니까?”

변정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 팀장)

“살려 주이소. 제발 좀 살려 주이소.” 경운기만 거의 지날 정도로 좁은 콘크리트 길이 끝나고 울퉁불퉁 산길이 시작되는 길 옆 밭에서 깨를 털던 아흔을 앞둔 ‘밀양 할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를 붙든다. 길 안내를 하던 동네에서 제법 젊은 축에 드는 일흔을 갓 넘긴 할배가 “서울에서 왔어예. 인권하는 데라 카네예”라며 큰 손님이라도 모시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소개한다.

시선을 돌 곳이 없어 “예, 예, 건강하세요”라며 얼른 발걸음을 떼다.

9일 오후 네 시경 상동면 도곡리 109번 현장으로 향하는 구불구불한 산 길, 경사가 30도는 족히 넘어 보이는 길을 10분이 넘게 걷고 있다. 태풍 다나스가 막 지나간 약간은 거뭇한 하늘 바탕에 아직 초록인 이파리, 그 사이사이에 붉은 감빛이 예쁘다. 익숙한 풍경이다.

오랜 만에 만나는 그 예쁜 경치도 즐길 새가 없이 숨이 목까지 차오르면서 속에서 핵핵거리는 소리가 절로 새나오고 천근만근 벽돌을 달아놓은 듯 발이 무겁기 시작한다.

태풍이 지나스가 지나간 직후라 다행이 큰 충돌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굳이 삼십 분은 걸어야 하는 그 산길을 올라가야 할 것 같았다.

“이래 싸우면 사방천지가 지옥인기라.”

15분쯤 산길을 오르니 ‘밀양 할매’들 한 무리가 구부정하게 작대기를 짚고 내려온다. “위에는 더 못 갑니다. 다 막았다 아입니까. 그래도 함 가 보이소. 가서 함 보이소. 저것들이 다 막았다 아입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에 다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또 다시 황급히 인사를 하고 길을 오른다.

밀양에서 자란 내가 인권 침해를 조사하겠다고 온 것이 영 어색하다. 고등학교 때 서울로 유학 와서 20년이 넘었다. 송전탑을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210퍼센트 전기가 남아 도는 밀양 사람의 정체성보다는 3퍼센트만 생산하며 사는 서울 사람의 정체성이 내게 더 크다고 생각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싸움을 보면서 애써 고향이라는 감정을 가지지 않으려 속 깊이 묻었나 보다. 밀양서도 ‘서울’말을 쓰는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한 ‘인권하는 단체’에서 온 나는 영락없는 외지인이다.

그런데 다 틀려 버렸다. 다 까먹은 줄 알았던 ‘우리 할매’가 쓰던 사투리, 그 사투리가 저 밑바닥 어딘가에 잘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의 존재를 확인시킨다. 밀양 할매, 할매들 특유의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욱하듯 내뿜는 사투리들이 귀에 자꾸 꽂힌다. 가슴을 자꾸 친다. “아이구 이래 싸우면 사방천지가 지옥인기라.” 여기 저기서 신음 소리들이 감정을 타고 들어온다.

경사길에 ‘이제는 못 가겠다. 쉬었다가자’는 소리가 목구멍을 지날 때쯤 할매 네, 다섯 명이 형광색 비옷을 입은 전의경 ‘벽’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태풍 지나스가 쉰 바람과 굵은 비를 뿌린 뒤라 바닥이 축축하다. 할매들은 자리에 앉아 스텐 도시락을 싸운 식은 잡곡밥과 김치와 나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답 못합니다. 밀양 경찰서 가서 물어 보이소.”

“여기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왜 길을 막고 계신 겁니까?” 다른 현장들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길을 막았다. 맨 앞줄에 서 있는 전의경들에게 물어봤자 아무 답도 못할 것이다. 시위 현장에서 전의경은 입을 뿜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맨 앞줄에 선 전의경의 눈동자가 떨린다. 답이 없다. 애써 나의 시선을 외면한다. “여기 책임자 없습니까?” 여러 번을 고함을 치듯 외치니 저 뒷줄에서 사복을 입고 무전기를 든 경찰 한 명이 앞으로 나온다. 좀 전에 이 현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스쳐갔던 이다. 경위라고 했다. 통행 제한 근거를 내 놓으라고 따져 물었다. 그 역시 전의경과 다를 바 없었다. “상부 지시입니다”라고만 되풀이 한다.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다시 물었다. “답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밀양 경찰서로 가서 물어 보이소.”

하루에도 ‘인권’이라는 단어를 백 번도 넘게 써야 하는 나조차도 ‘상부 지시’라는 말 외에 미동도 하지 않는

경찰들 앞에서 이리 속수무책인데, 저 전의경을 넘어 공사장 코앞에 까지는 가야 할 절박한 할매들이야 어떨까 싶었다. 바로 7일만 하더라도 109번 송전탑 현장에서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진을 칠 수 있었는데, 오늘은 할매들 걸음걸이로 한 시간은 더 걸어야 되는 그 거리에 못 미쳐 길이 막혔다.

별 수가 없었다. 그냥 거기에 앉았다. ‘서울’서 온 양반들이 혹시나 길이라도 뚫어줘서 공사장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거리에라도 가 볼 수 있을지 우리를 쳐다보던 할매들의 눈빛에 실망감이 비친다. 109번 현장, 주민들은 이 곳을 전의경 300명씩 교대해 하루 600명이 상주한다고 말했다. “이래 올라오면은 한 사람당 열 명씩 붙어가지고 막는다 아이가.”

완충 지대

도시락을 먹던 할매가 “오늘 여기서 10명 자고 갈끼다.” 시위다. “여기서 이래 자면 우짤끼네. 내려갔다가 내일 또 올라오이소.” 밀양 경찰서 소속이라던 경위가 할매들을 야단치듯 말한다. “여기 이래 그냥 잘 끼다.” 할매들이 안 내려가겠다고 버틴다. 서로 큰 소리가 나는데도 서로 툭툭툭툭 받아 치는 것이 그리 긴장감이 없다. 경위는 밀양 사람이다. 전의경 부대는 가까운 경남지역에서도 오고, 일산에서도 오는 모양이다. 외지 사람들과 할매들 사이에 ‘밀양 사람’인 경찰 한 명씩을 끼워 넣었다. 할매 편도 들었다가 욱박지르기도 하고 외지인과 밀양 사람 사이에 일종의 완충지대다.

8일 방문했던 부북 평밭 마을 127번 송전탑 현장은 경찰과 한전이 들어올 수 없도록 주민들이 나무와 나무 사이 도로를 밧줄로 쳐서 바리케이트를 만들어 놨다. 우리가 도착했던 12시 반 경 시청 공무원들이 찾아왔다. 태풍이 오니 농성을 멈추고 내려오라고 이야기 하고 있었다. 시청 공무원 중 한 명이 밧줄 너머 농성을 하고 있는 주민에게 어떻게 해서든 말이라도 붙여보려고 다가 온다. “내 친구 하나도 저기 있습니다.” “됐다마” 바리케이트를 지키던 주민들이 말을 섞기 싫은지 저리 가라고 손짓을 한다. 시청 공무원은 머쓱한 듯 친구 이름을 부른다. “00아 내 왔다.” 말끝을 흐린다. “누고?” 바리케이트 저 너머에서 사십 대쯤 돼 보이는 한 남성이 바리케이트를 친 줄 너머로 내려본다. “내다 임마. 참말로 니 거기서...” 말끝이 흐려진다. 친구였을 그들은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그렇게 어색하게 나뉘었다.

‘쪼매 큰 전봇대’

8일에 상동면 여수리 126번 현장 농성장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는 단식을 했다. 선로에서 270미터 정도에 집이 있고, 200미터 정도에 하우스가 있는데 “단식을 할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공사소리만 나면 밥이 안 넘어 갑니다”라며 ‘어떻게 단식을 하게 되셨냐’는 나의 바보 같은 질문에 답을 했다.

“2005년도 7월인가 8월인가 이 장님이 뒷산에 첩탑인가가 들어온다고 내한테 가보라 카데에. 재미삼아 함 갔다 아입니까. 이래 큰 건지는 몰랐어에. 쪼메이 큰 전봇대 쫓는 건 줄 알았지예. 첩탑이 뭇지 재산상에 뭐가 하락이 오는지 몰랐어에. 그라고 나서 전자파 공부를 했다 아입니까. 저 쪽에 앉아있는 할매는 인자 은행

에서 대출도 안해 준다 카대에. 송전탑 생기며는 땅값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 준다 잡디더. 땅을 팔고 싶어도 부동산도 피해 잡니더.” 송전탑이 들어오는데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제대로 설명도 못 들었다고 했다. 주민들에게 찬성과 반대를 묻지도 않았다고 했다.

다음 날 9일에 도곡리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는 밀양이 살기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년 전 서울에서 내려와 이 곳에 자리를 잡았다. “처음에는 좀 큰 전봇대가 세워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뭐…인제 대출이고 뭐고 농협에서 하나도 안 해줘요. 누가 해주겠어요.”

불안한 마음에 공사 소리만 나도 심장이 쿵쾅거린다. 공사장에 자재를 나르는 소리만 들어도 미칠 것 같다.

8일 여수리 농성장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는 “신문 봤지예. (한전에서) 용역을 5년 전에 대학에 맡기고도 암 발생 보고서를 숨기고 있었고, 경과지에 소화암, 백혈병 환자가 있다는 것도 봤지예. 안전하다는 거를 증명 해달라. 그거 아입니까.” 나에게 따져 물었다.

주민들에게 ‘한전’은 거짓말로 주민들을 회유하는 민지 못할 존재다. “한전이 자꾸 거짓말을 하고 얘기가 안 됩니다. 자꾸 말바꾸다 안되면 담당자 바꾸고예. 인제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정부가 결정하는 겁니더.” 아주머니는 한전이 정책을 결정하는데도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다, 아니 한전의 결정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정부라고 주민들은 생각한다. 정부도 한전도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제대로 묻은 적도 없었다고 했다. 올해 들어 길으로는 주민들 안전 때문에 경찰을 배치했다고 하면서도, 공사장으로 들어가려는 한전 직원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둘러싸고 “두 줄을 지어서 가운데 딱 넣어서” 현장으로 들여보낸다. 이 러니 애가 닳는다. 정부면 ‘우리’하고 이야기 해서 협의도 하고 조절도 하고, 민주주의라 했으니 많은 주민들이 곡기를 끊어가며 송전탑 계획을 백지화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맞는데…보상 이야기만 하고. 이미 송전탑을 어디다 세울지, 언제 어떻게 세울지 답을 다 갖고서 주민들한테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서러움과 억울함을 하소연 할 데가 없다. 하루에도 30번은 “체포해”, “고발하겠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무섭다.

“오지 말라 한다고 진짜로 안 오면 됩니까?”

9월 국무총리가 밀양을 직접 방문한 게 기억이 나서 보상금이 타결됐다는 기사가 어떻게 나온 건지를 물었다. 혹시 국무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본 적도 없지예. 밀양에서 피해보는 주민 위주로 합의를 해야지예. 그런데 시장 권력 근처에 있는 사람들 만 데리고 회의를 했다 아입니까. 선하지 주민들은 다 빼고 했어예. 국무총리가 만난 이장협의회 회장들은 경과지에서는 먼 사람들이고, 면장들도 (경과지에서) 먼데 있는 사람들만 왔어예. 선하지 주민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압력이 많아예. 오죽하면 동장들이, 여수동, 고정리, 고답동, 모정, 도곡, 금호 동장들이 사표를 냈겠습니까”라고 했다. 할매, 할배들은 한참 시청 앞에서 국무총리에게 우리말 좀 들어 달라고 싸우고 있을 때

‘400만원 보상 타결’이라는 뉴스를 인터넷으로 먼저 봤다고 했다. 국무총리는 주민들을 피해 후문으로 나갔다고 한다.

9일 날 도곡리 109번 현장을 지키고 앉았던 할매들에게도 물었다. 국무총리를 만난 적이 있냐고. 할매는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마 오지말라 겠다 아입니까”라며 분을 삭인다. 할매가 정말로 국무총리실에다 대고 오지 말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상황에 분에 못 이겨 나에게 한 마디 툭 던진 건지 알 수 없다.

내가 슬쩍 농담을 걸 듯 할매에게 시비를 건다. “오지말라고 하신 거네요.”

악을 쓰는 상황에서 할머니 대답 한 자락에 삶의 직관과 여유가 묻어난다. “오지 말라한다고 진짜오 안 오면 됩니까?”

태풍이 지나 가고 1.5일이 지나면서 연행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할매들이 여성이니 전의경을 대신해 여경을 배치한다고 해서 인권이 보장될 리 없다. 이제는 아제 공사 현장 근처는커녕 한 참 먼 곳에서 조차 집 회도 못하게 막는 데 인권이 숨 쉴 재주가 없다. 제발 악이라도 쓸 수 있게 길이라도 열어라!

[활동이야기]

밀양 할매를 울린 두 부류의 외부세력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참으로 오랜만에 밀양에 왔습니다. 6월에 오고, 근 4개월만이었습니다. 10월 1일 공사가 재개되고 나서 밀양에 인권침해가 심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어제는 바드리마을에 콘크리트 작업을 한다고 레미콘 차량을 보호하는 경찰의 폭력에 주민들이 속절없이 당했더랍니다. 저는 한발 늦게 도착해 주민들의 증언과 활동가들의 사진과 영상을 보며 당시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60대, 80대의 할머니들의 분에 차 상기된 얼굴과 억울하고 슬퍼서 글썽이는 눈을 보며, 명든 다리와 손을 보면서 주민들을 만나는 일은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누구의 욕망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기를 많이 쓰는 도시인인 저는 더욱 부끄러웠고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런 경찰의 무자비하고 초법적인 폭력을 제지하지 못 하는구나’하는 마음에 속으로 한숨을 여러 번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착잡한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농성장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꽃피는 학교라는 대안학교에서 온 청소년들이 리코더 공연으로 할머니들을 위로하자 할머니들의 눈에 눈물이 그렇그렇 맺히는 게 아납니까. 학생들이 가면서 할머니들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한 학생이 “그동안 못 오고 많이 힘이 못 돼서 죄송해요”라고 하자, 한 할머니가 학생들의 손을 잡으며 “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이렇게 노래랑 공연까지....” 다시 눈물이 그렇그렇....

저는 순간 만남이 힘을 준다는 건 저런 거구나 싶었고, 넘어져서 아픈 무릎에 호호 입김을 불어주던 엄마와 언니, 친구의 모습이 겹쳤습니다. 호호 불어주는 것이 어떤 의료적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따뜻해져서 힘이 나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처럼 만남은 약이 되기도 합니다. 할머니들을 비롯한 밀양의 주민들이 팽팽한 긴장 속에 쌓이는 분노를 안고서도 그 긴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만남 때문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더 많이 찾아가야지, 어떤 이는 노래 한곡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깻잎 몇 장을 딸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저처럼 인권침해감시 활동을 할 수도 있으니,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많이들 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서로 다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눈물을 그렁이던 83세의 할머니와 인터뷰를 하다가 경찰에 대한 이야기와 외부세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은 정말 경찰은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며, 저 경찰들이 외부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할머니 말씀이 사실 처음에 저를 경찰과 친한 사람인줄 알고 안 좋게 봤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농성장에 도착해서 처음에 통행제한의 이유를 중대장을 쫓아가며 묻는 모습을 할머니께서 우연히 보시고는 경찰과 밀담을 나누는 것으로 오해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아까 여경이 화장실 가는데 할머니께 “동네에서 벌금 내라고 해서 (농성장에) 나오신 거지요?”라는 말에 당신을 떠보는 것 같고 헛소문을 내는 것 같아 매우 기분이 나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내 스스로 왔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배운 게 별로 없으면 자기 생각도 없이 외부세력 때문에 반대하는 것처럼 본다고. 완전히 사람을 무시한다고. 앞서도 말했듯이 할머니는 외지인인 저를 경계할 정도로 그렇게 아무 생각 없거나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할머니들을 무시하고 외부세력의 농간으로 좌우되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은 경찰만이 아니었습니다. 법에 의거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법부가 밀양주민들을 무시하는 판결을 보고 어찌나 놀랐는지...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의 이준민 판사는 밀양 주민 김 씨의 핸드폰 압수수색영장을 허했습니다. 판결문에 별첨 자료로 있는 문서에는 외부세력의 개입 없이는 밀양주민들이 150여명이나 모일 수 없으며 배후세력이 있는 것 같으므로,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를 봐야하므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주민을 무시해도 되는지, 기가 찼습니다. 주민들은 적어도 영혼 없이 위법하고 인권침해적인 지시만 따르는 경찰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는지, 아니 알면서도 동급으로 취급하는 건 아닌지.

아무튼 오늘 따뜻한 가을햇살을 받으며 불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외부세력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의 눈에 연정의 따뜻한 눈물을 준 외부세력과 냉정과 모욕의 쓰린 눈물을 흘리게 한 외부세력! 우리는 어떤 외부세력이 될 것인지.... 제 생각의 끝은 이겁니다.

“여러분, 곡식이 익어가는 주말 밀양에 한번 가실래요?”

국제인권단체성명

10/7 아시아인권위원회 성명 "한국 : 밀양 주민들과의 공정하고 정당한 협의 없이 강행되는 행정대집행은 적법하지 못하다

SOUTH KOREA: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is not legitimate without just and fair consultation of Miryang villagers
October 7, 2013

It is unavoidable that dissent, regardless of its severity, arises between the authorities and the people affected from national plans such as 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It is reported that a nuclear plant has been being built in Busan in order to supply electricity to Seoul and for this reason, 69 transmission towers for the 765 kVs of power that will be generated from the nuclear plant were approved by the government in November 2007. Villagers composed mostly of persons between the age of 70 to 80, living in the affected village of Miryang close to Busan have opposed such construction since its approval. Regretfully, Mr. LEE Chi-woo, a villager, burned himself to death in protest to the police violence and oppression of government in January 2012. When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announced that they would resume construction on October 1, 2013, hundreds of police and public officials were deployed and they have arrested the villagers and rights activists and isolated them from receiving support, including food and water from others.

Such actions taken by the government are not a surprising, rather having been a consistent, cohesive step which the government has taken in the name of law there is only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When the country was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70s and 1980s, economic growth was always considered first while the rights of marginalised group of people such as workers working in extremely poor conditions were ignored. As such, whenever a government leading development project is adopted, it requests only the sacrifice of those affected who have become more marginalised and vulnerable. At this moment in Miryang, the elderly have been protesting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transmission towers at the great risk of being targeted by the police and public officials.

In order to ease the tension or conflict that has arisen in the affected area, a step has been taken to set up a consultative group of experts to study and make recommendations. However, it is reported that the consultation was carried out in an unjust and biased manner while excluding those who were opposed. Whenever questioned, the government has made the justification that the process of consultation was carried out. But, it was only with the group of people who support it. The case of the construction of naval base in Gangjeong village, Jeju Island is another example of such unfair consultation made, based on which the construction has started. Unfortunately, this unfair process of getting consents from those

who are affected has not been taken seriously when the matter is brought before the court. It is another contributing factor that has continued to allow the government leading projects to disregard the rights of the affected and be justified in the name of law.

It is a duty of the state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which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ratified. The right based approach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in thematic issues such as the business and human rights have already become the core that has been discussed in international forums such as the UN Human Rights Council where the government is a member and expanding to other UN organs for incorporation of right based approach when they perform their duty. The recent cases have demonstrated that it is the return of the government's old style of getting benefits from the sacrifice of others which is clearly contrary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ince the government has disregarded its obligation, it is supposed to be the rol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at should have taken preventive measures by active involvement from earlier stage but it has failed to do so, except to send staff to monitor the situation after violations take place.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has come as no surprise that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was reminded by UN experts of its duty to take measures to ensure the POSCO project does not adversely impact human rights when operating abroad.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 strongly urges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unconditionally release all villagers and activists arrested while protesting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transmission towers, respect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all possible rights relate to the situation of villagers and activists in Miryang,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s properly guided with the help of the Ministry of Justice so that the KEPCO fulfils its obligation to protect rights of villager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onstruction of transmission towers are being built for the shortage of electricity in Seoul, the AHRC would like to provoke in particular, the residents in Seoul to declare that they do not wish to get electricity from the sacrifice of villagers currently protesting in Miryang and should express deep concern over the ongoing situation through various means including social network services, asking them to find ways to solve the matters with a just and fair process. It is the duty of the government to find ways to secure the shortage of electricity in Seoul but it does not have the right to force villagers in Miryang to be scapegoats for that purpose. It is deplorable for South Korea to witness such typical violations mostly occurring in underdeveloped countries.

10/10 포럼아시아 성명 "한국: 정부는 밀양 시위자들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Authorities Must Cease Restrictions and Reprisals against Miryang Protestors)"

The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a regional human rights group representing 47 member organizations in 16 countries across Asia, including South Korea, strongly condemns the arrests and crackdowns against villagers and human rights defenders protesting the construction of power transmission towers in Miryang,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struction of the towers recently resumed on 1 October 2013 after a 126-day suspension that failed to further establish any mechanism for consultation or dialogue with affected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e latest series of protests is part of a wider eight year struggle mounted by Miryang residents against the construction project of 765kV Transmission Towers.

Over the past two weeks,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documented and reported daily by monitoring teams who have visited the various protest sites in Miryang since construction re-commenced. However, the authorities have in some instances arbitrarily denied entry of medical personnel and assembly monitoring teams into certain sites. Also, for a number of protests sites, the distribution of water, food and tents provided by human rights monitoring teams for the villagers and protestors, is controlled by the police. The limited access has rendered the obtaining of timely and accurate information, including the injury toll from police actions, difficult. Other violations include the arrests and charges filed against peaceful protestors as well as incidents of excessive use of force by the police. Illegal surveillance and photographing of protestors by security personnel has also been reported. Currently, four individuals have been charged for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tests and among the four, one is being held in detention.[1]

“All individuals have the right to peacefully protest against large-scale developmental projects. They must be able to articulate and claim their right to live in a safe, clean and healthy environment. All forms of harassment, threats and intimidation employed by the authorities against the villagers and environmental rights defenders create a chilling effect and aim to silence voices of legitimate dissent,” said Evelyn Balais-Serrano, FORUM-ASIA’s Executive Director.

Evident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not heeded the calls made by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Margaret Sekaggya, after her recent visit to South Korea from 29 May-7 June 2013. She had explicitly acknowledged that defenders and community residents protesting against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especially those in Miryang and Jeju Island, face important challenges such as the lack of consultation and 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projects as well as lack of protection in carrying out their work.

It is further appalling that the authorities employ provisions under the Criminal Act— such as the “obstruction of business”— to criminalize human rights defenders for their human rights–related activities and with a view to sanction or deter others from participating in the protests. This again contradicts the call by the Special Rapporteur after her visit to “avoid the criminalization and use of heavy penalties against the work of defenders by conducting a thorough review of those laws and regulations affecting the exercise of the rights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nd freedom of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which are essential to claim other rights, with a view to bring these laws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With the series of protests in Miryang expected to continue and escalate in the coming weeks, it is imperative that the government takes measures to create an enabling environment for the villagers and environmental rights defenders to express their grievances and aspirations without any fear of reprisals. Communities affected by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must be involved at all stages of the project. In the absence of any expressed commitment to do so, the construction of the transmission towers should cease and the government must establish mechanisms for consultation and effective participation of all stakeholders involved.

“The authorities must take measures to facilitate and enable the right to freedoms of expression and assembly of the protestors. We remind the security personnel to observe and comply with operational protocols when dealing with peaceful protestors and desist from employing excessive force. We also urge the government to unconditionally and immediately drop all charges against individuals in relation to the exercise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stressed Balais–Serrano.

10/10 시비쿠스 보도자료 "국제시민사회는 한국 정부에게 환경활동가들의 석방을 촉구한다 (Global civil society body calls for release of South Korean environmental activists)"

Global civil society alliance, CIVICUS, denounc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unjustified arrest and detention of eleven environmental and civil society activists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south korean activist

“The repressive and unwarranted response to the peaceful demonstrations is representative of the government’s persistent intolerance of environmental activism in the country,” said Tor Hodenfield, Policy and Advocacy Officer at CIVICUS. “Th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drop all charges against the peaceful protestors and initiate a dialogue with Miryang villagers to find a mutually–agreeable solution to the dispute.”

On 3 October 2013, 11 human rights defenders were arrested and detain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response to peaceful demonstrations against the construction of large–scale power transmission towers, in Miryang, Republic of Korea. While a number of the activists were released without charge within 48 hours of being detained, criminal charges were filed against four of the detainees.

The arrests represent a severe escalation of the government’s attempts to obstruct the on–going protests in opposition to the construction of 69 nuclear transmission towers in Miryang. The demonstrators, who have staged regular protests since 2004 to highlight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project and the undemocratic process of the construction, are routinely subjected to restrictions including the denial of basic medical services and essential staples including adequate food, water and shelter.

“The police unjustly control all entry points to the protest site, causing severe and malicious suffering to protestors, many of whom are in their 70s and 80s,” said Ms. Minsun, a member of the Human Rights Monitoring Team, a coalition of national civil society activists tasked with monitoring the protest site.

CIVICUS urg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fully respect the freedom of assembly and expression of its citizens by: (i) immediately releasing and dropping the charges against all protestors persecuted for their role in the demonstrations; (ii) end further harassment of all individuals involved in the peaceful exercise of their rights to assemble, including undue restriction on the access to basic staples; and (iii) initiate an inclusive dialogue with a cross–section of civil society and residents of Miryang city to discuss an equitable and sustainable solution to the dispute.

10/10 국제인권연맹 공개서한 "밀양에서의 시위 : 한국 정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Protests in Miryang: open letter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ear President Park Geun-hye,

I am writing to you to express FIDH's concerns over the ongoing restrictions on the fundamental right to peaceful assembly imposed to villagers and environmental activists protesting against the construction of a 765kV transmission tower in Miryang, a city located south-eastern par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se protests, which started after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announced it would resume the construction of the tower on October 1 after a 126-day long suspension of the project, take place in the context of continued opposition to the government's plan to build sixty-nine transmission towers in Miryang, to send high-voltage current to be generated from the newly-built Singori Nuclear power plant's units, to a substation situated northwest of Busan.

While taking note of the government's legitimate intent to find ways to secure electricity availability in the country, FIDH considers that its response to the on-going protests, which can be qualified as peaceful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has so far been largely disproportionate. In particular, the deployment of hundreds of police forces to control or block protests seem exaggerate, in light of the following incidents:

The arrest of 11 protesters, which seems arbitrary in several ways. While we understand that 7 protesters were arrested for entering, on October 3, an heliport in a way which was deemed as illegal by the police, it is important to take into account that these form of protest remained peaceful, and that some charges, including the accusation of voluntary destruction of a fence under the Punishment of Violence, etc, Act, led to contradictory accounts between police and protesters, who denied intentionally damaging any facility. We take note of the subsequent release of 7 of them, the continued detention of Mr. Sang-hong LEE, from Gyeongju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and charges against three protesters (Ms. Ji-hye HONG, Mr. Jae-sik LEE, Mr. Jin CHOI).

The decision by the police filtering the entry gate to the protest site, to restrict or deprive protestors – many of whom are in their seventies or eighties – already sitting inside the site, from basic necessities including food, water, shelter, clothing, other sleeping and heating equipment as well as proper medical treatment.

The initiative by some police officers – some covering their face with masks or wearing plain costume – of taking photos of peaceful protesters. According to a Republic of Korea's Supreme Court's decision in 1999, taking photos of protestors without warrant can be allowed only on an "exceptional" basis such as when a crime is being committed. Protesters complained on the spot about this indiscriminate photo-taking but the police continued to do so, which unnecessarily intensified tensions and eventually lead to

the arrest of two protesters.

Disproportionate violence against catholic nuns who visited the protest site on 3 October 2013, to bring food and stand in solidarity with villagers. City council officers and police officers reportedly untangled their hood and punched their chest.

In addition, FIDH strongly believ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give priority to genuine consultation and effective participation regarding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large-scale projects affecting local communities' livelihoods and environment in different p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case of Singori Nuclear power plant, communities have clearly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the way the consultation has been organized; such a lack of consultation and effective participation is clearly one of the main sources of their grievance. The fact that KEPCO suspended the same project 11 times in the past, and that the government recently appointed an expert group to consult communities and issue recommendations, are signs that indeed all stakeholders have been seeking a mutual agreement and understanding on the terms of the project. However, continued protests show that renewed efforts are urgently needed.

FIDH therefore recommend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Immediately release Mr. Sang-hong LEE, drop all charges against four protestors (Mr. Sang-hong LEE, Ms. Ji-hye HONG, Mr. Jae-sik LEE, Mr. Jin CHOI) and respect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of villagers and environmental activists.

Allow unrestricted access to food, water, shelter, sleeping and heating equipment as well as proper health care to the protestors.

Launch a genuine consultation process.

I would like to highlight that the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expressed in this letter echo concerns issued by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t the end of her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from 29 May to 7 June, 2013. [1]

I sincerely hope to receive a reply from you, including a renewed commitment to respect the aforementioned rights, and to initiate a renewed dialogue with affected communities and environmental activists engaged by their side.

Respectfully,

Karim Lahidji, FIDH president

10/10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 긴급 청원 "한국: 인권옹호자 이상홍씨에 대한 자의적 체포와 구금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of human rights defender Mr Sang-hong Lee)

Ms Park Geun-hye President of the Republic,

Your Excellency, On 3 October 2013, human rights defender Mr Sang-hong Lee was arrested for his role in demonstrating against the construction of nuclear transmission towers in the city of Miryang in Geongsangnam-do Province, and remains in detention. Sang-hong Lee is the Secretary-General of Gyeongju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Sang-hong Lee has been active in the campaign against the construction of nuclear transmission towers in Miryang. To transmit electricity to Seoul, sixty-nine transmission towers are to be constructed in Miryang, and a nuclear plant is currently being built in Busan. Human rights defenders have protested against their construction for eight years due to concerns about the impact of the project on the environment as well as on access to land for local communities. At approximately 9:00 am on 3 October 2013, helicopters started to deliver construction materials. Human rights defenders and villagers were lying on the street as a form of protest. As the delivery continued,, Sang-hong Lee and six protesters erected a fence around the heliport, and were arrested by the police. While being escorted to a police vehicle, journalists were prevented from taking photos. One of those arrested was immediately released with a warning, while five others were released after 48 hours in detention. The police requested to a court to confirm the detention of Sang-hong Lee, which the Court confirmed. As a result, the human rights defender can be held in pre-trial detention for up to six months. It is also reported that Sang-hong Lee has been charged under the Punishment of Violence Act, despite the fact that he did not engage in violence and his actions remained peaceful. On 1 October 2013,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resumed the construction of the transmission towers in Miryang after 126 days of suspension. It is reported that local communities were involved in consultations. Police officers have been stationed in the area and have been taking photos of protesters and human rights defenders and undertaking surveillance of their activities. This is in spite of a 1999 pronouncement by the South Korean Supreme Court that police officials can take photos of people without warrant only when they are in the process of committing a criminal act. I believe that the arrest and detention of Sang-hong Lee is directly related to his work in the defence of human rights, particularly the rights of the communities affected by the nuclear transmission towers in Miryang. I urge the authorities in South Korea to: 1. Immediately drop all charges against Sang-hong Lee and unconditionally release him as it is believed that they are solely motivated by his legitimate and peaceful work in defence of human rights; 2.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guarantee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integrity and security of Sang-hong Lee and other human rights defenders campaigning against the Transmission Towers; 3. Guarantee in all circumstances that human rights defenders in South Korea are able to carry out their

legitimate human rights activities without fear of reprisals and free of all restrictions. Yours sincerely, – See more at: <http://www.frontlinedefenders.org/node/24009/action#sthash.IokJeDxJ.dpuf>Your Excellency, On 3 October 2013, human rights defender Mr Sang-hong Lee was arrested for his role in demonstrating against the construction of nuclear transmission towers in the city of Miryang in Geongsangnam-do Province, and remains in detention. Sang-hong Lee is the Secretary-General of Gyeongju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Sang-hong Lee has been active in the campaign against the construction of nuclear transmission towers in Miryang. To transmit electricity to Seoul, sixty-nine transmission towers are to be constructed in Miryang, and a nuclear plant is currently being built in Busan. Human rights defenders have protested against their construction for eight years due to concerns about the impact of the project on the environment as well as on access to land for local communities. At approximately 9:00 am on 3 October 2013, helicopters started to deliver construction materials. Human rights defenders and villagers were lying on the street as a form of protest. As the delivery continued,, Sang-hong Lee and six protesters erected a fence around the heliport, and were arrested by the police. While being escorted to a police vehicle, journalists were prevented from taking photos. One of those arrested was immediately released with a warning, while five others were released after 48 hours in detention. The police requested to a court to confirm the detention of Sang-hong Lee, which the Court confirmed. As a result, the human rights defender can be held in pre-trial detention for up to six months. It is also reported that Sang-hong Lee has been charged under the Punishment of Violence Act, despite the fact that he did not engage in violence and his actions remained peaceful. On 1 October 2013,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resumed the construction of the transmission towers in Miryang after 126 days of suspension. It is reported that local communities were involved in consultations. Police officers have been stationed in the area and have been taking photos of protesters and human rights defenders and undertaking surveillance of their activities. This is in spite of a 1999 pronouncement by the South Korean Supreme Court that police officials can take photos of people without warrant only when they are in the process of committing a criminal act. I believe that the arrest and detention of Sang-hong Lee is directly related to his work in the defence of human rights, particularly the rights of the communities affected by the nuclear transmission towers in Miryang. I urge the authorities in South Korea to: 1. Immediately drop all charges against Sang-hong Lee and unconditionally release him as it is believed that they are solely motivated by his legitimate and peaceful work in defence of human rights; 2.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guarantee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integrity and security of Sang-hong Lee and other human rights defenders campaigning against the Transmission Towers; 3. Guarantee in all circumstances that human rights defenders in South Korea are able to carry out their legitimate human rights activities without fear of reprisals and free of all restrictions. Yours sincerely,

[성명] 한국: 정부와 한국전력공사(KEPCO)는 송전탑 건설사업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밀양 주민과 진정한 협의를 해야 하며, 그 때까지 송전탑 건설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KEPCO, 이하 한전)는 한전이 진행하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이하 765kV송전탑건설사업)이 끼칠 인권영향(human rights impact)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사업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과 진정한 협의를 실시해야 하며, 주거 혹은 생계를 잃는 데 대한 충분한 보상과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한전의 765kV송전탑건설사업은 부산 신고리 원전에서 서울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밀양의 다섯 개면(단장면, 산외면, 상동면, 부분면, 청도면)을 통과하거나 인접한 39.15km 구간에 약 69개 765kV 송전탑 건설을 예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2007년 11월 정부가 이 사업을 승인하기 전인 2005년에 있었던 사전협의과정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포함하지 않았고,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충분히 고지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한전은 송전탑건설 부지에서 30m내에 땅이 있거나 송전선로에서 3m내에 땅이 있는 사람만을 협의와 보상의 대상으로 협소하게 규정한다. 한전이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영향 받는 마을 전체 인구의 0.6%가 2005년 당시 협의과정에 참여했다. 하지만 규정된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 주민들이 압박한 송전탑 건설의 경제적 결과로 이미 고통 받고 있고, 건강과 환경에 끼칠 영향에 대한 두려움을 잠재울만한 어떤 설명도 없었다. 주민들은 국제앰네스티에 주민설명회를 안내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이 회의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고,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공사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2013년 국회의원들은 765kV 송전탑 근방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해 2010년 발간된 한전 내부 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었다.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협의과정에 앞서 혹은 협의과정 중에는 이러한 영향평가가 없었거나 공개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765kV 송전탑이 자신의 인권에 끼칠 영향에 대해 충분하게, 적절한 시기에 알 권리가 있다. 또한, 주민들이 겪을 위험에 대해서 규명되어야 하며, 위험을 규명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과 알고 있는 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765kV송전탑건설사업에 대해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인권 및 환경영향평가(human righ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가 실시되어야 하고, 조사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주민소유의 토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소유자 동의 없이 한전에 수용되었다. 수용된 토지는 시세보다 상당히 낮게 평가되었다. 또, 송전탑건설부지에서 30m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는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결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765kV송전탑건설사업 부지 인근 토지의 가치가 심각하게 평가절하 되었고, 주민들은 토지 매입자가 없다고 전했다. 많은 주민들이 연로한 농부들로,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

출을 받아 농업을 유지한다. 은행도 송전탑 인근지역에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결부되면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매각하지도, 유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을 낳았다. 2013년 9월 국무총리는 송전탑의 영향을 받는 가구에 미화 3,780달러(한화 40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주민은 농사지역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이동이 용이하도록 정부가 땅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중화와 같은 대안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최근 2013년 5월 29일에서 6월 7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후, 밀양 주민들과 같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정당하게 항의할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765kV송전탑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60-70대이고, 경찰에 의한 괴롭힘과 체포위협을 겪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경찰은 자의적으로 경찰력을 사용해 주민과 활동가, 지지자가 농성하는 장소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등 부당하게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제한했다. 2013년 10월 1일 765kV송전탑건설 공사가 재개된 이후, 주민과 인권옹호자를 포함해 14명이 평화적 시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처벌하는데 적용되기도 하는 형법상 ‘업무방해’ 조항으로 체포되었다. 두 명은 구금되어 있고 나머지는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KEPCO)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진정한 협의를 진행하고 위험평가를 실시할 때까지 765kV송전탑건설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전원개발촉진법(1978)과 같이 거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및 조치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진정한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거와 터전을 잃은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대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765kV송전탑건설사업에 대항한 평화적인 시위로 구속된 모든 사람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 조사/방문

- 캐서린 베이버(Catherine Baber)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장이 5월 24일 밀양을 방문하였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 조사단’의 일정으로 6월 6-7일간,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 감시단’의 일정으로 10월 8-10일간 밀양을 방문하였다.